

백서 [III]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6. 공동고발장

7. 이슈페이퍼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몫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현이 구속되었다. 임종현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① 압수수색시점 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봉

목 차

1. T/F 구성현황	백서 [I]
2. 사법농단 일지	백서 [I]
3. T/F 회의 일지	백서 [I]
4. 법원 조사보고서	백서 [I]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백서 [II]
6. 공동고발장	백서 [III]
7. 이슈페이퍼	백서 [III]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백서 [III]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백서 [IV]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백서 [V]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백서 [V]
12. 사법농단 관련 토론회 등 자료집	백서 [VI]
13. 성명, 논평 등	백서 [VII]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백서 [VIII]
15.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	백서 [IX]

6

공동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1.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고발인 1.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오용택, 안지희

2.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3. 긴급조치사람들(준)

4.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5. 4.9통일평화재단

6.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7.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고발인 2. 내지 7.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서중희

8.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9.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고발인 8. 및 9.의 고발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10.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2.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13. 전국철도노동조합

고발인 10. 내지 13.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김태욱, 우지연, 이종희, 조민지

14.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15.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고발인 14. 및 15.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해주희, 오민애, 오현정

16.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17.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고발인 16. 내지 17.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피고발인

양승태 외 29

<목 차>

1. 들어가며
2.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하여 개별 사건의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 :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 가. 서론
 - 나. 키코 사건 관련
 - 다. 과거사 사건 관련
 - 라. 콜텍 경영상 해고 사건 관련
 - 마.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관련
 - 바. 쌍용자동차 경영상 해고 사건 관련
 - 사.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관련
 - 아.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 참석 교사 사건 관련
 - 자.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관련
 - 야. 철도노조 KTX 승무원 사건 관련
 - 차. 철도노조 2009년 파업 형사 사건 관련
 - 차. 철도노조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 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사건 관련
 - 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 파.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관련
 - 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후속 사안 관련
3. 기타 인사권 남용 등 직권남용의 범죄
 - 가.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직권남용죄
 - 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직권남용죄
 - 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 및 추천 개입 등 직권남용죄
 - 라.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법관에 대한 사찰 등 직권남용죄
 - 마.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사찰 및 폐쇄 유도 등 직권남용죄
 -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직권남용죄
4.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제1기획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죄 및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5. 결론에 갈음하여 : 이 사건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들어가며

가. 2017. 3.경 언론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려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관의 인사 등과 관련하여 법원 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① 진상조사위원회, ② 추가조사위원회, 그리고 ③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합니다)이라는 각 기구를 통하여 세 차례에 걸쳐 위 의혹 등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각각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위 세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검토한 우리 고발인들은, 실로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 특히 2018. 5. 25. 발표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

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⑦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민변대응전략”, “차○○판사재산관계검토” 등 통상적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다수의 문건을 생산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사법행정의 총수임을 자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 6. 1.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재판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았다거나 특정 법관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정작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2018. 5.말경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내놓은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현재 대법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형사적 책임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국한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합니다)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의 행위가 단순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사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용서류무효죄, 증거인멸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의 근본적 훼손,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부정에 대한 강력한 정황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 진실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무엇보다 긴절히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마.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는 전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만 이루어졌고,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인사 자료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의 조사 협조 거부로 확보되지도 못하였으며,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자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단은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요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등이 이루어진다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든 관련 의혹을 단순히 부인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올곧은 수사만이 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바. 이하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 내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각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용서류무효죄, 증거인멸죄 등의 각 죄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하여 개별 사건의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 :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가. 서론

3차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 11. 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음을 스스로 적시 하였습니다(3차보고서 173쪽). 즉, 법원행정처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거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하여 완성된 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이라는 제하의 문건 기재에 의하면,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 결정) 등을 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됩니다(3차보고

서 171쪽).

이와 같은 각 문건들의 기재 및 3차보고서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위에 기재된 각 개별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교감을 나누어 온 정황이 드러나는바, 이하에서는 각 개별 사건들의 경과 및 피고발인들의 각 죄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나. 키코 사건 관련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2008. 5.경 키코 사건 피해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0여개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키코 상품의 의의

(1) 콜옵션과 풋옵션을 교환하는 계약

키코 상품은 (KIKO, Knock-in, knock-out)는 수출기업이 만기시 USD 등 기초 외화자산 대비 원화 환율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이하 'KO'라고만 합니다)이 붙은 풋옵션(put option)¹⁾을 은행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은행은 위 환율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하 'KI'라고만 합니다)이 붙은 콜

1) 외화 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환율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

옵션(call option)²⁾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교환계약입니다.

(2)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헤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상품

키코상품으로 인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환헤지 기능은 KO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의 좁은 구간에 국한되어 있고, 정작 환헤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KO환율 이하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환헤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환율보다 훨씬 낮은 행사가격으로 은행에게 달러화를 매도하거나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무한대의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기업은 키코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미미한 환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엄청난 환손실의 가능성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환투기적 성격이 강한 파생상품입니다.

(3) 키코 상품은 은행이 옵션 이론가 차이 만큼의 이익을 수수료로 취득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님

은행들이 판매하였던 키코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이론가³⁾의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⁴⁾ 즉, 키코 상품은 은행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수수료로 취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 것입니다.

2) 기초 외화를 미리 정한 환율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키코 상품을 구성하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는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 풋 및 콜옵션의 행사 가격, 양 barrier인 KI와 KO, 외화 현물환율, 계약금액의 크기, 만기의 장·단, 이자율(혹은 선물환율)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위 변수를 블랙숄츠공식을 기초로 설계된 컴퓨터 옵션가격산정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KIKO를 구성하는 풋과 콜의 각 옵션 이론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레버리지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 KIKO계약 만기시 기업의 외화 순 유입액이 KIKO계약 당시 환헷징 대상 외화 금액으로 정한 풋옵션 금액의 2배(즉, 콜옵션 계약금액)보다 적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KIKO계약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경제학에서 ‘제로코스트’라는 용어는 교환되는 옵션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론가 차이가 많이 나는 키코 상품은 ‘제로코스트’상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⁵⁾

- (4) 시중 은행들이 환위험 헤지에 적합한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기망하여 수출중소기업에게 키코 상품을 판매

수출기업은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환위험 헤지상품에 가입하여 환손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환위험의 헤지 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리딩, 래깅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07년 경에는 환율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시중 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환율하락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환헤지 상품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키코 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의 설명을 신뢰했고, 더군다나 은행들이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기에 키코상품에 가입하였던 것입니다.

나) ‘키코 사태’의 발생 및 민사 소송의 제기

(1) 이른바 ‘키코 사태’의 발생

이른바 키코 사태란, 2008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하였던 우량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콜옵션 행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도산하거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일련의

5) 파생상품 전문가인 경제학자 Robert Strong은 그의 저서 「파생상품 개론」에서 “제로코스트 옵션은 매도한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매입한 풋옵션의 프리미엄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전문가인 경제학자 John Hull은 그의 저서 「옵션, 선물 및 기타 파생상품」에서 “제로코스트 옵션의 최초 계약이 성립될 때 콜옵션의 가격은 풋옵션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의미합니다.

(2) 키코 사태의 피해규모

외국계 은행과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아래 표1 참고). 또한,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38개사이며, 2010년 6월 기준으로 키코거래로 인해 3조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아래 표2 참고).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키코거래로 인하여 높은 이율의 추가 대출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1> 은행 별 KIKO 계약 건수

은행	계약 건수	비고
씨티은행	118	외국계
신한은행	93	국내은행
외환은행	92	국내은행
SC제일은행	75	외국계
우리은행	22	국내은행
국민은행	18	국책은행
하나은행	17	국내은행
기업은행	15	국책은행
산업은행	14	국책은행
HSBC	7	외국계
골드만삭스	1	외국계
대구은행	1	지방은행
JP 모건	1	외국계
바클레이즈	1	외국계
	합계 475	

*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기간 : 2007. 7. ~ 2008. 3.)

<표2> KIKO 계약기업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08.12말	'09.12말	'10.6말	'08.12말	'09.12말	'10.6말	'08.12말	'09.12말	'10.6말
중소기업	△14,970	△21,935	△22,582	△8,842	△1,459	△678	△23,812	△23,394	△23,260
대기업	△5,980	△8,645	△8,987	△2,807	△245	0	△8,787	△8,890	△8,987
합계	△20,950	△30,580	△31,569	△11,649	△1,704	△678	△32,599	△32,284	△32,247

*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통해 집계('08.1월 이후 누계) KIKO거래 관련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감안하지 않은 손익

** 2010. 10. 28. 금융감독원 발표

(3) 키코 사태의 피해기업들의 민사소송 제기

키코 사태가 발생하자, 키코 피해기업인 S&T 모터스가 2008. 8.경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 총 220여 기업이 키코 판매은행을 상대로 옵션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소송의 경과

(1) 사건의 목록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20여개의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개별사건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목록이 정리되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반적인 진행 경과

개별사건의 목록과 별개로, 키코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 기	내 용
2008. 10.	피해기업 70개사, 서울중앙지법 옵션효력정지 가처분소송
2008. 11.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200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소송 관련, 피해기업 모나미, 디에스엘시디 승소
20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4개 재판부 키코 1심 판결 선고, 19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0. 12. ~ 20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17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1. 5.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 (130여개사)
20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선고, 4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2. 9. ~ 2013.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28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3.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 1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3. 9. 26. 2013. 9. 26.	대법원 키코 사건 판결 선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2014. 6.	대법원 키코 사건 13건 심리불속행 판결

(3) 키코 사건 민사소송의 법적 쟁점 및 문제점

키코 사건의 법적 쟁점은 ① 키코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② 키코 계약의 약관성 여부, ③ 제로코스트 및 기망여부, ④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부 위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 9. 26. 선고한 위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키코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키코 계약은 계약 체결시에 옵션의 평균 이론가 차이가 2.5배에 달할 만큼 은행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바,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키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풋옵션과 콜옵션의 이론가 차이가 평균적으로 2.5배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동일하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 키코계약의 약관성 여부에 관하여

키코계약은 정형성을 띠고 있어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의 극히 일부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거쳤으므로 키코계약을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조건 중 일부라도 합의를 하였다면 약관성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의 조건을 결정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판결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 제로코스트 및 기망여부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키코계약은 옵션의 이론가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금융전문가인 시중 은행들이 가장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금융전문가인 은행이 ‘제로코스트’의 의미를 몰랐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은행의 승소를 보장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은행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고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통화옵션계약 자체에서의 손실의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외환현물에서는 그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손익은 변화가 없다고 한바 있는데, 이는 키코 상품이 피해기업의 풋옵션에 비해 은행의 콜옵션의 규모가 계약금액의 2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부 위반 여부에 관하여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키코통화옵션계약 체결에 적절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 및 키코 상품이 원고들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및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키코 상품의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기업은 은행의 설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키코상품이 선물환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은행이 고객의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옵션의 이론가 차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3차보고서 173쪽 기재에 따르면, 사법부가 청와대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키코 사건 판결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키코 사건 판결의 재판장은 피고 발인 양승태였으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주심을 맡은 사실이 있습니다.

4) 범죄성립의 검토

위와 같이 청와대와 상고법원 설치를 거래하기 위하여, 피고발인들은 키코 사건을 담당하였던 대법관 혹은 관여 법관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은행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 과거사 사건 관련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⁶⁾들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긴급조치 사건, 고문·조작간첩 사건 등 과거 국가범죄 내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모임 및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입니다.

피해자 김원중, 오종상은 과거 국가의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진실·화해

6)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랍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합니다)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각 혐의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받고, 각 재심절차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아래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법농단의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피해자 오종상 - 긴급조치위반 사건

(1)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피해자 오종상은 1974. 6. 6.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 등의 방법을 통한 강압적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오종상은 1974. 8. 8.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1974. 9. 23.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1975. 2.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과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재심판결

피해자 오종상은 2007. 10. 30.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가운데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단순 발언으로 처벌받은 전형적 사례로,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에 의하여 정치적 비판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하고 긴

급조치를 비판하는 국민을 과도한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한 것은 정권 안보 및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오종상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비상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09. 12. 29. 재심결정이 내려졌으며, 2010. 4. 30.에는 2009재노19호 판결을 통해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1974. 8. 23.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2010. 12. 16. 대법원에서는 2010도5986호 상고심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무효여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각하판결

피해자 오종상은 2011. 7. 29. 국가의 공무원들 행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에서 ‘피해자 오종상이 2005. 4. 19.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2006. 6. 13. 생활지원금 42,554,64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고, 2005. 6. 22.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위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였던바, 오종상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는 ‘고발인 오종상이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라고, 당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일 뿐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과는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오종상의 청구금액 중 115,378,8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16. 5. 1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도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피해자 오종상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오종상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2013다200759 판결).

나) 피해자 김원중 - 재일동포조작간첩사건

(1)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피해자 김원중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재일교포로, 1974.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해 1975. 3.경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김원중은 1975. 10. 17. 서울대학교 왕릉사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1975.

10. 7.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5. 11. 7.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로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고문, 가혹행위 등의 방법을 통한 강압적인 조사를 받으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김원중은 1976. 4.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1976. 9. 6.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1976. 12.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과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재심판결

피해자 김원중은 2010. 7. 30. 과거사위원회의 ‘**재일동포 김원중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 진행결과보고서**’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원중을 연행하여 15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통하여 얻은 임의성 없는 진술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하여 김원중을 간첩죄로 처벌받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김원중에 대한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으나, 해당 사건에 관한 과거사위원회 조사기간 만료로 조사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김원중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울고등법원 76노1180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1. 11. 10. 재심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3. 29.에는 2011재노73호 판결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어 2012. 4. 6.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김원중은 2012. 6. 4.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10. 김원중에게 형사보상금 480,167,200원, 형사비용

보상금 10,321,579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해당 결정은 2012. 9. 21. 확정되었습니다.

(3)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기각판결

피해자 김원중은 2013. 4. 22. 국가의 공무원들이 1975. 10.경부터 행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 및 그에 이은 기소, 재판, 징역형 집행 등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2,096,755,87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김원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형사보상청구가 확정된 2012. 9. 2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고발인 김원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2013가합516527 판결).

다) 민간인희생 사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다수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의 증명력을 부인하여, 특히 보고서상의 희생자로 ‘추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컨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어 주거지에서 1~2달 지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이 구금기간 중 고문에 의한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3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피고발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임종헌의 지시를 통해, 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모 판사가 2015. 7. 27.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015. 7. 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을, ② 당시 법원행정처의 시모 심의관이 다른 심의관들과 협업하여 2015. 7. 28.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 문건을 각 작성하였고, ③ 2015. 11. 19.에는 임종헌 차장이 직접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각 문건에 따르면, **피고발인 양승태**는 대통령을 면담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을 위해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

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고, 그 사례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3차보고서 173쪽 ; 2015. 11. 19.자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국가배상을 제한한 구체적 판결로는, 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시효항변을 저지한 후 권리행사기간 6월)으로 제한한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②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는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도록 한 2012다204365 판결, ③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 2014다234155 판결, ④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아니라는 2013다217962판결, 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2012다48824 판결이 적시되었습니다(3차보고서 별지 3 ; 2015. 7. 27.자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당시 피고발인 양승태는 위와 같은 과거사 판결이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온 데 대해,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중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2015. 7. 28.자 상고법원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 문건).

4) 범죄성립의 검토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 어떠한 내·외부의 권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통상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법 원리입니다. 피고발인 양승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상 요구인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양승태는 재직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의 과거사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재판결과를 상고법원 입법추진과 관련한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더욱이 피고발인 양승태가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사건들은 모두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해당 사건의 실질적 피고로 본다면, 피고발인 양승태는 자신이 추진하던 정책을 위해 소송 당사자 일방과 ‘판결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발인 양승태가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라며 내세운 과거사 사건의 판결 중 피해자들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당시 대법원장인 피고발인 양승태가 직접 판결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 양승태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위 과거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대법관들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양승태가 위 과거사 사건의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 목적물로 삼고서, 해당 재판의 진행경과,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 및 담당 대법관의 심증, 선고시점과 같은 절차적 사항 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 누설한 행위로, 직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합니다.

라. 콜텍 경영상 해고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2006. 4.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합니다)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설립되자, 주식회사 콜텍(이하 ‘콜텍’이라 합니다)은 2007. 1. 조합원 4명을 강제배치전환명령하고, 같은 달 22. 조합원 2명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회사는 같은 해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이인근 등 간부 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40명에 대하여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다가 급기야 같은 달 9. 휴업을 통보하고 같은 해 7. 10.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콜텍은, ① 매출액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11억원에서 690억원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같은 기간 손익 또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66억원 이상의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00)이 2005년 241.81%, 2006년 370.67%, 2007년 491.34%로 동종업종의 유동비율(2005년 103.31%, 2006년 103.91%)을 훨씬 상회하여 신용상태 및 지불능력이

매우 양호하였다는 점, ④ 부채비율이 2005년 35.40%, 2006년 30.48%, 2007년 22.38%로 동종업종의 부채비율(2005년 125.13%, 2006년 168.35%)을 훨씬 하회하여 자금조달 또한 상당히 안정적인 점, ⑤ 2007년도 매출액은 2006년도 대비 10.6%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06년도 대비 15.08% 증가하는 등 경영의 수익성 또한 양호하고 향상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콜텍지회 조합원 39명은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2008가합10205호, 제1사건), 먼저 해고된 이인근 등 4명은 2008. 8. 15. 같은 기간 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2008가합23355호, 제2사건).

나) 제1사건의 경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 기	내 용
2008. 5. 28.	소 제기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기각 판결(2008가합10205호) 관여 법관 : 최승욱(재판장), 이혜성, 강윤희
2009. 4. 17.	조합원들 항소장 제출
2009. 11. 27.	서울고등법원, 1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 무효라고 판결(2009나39600호) 관여 법관 :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2009. 12. 28.	콜텍 상고장 제출
2010. 10. 4.	한국경영자총협회 ‘콜트약기,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음에도 고등법원이 표면적인 재무자료만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바임’이라는 의견을 포함한 ‘고등법원의 콜트약기, 콜텍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의견서 발표(위 의견서는 같은 달 6. 대법원에 제출됨)
2012. 2. 23.	대법원 제1부, 파기환송 판결(2010다3629호) 관여 법관 : 대법관 박병대,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2014. 1. 1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2012나21609호) 관여 법관 :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2014. 1. 24.	조합원들 재상고
2014. 6. 12.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4다12843호) 관여 법관 : 조희대,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다) 제2사건의 경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 기	내 용
2008. 8. 15.	소 제기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2008가합23355호) 관여 법관 : 최승욱(재판장), 강지웅, 강윤희
2009. 5. 22.	조합원들 항소장 제출
2009. 11. 27.	서울고등법원, 1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 무효라고 판결(2009나47090호) 관여 법관 :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2009. 12. 28.	콜텍 상고장 제출
2010. 10. 4.	한국경영자총협회 ‘콜트약기,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음에도 고등법원이 표면적인 재무자료만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바임’이라는 의견을 포함한 ‘고등법원의 콜트약기, 콜텍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의견서 발표함(위 의견서는 같은 달 6. 대법원에 제출됨)
2012. 2. 23.	대법원 제2부, 파기환송 판결(2010다3735호) 관여 법관 : 대법관 전주안,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2014. 1. 1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2012나22862호) 관여 법관 :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2014. 1. 24.	조합원들 재상고
2014. 6. 12.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4다12843호) 관여 법관 : 박보영,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2) 3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3차보고서의 별지 3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에서는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이라고 밝히고 있고, 정리해고 사건 판결

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이 사건 제2사건 상고심 판결)을 적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3차보고서 별지 3, 1쪽 및 3쪽).

3) 범죄성립의 검토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6. 1. 25. 95헌가5 참조).

피고발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고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당시 대법관들[박병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과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조합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 내지 침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4)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현재의 상황

정리해고가 정당하였다는 재판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합원들은 그 후 분노와 절망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 이혼을 한 조합원, 감당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조합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하여 흐느꼈던 조합원 등 생계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감, 국가나 법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정리해고된 이후 11년간을 어렵게 버티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갑을오토텍(주)는 2010. 1.경 퇴직한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0. 7.경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이하 ‘갑을지회’라 합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설, 추석상여금을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리직 노동자 김모씨(제1사건)와 생산직 노동자 297명(제2사건)이 갑을오토텍(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제1사건의 경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 기	내 용
2011. 6. 15.	소 제기
2012.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구기각 판결(2011가소29741호, 관여 법관 : 판사 박윤정)
2012. 2. 2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청구기각 원고 항소장 제출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원고 청구 인용 판결(2012나4372호) 관여법관 :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청구 인용	
2012. 9. 11.	갑을오토텍(주) 상고장 제출	
2013. 8.	전원합의체 회부	
2013. 8. 27.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탄원서 제출	통상임금 추가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관련
2013. 8. 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일동 탄원서 제출	
2013. 9. 2.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탄원서 제출	
2013. 9. 3.	대한상공회의소 탄원서 제출	
2013. 12. 18.	대법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신의칙항변 인정 하여 청구기각 취지로 파기환송(2012다89399호) 관여 법관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 철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 소영 (반대의견) 김신 이인복 이상훈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청구인용판결(2014나794호) 원고는 파기환송심에서 정기상여금 추가로 인한 연차수당 청 구 주장을 철회하고,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료를 평균임금에 산 입한 후 퇴직금차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변경하였고, 대 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다) 제2사건의 경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 기	내 용	
2010. 7. 3.	소 제기	
2011.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일부청구 인용 판결(2010가합4045호) 관여 법관 : 판사 송인혁(재판장) 강민정 정금영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를 통 상임금 추가후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인용	
2011. 10. 18.	갑을오토텍(주) 항소장 제출	
2012. 9. 21.	대전고등법원 일부청구 인용 판결(2011나6388호) 관여 법관: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성률 유선주 원심 유지 취지	
2012. 9. 28.	갑을오토텍(주) 상고장 제출	
2013. 8.	전원합의체 회부	
2013. 8. 27.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탄원서 제출	통상임금 추가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관련
2013. 8. 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일동 탄원서 제출	
2013. 9. 2.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탄원서 제출	

2013. 9. 3.	대한상공회의소 탄원서 제출
2013. 12. 18.	대법원,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2012다94643호) 관여법관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신 김소영
2015. 8. 12.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청구인용판결(2014나169호) 원고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주위적으로 정기상여금 추가로 인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예비적으로 설·추석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청구함.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피고의 신의칙항변을 인정하여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
2015. 10. 6.	갑을오토택(주), 예비적 청구인용 부분에 대하여 상고
2018. 6. 1.	대법원 민사 1부 심리 중

2) 3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특별조사단은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에서 관련 문서로 ‘통상임금 판결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69, 391]과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분석’[409]를 적시하고 있고(3차보고서 148쪽 내지 150쪽), 별지 3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에서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409]은 **피고발인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헌의 지시로 2013. 8. 22. 작성 및 보고한 것으로,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제1, 2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같은 해 9. 5. 변론기일의 공개 및 생중계가 결정되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경제주체 주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것인바, 그 주요내용으로 ‘재계의 분석 결과는 과대계상이고, 노동계의 분석 결과는 과소 계상이며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한 후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검토함'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위 문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단은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69, 391]은 정◆◆ 심의관이 임종헌의 지시로 2013. 12. 19. 작성 및 보고한 것으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제1사건)이 선고된 후 청와대 등 각계의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위 문서 중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 판결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한 부분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임종헌이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당시 민정수석 : 홍경식)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위 문건과 관련하여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차 조사보고서의 별지 3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에서는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이라고 밝히고 있고,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고려한 판결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제1사건)을 적시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3차보고서 별지 3, 1쪽 내지 3쪽).

3) 범죄성립의 검토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6. 1. 25. 95헌가5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합니다)는 2013년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시 경제적 영향분석’보고서를 통해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추가비용 규모를 최대 38조 5천 509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고, 같은 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을 최소 14조 6천 억 원에서 최대 21조 9천 억 원으로 계산했던 점(고정상여금만 인정될 경우 약 15조 원, 고정상여금 뿐 아니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될 경우 약 22조 원으로 추산), 정◆◆ 심의관이 작성한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409]에 따르면 재계의 분석 결과는 과대계상이고,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한 후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검토한 점 등에 비추보면 피고발인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

비용 증가액에 대한 재계의 주장이 과대계상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3차보고서 별지 3,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별지 3, 1쪽 내지 3쪽}하여 재계의 신의칙항변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고려하기 위하여’ 재계의 신의칙항변을 수용하여 통상임금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당시 대법관들[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이 직권을 남용하여 갑을오토텍(주) 소속 노동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 내지 침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제1, 2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과정에서 당시 GM대우 회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바, 제1, 2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판결까지의 경위[재계→BH(청와대)→양승태]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4)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현재의 상황

통상임금 판결 이후 갑을오토텍(주) 소속 생산직 노동자들의 파기환송심에서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신의칙항변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의칙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시영운수 통상임금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는데, 제1, 2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 중 일부가 여전히 해당사건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 쌍용자동차 경영상 해고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2009. 1.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차’라고 함)는 2009. 3. 31. 무려 2,646명(전 직원의 37%, 생산직의 45.5%)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 후,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2009. 6. 8. 희망퇴직하지 않고 남은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이후 추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인원은 165명)를 실시합니다. 이 중 156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⁷⁾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약 2년간의 심도깊은 심리 끝에 2014. 2. 7.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⁸⁾

그러나, 불과 9개월(접수 기준으로 8개월) 후인 2014. 11. 13.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⁹⁾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등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②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사용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쌍용차의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보았습니다. ④ 나아가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특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판결(재판장 강인철, 지창구, 강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22574 판결, 사무직인원 5명이 평택지원에 제기한 2009가합3533판결도 있음.

8)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판결(재판장 조해현, 마은혁, 김호춘)

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재판장 권순일, 민일열, 주심 박보영, 김신)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인력규모를 산출하였고(사무직은 경쟁사와 비교), 각종 생산성 지표도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⑤ 2009. 8. 6. 무급휴직은 극심한 노사 대립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에 불과하고,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축소, 복지중단,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회계조작 즉,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대계상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도 이미 1,8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차였던 C200(코란도C)의 경우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소한 이와 관련한 매출수량은 반드시 추정되었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차종의 경우 모두 공헌이익이 (+)였으므로 계속 생산되어 판매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미래현금흐름증가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신차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차종의 계속판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이 561%에서 187%로 떨어지게 되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 전반기까지 계속 (+)의 영업현금흐름을 유지하였으므로 영업만으로도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만연히 쌍용차의 재무건전성 위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사건이 접수(2014. 3. 13.)된 지 불과 8개월 후인 2014. 11. 13.에 선고¹⁰⁾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도 아니고 파기환송까지되는

사건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불과 8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3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2015. 7. 28. 피고발인 시진국 심의관이 피고발인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80]”을 보면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하면서 “④ 노동”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0.)” 및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가 그대로 삽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7.20.)”[별지3]에 의하면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미명하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이라고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11. 19. 피고발인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82]”에 의하면,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하면서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의 사례로 정리해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¹⁰⁾.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10) 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6869, 56876(병합) 판결(재판장 김우진, 홍지영, 송석봉)로 원고 항소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2016. 9. 28. 2016다29944, 29951(병합)심리불속행(재판장 이기택, 김용덕, 주심 김소영)으로 기각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다수의 원고가 회사와 합의(2015. 12. 30.)를 하여 소를 취하하여 그 이후 판결의 당사자는 7~8명에 국한됩니다. 2015. 12. 30. 합의에서 회사는 정리해고 인원에 대한 단계적 채용을 약속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계속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위 2)에서 본 3차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대법원이 특정 의도(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BH의 의도에 부합함으로써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는 의도)하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정채 불명의 기준(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다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법리 및 법관의 양심에 기초하여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3차 보고서에 언급된 피고발인은 피고발인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 피고발인 시진국 심의관인데, 이들은 문제가 되는 대법원 판결의 대법관은 아니지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이 BH 의도에 부합하도록 청와대과 교감하였고, 관여 대법관들과 공모하여 BH의 의도대로 선고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협력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자료 3에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별첨자료에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여 대법관들은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정다주, 피고발인 시진국을 비롯한 다른 피고발인들로부터 BH의 의도를 전달받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판결(병합) 판결의 관여 대법관인 재판장 권순일(피고발인), 민일영(피고발인), 주심 박보영(피고발인), 대법원 2016. 9. 28. 2016다29944, 29951(병합)심리불속행 판결의 관여 대법관[재판장 이기택(피고발인), 김용덕(피고발인), 주심 김소영(피고발인)]들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양승태는 판결에 직접 관여한 법관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었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상고 법원 추진 등을 위해 BH에 대법원이 “협조”하도록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중 핵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합니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 17,000여 명은 「교사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인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 역시 자신들의 양심을 걸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국선언 직후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의 뜻을 모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재차 발표하였습니다(이하 ‘2차 시국선언’이라고 합니다).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하여 대규모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어 전교조 사무실 및 법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금지의무)¹²⁾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1, 2차 시국선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기소 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판사 김동현)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2786 판결),¹³⁾ 항소심 법원(재판장 판사 금덕희, 이진성, 이보람)에

1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3) 피고인들이 참가한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거나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¹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노638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대하여 종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었는 바, 1, 2차 시국선언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¹⁵⁾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1, 2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참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수의견(대법관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은 1, 2차 시국선언은 유사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14) 시국선언문에서 당시 정권을 비민주 세력으로 비유하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이념, 제도, 역사적 사실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행위 과정에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 및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5) 대법관 신영철의 경우, 2차 시국선언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도 아니라며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차 시국선언 관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3차 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피고발인 임중현이 피고발인 정다주(기조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다 전보로 해당 문건 작성 당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였습니다. 현재 울산지방법원 제14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0.)[문건번호 70, 3차보고서 별지 3],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0.)[문건번호 71]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 중 하나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주인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한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3차보고서 171~177쪽, 별지 3 참조).¹⁶⁾

위 문건은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린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판결의 법리보다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이라는 결과

16) 이러한 내용은 다시 피고발인 정다주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문건번호 80], 피고발인 임중현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문건번호 82]에도 그대로 삽입되었습니다.

를 강조하고 있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여러 차례에 확인되는 ‘전교조 죽이기’의 한 사례로 보입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관한 판결은 피고발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부분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어 내린 판결이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3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4) 범죄성립의 검토

피고발인 양승태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실제 관여한 법관입니다. 피고발인 양승태가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향에 협조하고자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외의 요소를 들어 판결의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견 중 대법관 안대희는 2012. 4. 19.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관하여 유죄의견을 낸 다음, 채 5개월도 못되어 같은 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취임하였는바, 이 역시 ‘거래’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피고발인 임종헌의 경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 즉 거래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문건 작성을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현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건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피고발인 양승태를 위한 말씀자료로 준비된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 양승태 역

시 이러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 참석 교사 사건¹⁷⁾ 관련

1) 사건의 개요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 도덕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고
(故) 김형근은 2005. 5.경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2회 남녘 통
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이하 '이 사건 전야제'라고 합니다)에 교사, 학
생 및 학부모 등 18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관촌중학교는 2005년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된 터라 학교 내 통일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형근은 학생들과 함께 이 사건 전
야제에 참여하여 6·15 공동선언을 외우거나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노
래를 불렀습니다.

이로부터 약 1년도 훨씬 지난 2006. 12. 6.경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전교
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형근이 “제국주
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와 같은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
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였다
는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¹⁸⁾

17)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
다.

18) 당시 김형근이 참여했던 행사의 이름은 '빨치산 추모제'가 아니라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
제'로 본 추모제 행사 전날 저녁에 이루어진 문화제 행사였습니다. 전야제 다음날 김형근과 학생들
은 함께 산행을 갔기에 본 추모제 행사에는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빨치산 추모제'라는 행사명은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붙인 것임에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실제 재판에 사용되었던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라는 이름 대신 '빨치산 추모제'라는 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
다.

교육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하여 왔던 김형근은 한순간에 ‘빨갱이 교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¹⁹⁾의 혐의로 기소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1심 및 2심의 판단

1심 재판부(판사 진현민)는 2010. 2. 17. 김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고단314 판결). 이에 검찰이 반발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재판장 판사 김병수, 박세진, 윤미림)도 2010. 9.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노224 판결).

1, 2심 법원 모두 김형근이 산악회 행사에 겸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일회적으로 참가하게 된 점, 김형근의 활동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서 여겨지고 있었던 점, 전야제 행사 참가에 그치고 추모제의 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점, 빨치산의 활동과 관련한 문학작품 출간,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주의적 북송 등 시대적 상황 변화로 인하여 빨치산의 과거 활동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은 전야제가 아니라 다음날의 본 행사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빨치산 추모제의 개최나 참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는 점

1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을 들어 김형근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심 김용덕, 이상훈, 김소영)**은 김형근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신문기사 등을 인용하며 원심의 사실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이른바 ‘빨치산 구호’ 등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은 본 추모제가 아니라 전야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형근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하였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김형근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 341 판결). 증거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패킷감청 등 끊임없이 국가의 감시에 시달렸던 김형근은 간암으로 투병하다 2015. 9.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3)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피고발인 임종현이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현안 관련 말 씀자료’(2015. 7. 20.)[문건번호 70, 3차보고서 별지 3]에는 한 언론매체가 악의적으로 붙인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 참석 교사 사건 판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근거자료로,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한 사례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여 혼돈·경시되어 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3차보고서 171~177쪽, 별지 3 참조).²⁰⁾

위 문건은 1, 2심 법원이 김형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과거 정권에서의 적폐 내지 왜곡된 과거사와 혼돈·경시된 국가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왜곡된 과거사와 국가관과 관련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무죄→유죄), ▲국가관을 바로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에 기여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은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 참석 교사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과거 정권을 적폐, 과거사 왜곡, 국가관 혼돈·경시와 동일시하는 한편, 당시 정권(박근혜 정권)

20) 위와 같은 내용은 다시 피고발인 정다주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문건번호 80] 등에도 그대로 삽입되었습니다.

을 과거 정권과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였습니다. 색깔론에 기반해 한 교사를 ‘빨갱이’로 몰아갔던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판결 중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 참석 교사 사건 판결이 **피고발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국가관 재정립’이라는 기치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어 내린 판결이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3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4) 범죄성립의 검토

3차보고서 별지 3. 기재 말씀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정부에서의 과거사와 국가관을 ‘바로잡는’ 판결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양승태는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었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재판 보직에 판사 성향을 가려 넣을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본안 심리 전 심사절차를 하급심에서 진행하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피고발인 양승태**의 ‘상고법원’ 도입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양승태**가 김용덕 전 대법관을 이 사건의 주심으로 하여 심리하게 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결론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임종현의 경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 즉 거래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문건 작성을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현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건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피고발인 양승태를 위한 말씀자료로 준비된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 양승태 역시 이러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고용노동부는 2013. 10. 24.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이하 ‘범외노조 통보처분’)하였습니다. 전교조는 범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은 인용되었으나 본안은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전교조는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그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3차 보고서에서 문제된 부분은 바로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인용된 후,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3번째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본안에서 패소하여 다시 범외노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교조는 상고와 동시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결정을 지체하여 전교조는 2심 본안판결 선고시인 2016. 1. 21. 부터 현재까지 법외노조 상태에 있습니다.

가) 본안사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호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9.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판결, 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판사). 이에 불복하여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1.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판결, 황병하, 유현중, 김관용 판사). 전교조는 상고하여, 현재 본안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대법원 2016두32992).

나) 효력정지사건

한편, 전교조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3번에 걸쳐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각 효력정지 결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효력정지결정(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3. 11. 13.자 2013아3353결정, 관여 법관 : 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판사).

전교조가 본안에서 주장하는 청구이유에 해석상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효력정지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3. 12. 26.자 2013

루1179결정, 관여 법관 : 민중기, 임민성, 안중화 판사).

- 2차 효력정지결정[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4. 9. 19.자 2014아366결정, 관여 법관 : 민중기, 유현중, 김관용 판사,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였고 재항고 인용 결정(대법원 2015. 6. 2.자 2014무548결정, 관여 법관 : 주심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2014아366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결정(2014무548)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음을 근거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한 효력정지사유는 더 이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3차 효력정지결정(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5. 11. 16.자 2015아328결정, 관여 법관 :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 판사)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2015아328결정에서는 현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법적 해석과 법령상 근거의 존부, 이 사건 시정요구와 이 사건 처분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의 다툼 여지가 있는 쟁점이 남아 있어 본안소송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4. 12. 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14. 9. 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4. 9. 30. 대법원 2014무548호로 재항고한 상황에서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을 한 문건이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첫째,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위 인용 결정 후의 청와대 입장을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한 현안으로 취급’으로 분석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재항고 기각은 양측(BH 및 대법원)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인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관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습니다.

다섯째,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은 3차보고서 <별지 3>의 <대법원 현안말씀 자료-기획조정실(2015. 7.)>에도 당시 정부의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이상과 같이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BH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재항고 인용 결정의 대가로 BH로부터 얻을 반대급부까지 계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대가로 이득을 얻겠다는 차마 믿기 어려운 ‘재판 거래’를 실제로 기획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재항고 인용이 BH와 대법원 양측 모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전제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극히 이례적으로 2015. 5. 28.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불과 5일 만인 2015. 6. 2.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정식으로 접수되기도 전에 미리 재항고 신청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문건에 따라 본안사건 2심에서도 전교조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특히 종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했던 민중기 재판장이 황병하 재판장으로 교체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본안사건 시간 끌기, 재판장 교체도 앞서 본 문건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피고발인 임종현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청와대와 음험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문건 작성을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음험한 거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으로 할 수도, 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건은 피고발인 양승태의 사전 지시 내지 적어도 사후 승인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발인 양승태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현, 정다주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관의 재판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심

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서 ‘재향고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실행에 옮겼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
다. 실제 문건에는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
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
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헌, 정다주를 포함한 법원행정
처 관계자들이 재판부와 어떤 의사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실제로 재판결과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합니다) KTX 승무원 사건²¹⁾ 관 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철도청(2005. 1. 1. 한국철도공사로 전환설립)은 KTX 개통을 앞두고 ‘정부
의 공무원 증원 억제방침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승무업무를 외주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KTX 승무원의 열차서비스
업무는 파견금지대상업무이고, 불법파견이 되지 않으려면 독립적인 업체가
독립적인 업무로 해야 하는데, 업무 성격상 적법한 도급은 불가능해 보인

21) 관련 사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사건>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3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2차 사건>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09가합4607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1나78974 판결

3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다는 취지로 회시하였고(2003. 9. 30. 노동부 고용관리과), 철도청 스스로도 위 회신을 인용하면서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철도공사 소속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도급위탁은 곤란”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2003. 10. 27. 철도청 작성 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승무업무 외주화를 강행하고자, 2003. 12. 31. 철도청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주요 임원이 철도청 간부로 구성되어 있던 ‘홍익회’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 사용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년마다 외주 위탁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TX 승무원들은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 소속이 ‘홍익회’에서 2004. 12. ‘철도유통’으로 계속 변경되었고, 2006. 또다시 ‘KTX관광레저’로 이직할 것을 요구받았던바, 승무원들이 2006. 3. 1. 이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공사는 이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 전원을 도급계약해지(정리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 기존 진행된 다수의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자회사인 철도유통이라는 법인격을 이용하였고,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사건에 대한 결정2) 2007년 12월 20일 당시 KTX 승무지부 지부장이었던 ‘민세원’에 대한 파업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912 판결)3) 2008년 4월 8일 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항 |
|---|

고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라1737 결정)

- 4) 2008년 8월 22일 철도공사가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6256 판결)
- 5) 2008년 10월 1일 34명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 지급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449 결정)

위 34명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 본안의 1차 사건에서 1심 재판부(관여 법관 : 재판장 판사 최승욱, 황혜민, 정교형)와 2심 재판부(관여 법관 : 재판장 판사 김용빈, 유석동, 이순형)도 모두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승무원들과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²²⁾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은 근로자들의 주장인 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서 위장도급(주위적 주장), ② 불법파견(예비적 주장) 모두를 배척하면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고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피고발인 임중헌이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0.)[문건번호 70, 3차 보고서 별지 3]에는 스스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했다고 고

22) 이후 118명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2차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09가합4607 판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1나78974 판결). 대법원은 같은 날 위 1차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함과 동시에 2차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백하면서, 그 사례 중 하나로 KTX 승무원 판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열차팀장(안전업무)와 승무원(고객서비스업무)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구성되었고, 당시에 위 대법원 판결은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되는 등 그 문제점이 각계 각층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4대 부문 개혁(노동부문 개혁)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정책 등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KTX 승무원에 관한 판결은 피고발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 하던 당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부문 개혁(노동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어 내린 판결이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3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34명의 KTX 승무원들은 임금지급가처분에 따라 가지급된 임금 반환청구로 인해 1인 당 원금만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채무에 내몰렸고, 소송당사자인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승무원들은 12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명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발인 임종현의 경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 즉 거래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문건 작성을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현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양승태는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었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재판 보직에 판사 성향을 가려 넣을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양승태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결론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심은 ‘판사 사찰 및 통제 의혹’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사퇴한 피고발인 고영한 대법관(2016년 2월 ~ 2017년 5월, 제22대 법원 행정처 처장)으로서, 위 사건의 배당 과정을 비롯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법행정권의 권한 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심지어 노동부와 사용자인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조차도 2003년 외주화 당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도급위탁은 곤란(즉 도급시에는 불법과건 해당)’하다고 자체 결론을 내린 사안에서, 도저히 여러 증거들에 반하여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을 것인 점에서, 이

부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 철도노조 2009년 파업 형사 사건 관련²³⁾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파업의 경과와 1, 2심 판결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와 사이에 2008년부터 1년 반에 걸쳐 단체협약 갱신 및 2009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자, 2009. 11. 26.~12. 3. 전면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간부 226명을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김기태 위원장 등 5인에 대한 사건(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도부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 관련 형사사건이 계류되었습니다.

중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도부 사건’의 1심 법원(판사 강성국) 및 2심 법원(판사 이창형, 김정환, 유현정)은 이러한 중전 판례 입장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판례 변경과 잇따른 하급심의 무죄판결

23) 관련사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판사 강성국)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판사 이창형, 김정환, 유현정)

3심-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사이 전국 각 하급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순번	관련 사건	선고결과
1	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 2729 (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대전지방본부 간부 22명 무죄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1. 29. 선고 2010고단 285 판결	영주지방본부 간부 9명 무죄
3	대구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노1074 판결	부산지방본부 간부 10명 무죄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2. 14. 선고 2010고단 170, 2010고단335(병합) 판결	영주지방본부 간부 10명 무죄
5	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대전지방본부 간부 1명 무죄

다) 대상판결

그런데 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노조로부터 파업을 예고받고 이에 대비하여 대체근로, 비상운송계획까지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파업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²⁴⁾는 결론으로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관여 법관 :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그로 인해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선고되었던 하급심 무죄판결들이 파기되고, 약 226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1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10여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미도과로 현재 노사대타협에 따른 해고자 복직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논리칙에 반하는 판결이고, 당시에 학계, 법조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제기되었던 바 있습니다.²⁵⁾²⁶⁾ 이 사건 파업의 경우,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하고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선정협약과 통보까지 하였고, 철도공사가 사전에 예측하고 심지어 대비까지 하였던 사건으로, 도저히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으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수서 KTX 민영화 반대)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 2. 3.에 선고가 되었는데, 양 파업의 방식은 완전히 동일하였고 기간은 오히려 2013년 파업이 23일로 2009년 파

24)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판결문 12면).

25) 도대체 어떠한 논리칙에 의하면 2011년 전합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논리력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에 대법원의 의도가 궁극할 뿐이다(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4년 10월호).

26) 이 사건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징표를 숨기고 외면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누군가 판결 조작이 아니냐고 비난해도 답할 말이 궁색한 판결이다(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2014년 9월 2일).

업 9일에 훨씬 더 길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²⁷⁾. 즉 사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2009년 파업과 2013년 파업은, 철도노조의 사전예고, 필수유지업무 통보, 철도공사의 대체근로와 비상운송계획 등 대비책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왜 2009년 파업만 유죄인지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임종현**이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0.)[문건 번호 70, 3차 보고서 별지 3]에 의하면 대법원은 스스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례 중 하나로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 사건 판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스스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BH와의 비공식적 물밑 조율을 통해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공공부문 파업 억제)이라는 목적 하에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려진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결국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 판결은 당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부분 개혁(노동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어 내린 판결이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3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27)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발인 임종현의 경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 즉 거래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문건 작성을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현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양승태는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었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재판 보직에 판사 성향을 가려 넣을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양승태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결론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심은 2008년 촛불재판 당시 위법한 ‘배당 관여 및 재판 압력 행사’ 등의 행위로 대법원 진상조사 및 대법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권고까지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2009년 2월~2015년 2월, 대법관 재직)이기도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는 ‘중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벌성이 없다고 본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과업’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례변경을 하였

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이 없이 소부(小部)에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뒤집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사법행정권의 권한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사건의 배당 과정에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 등 전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BH와의 비공식적인 물밑 조율 과정에서 재판의 진행경과나 이후 방향을 보고받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하였다면, 이는 담당 법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차. 철도노조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2012년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철도산업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각계 각층 시민사회로부터 철도 분할 민영화라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청에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상하분리)하여 기존 국가 등이 소유하는 철도(동법 제2조의 철도)의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은 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소유 철도를 다른 민간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던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신설되는 국가소유철도(수서발 KTX) 역시 철도공사가 운영

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철도공사 아닌 제3의 법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정부 계획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철도공사 법무팀 스스로부터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²⁸⁾

특히 철도사업법 제5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국유철도 노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민자철도’, ‘철도공사가 포기한 노선’에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정부 입법안 발의자 이호웅 의원), SR 면허발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면허발급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2013. 12. 9.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이를 위한 수서발 KTX 면허발급 보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12. 27.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인가하였고, 같은 날 밤 9시 국토교통부 기습 면허발급 완료하였던바, 사흘 후인 2013. 12. 30. 철도노조의 파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피고발인 임종헌이 작성하였다는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0.)[문건 번호 70, 3차보고서 별지 3]에는 스스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례 중 하나로 철도노조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등기 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8) 철도공사 법무처 역시 수서발 KTX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철도운영부문을 공사화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조항을 삭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제3의 법인(그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든, 계열회사이든 제3자임은 명백)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려는 계획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철도공사 법무처 법률검토의견서).

즉 위 문건에 의하면, 대법원은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조한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설립등기 사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법원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과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발인 임종현의 경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 즉 거래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문건 작성을 피고발인 정다주에게 지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현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건은 피고발인 양승태의 사전 지시 내지 적어도 사후 승인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발인 양승태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위 피고발인들이 BH와의 비공식적인 물밑 조율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 인가의 진행경과나 이후 방향을 보고받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하였다면, 담당 법관들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보면, ① 대전지방법원이 2013. 12. 27. 오후 8시 40분경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 등기를 인가하자마자, ② 불과 20분만인 오후 9시경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 이어 오후 10시경 브리핑을 통해 철도과업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면허발급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고, 이러한 기습 면허발급을 통한 강제적인 상황 종식은, 철도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종교계 등에 의한 중재는 물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국가적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대사회적, 국민적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전격적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받았습다.

이러한 조치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매우 이례적으로 법원과 국토교통부의 통상적 일과시간이 끝난 9시에 이루어졌던바, 법원과 국토교통부(더 나아가서는 BH, 청와대)가 사전에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번 말씀자료 문건에서도 대법원 스스로가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과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발인들이 연내에 철도과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면허발급을 서두르라는 지시 내지는 위 기한에 맞추어 면허발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 법관에게 연락하거나 설득하였을 확률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법원과 정부 사이에서 어떤 내용의 사전 연락과 교감이 있었는지 엄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 부분 면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2010. 11. 17.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및 전국의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24개의 국립대학교 재학생 2만여 명이 원고가 되어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져 있었고, 국립대학 학생이 납부하고 있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학년부터 2007학년도까지는 80% 내외였고, 2010학년도에는 84.6%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 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이르러 수업료와 더불어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었고,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각 대학 기성회 규약들은 ‘재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중 기성회와 기성회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만, 대학 등록을 위해 기성회장 명의로 부과된 기성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왔습니다. 대학들은 수업료보다 기성회비 인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고, 기성회비를 관리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와 달리 감사를 받지 않아 대학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고,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현재 고등교육법에서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도 기성회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특히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의 고액 등록금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원고들의 연합단체인 고발인 21세기 한국대학생 연합 의장이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 소송의 경위

1, 2심 법원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라는 제3의 단체를 만들어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이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명확히 하며 원고들에게 각 대학 기성회들이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7721, 서울고등법원 2012나19910 판결).

그러나 2014. 1. 16.에 대법원에 접수된 위 사건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2015. 6. 2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다 5531 판결). 다수의견 6,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반대의견 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 : 6의 결과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위 판결의 결과는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하급심 법원과 원고들, 나아가 등록금 경감을 기대했던 전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수의견은 국립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편의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대법관 박보영, 고영한, 김

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을 완전히 묵살하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 2심의 일치된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대법관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상옥, 다수의 견에 대한 보충의견 김창석).

3)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위 판결에 대해 대다수 법조인들이 굳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 173쪽 기재에 의하면,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당해 문서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의 일부로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위 문서는 “협조해 온 사례”임을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사전에’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BH간의 ‘협조’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범죄성립의 검토

위 문서와 관련하여 3차보고서는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3차보고서, 177쪽 참조).

결국 피고발인 양승태와 임종헌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대법관 혹은 관여 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18대 대선을 앞둔 2012. 12. 11.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

장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3. 6.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9.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는바, 대법원은 2017. 7. 16.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하여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2017. 8. 30.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가) 정다주 당시 심의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기재에 의하면, ① 청와대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한 사실, ② 재판 결과에 대해 행정처가 “불안해 하고 있는 입장”임을 청와대에 알린 사실, ③ 이러한 내용들이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보고된 사실, ④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가능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한 사실, ⑥ 향후 대응 전략으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짤 수 있으므로,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 사실 등이 확인됩니다(3차보고서, 112-113쪽).

나) 이 사건이 파기환송심에 계속중이던 2015. 10. 6. 무렵 임종현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2015. 10. 6. 무렵 작성한 파일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28기)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3차보고서, 123쪽 참조).

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2015. 2. 9. 오후 4시경, 박○○ 심의관이 채동수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작성하여 다음 날인 2015. 2. 10. 임중현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한 문건 기재에 의하면, 상고심의 예상 쟁점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이 문건은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보고 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정이 드러납니다(3차보고서, 121-122쪽 참조)

3) 범죄성립의 검토

앞서 살펴본 대로, 법원행정처 소속 성명불상자 등은 이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한 사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관여 법관과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통화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발인 임중현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임중현과 피고발인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재판 진행 경과 및 관여 법관의 심증 등을 외부로 누설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피고발인 임중현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문건을 상고심의 연구관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내용에는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2심이 독립적인 증거조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은 아님”,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즉,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상고심의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법원행정처의 이로 인하여 상고심의 재판연구관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현재의 구조를 감안하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대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임종헌의 행위는 직권남용을 통하여 대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관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내란음모등 사건’은 이석기 전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RO’가 2012. 말경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자, 그 당시 정세를 ‘전쟁상황’,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대 지침 및 결의대회 개최 지침’을 내리고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회합,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의 회합을 개최하여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내란음모등 사건’이 공개수사가 되었을 때인 2013. 8. 28.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후보들(문재인, 이정희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기계적으로 달게 하여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시민들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요구가 광범위하게 들끓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간첩조작’ 사건 기획자라고 평가받아온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이 2013. 8. 초순경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내란음모등 사건’은 공개되었고,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탄의 목소리는 일거에 여론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으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권과 그 당시 집권여당이 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 모두를 색깔공세·종북몰이로 공격하는 주요한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그 발언의 내용들에 내란이라는 목적에 대한 집단적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은 무리하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하여 ‘내란음모, 내란선동’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2013년 한국의 법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논리가 그대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내지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것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3. 8. 28. 새벽 국정원 직원들은 ‘채널A’, ‘조선TV’ 등의 이른바 ‘중편방송’ 기자들과 거의 동시에 이석기 전 의원 자택과 오피스텔, 의원실을 비롯하여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의 자택, 사무실,

차량,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종편에서는 하루종일 실시간 생중계하듯 압수수색현장을 방송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7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에서 어떠한 규범적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② 2013. 8. 30. 이상호, 한동근, 홍순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 9. 26. 구속기소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2013. 9. 4. 국회에서 가결된 후 2013. 9. 26. 구속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4),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3명에 대해서는 2013. 9. 30.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3. 10. 25. 구속기소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99). 내란음모등 사건은 이 세 사건이 병합되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연수원 24기)가 담당하였습니다.

③ 1심은 재판기일 50회(준비기일 4회, 공판기일 45회, 선고기일 1회)로 진행되었고, 1주일에 3회 내지 4회 종일 재판이 이어지면서 치열하게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이른바 ‘RO’에 대하여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를 모의한 ‘지하혁명조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측이 강한 문제제기를 하자 1심 재판장은 2013. 10. 22.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조직이나 가입 등 관련된 범죄로 현재 기소된 것은 아니므로 RO와 관련된 기술 중에 RO가 반국가단체인지 여부를 떠나서 RO의 조직에 가입했는지 또는 조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나 싶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RO’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석기 전 의원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형을 비롯

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²⁹⁾ 판결].

④ 항소심 사건(서울고법 2014노762)은 2014. 2. 법원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로 새롭게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재판장 이민걸(연수원 17기)은 2007.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09.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고 2011. 11.부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었는데, 2014. 2. 위 재판부 재판장으로 발령이 되어 내란음모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재판장과 같이 발령을 받은 주심 우배석 판사 진상훈(연수원 29기) 또한 2012. 2.부터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⑤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내란음모’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형 및 자격정지 7년형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이 판결 선고 후인 2015. 2. 주심인 진상훈 판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고, 재판장 이민걸은 2015. 8.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⑥ 상고심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고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가) ‘현안 관련 말씀자료(대외비)’[조사보고서 별지 3][문건번호³⁰⁾ 70]

29) 수원지법 2013고합851 사건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을 2013. 12. 16. 추가로 별건 기소하여 병합한 것입니다.

30) 조사보고서에서 일응 일련번호를 붙인 것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원용합니다.

2015. 7.경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했다는 ‘현안 관련 말씀자료(대외비)’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목차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기술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항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의 첫 번째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하였다는 부분은 굵은 글씨와 밑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조사보고서 172쪽, [82]]

피고발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 11. 19.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그 당시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에 ‘압박카드’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되어 있고, 협조사례 중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한 판결”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등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문건에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시민들은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최고규범인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최우선의 규범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보고서에 첨부·인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음모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기에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자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해당하기에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 것이 아니라, 법관들의 인사권과 소속 기관들에 대한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BH’와의 ‘정치적 사전 교감’과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조율’하여 판결의 결론이 ‘BH’가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이루어지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현 등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공정하고 독립된 형사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행사를 방해한 행위이기에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후속 사안 관련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4. 12. 19.자 2013헌다1 결정).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수권 되어 있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절차에서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 6.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람들의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0320 판결), 항소심은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39856 사건).

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정당해산 결정을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의결하였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장은 2014. 12. 22. 이현숙에게,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2014. 12. 22. 이미옥에게, 전라남도의회의장은 2014. 12. 26. 오미화에게, 여수시의회의장은 2014. 12. 23. 김재영에게, 순천시의회의장은 2014. 12. 26. 김재임에게, 해남군의회의장은 2014. 12. 31. 김미희에게 각각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처리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위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위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퇴직통보를 취소하는 취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도의원 이현숙은 2015. 2. 6. 본안소송 접수, 2015. 3. 5. 퇴직통보 효력정지 및 임시지위확인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5. 3. 18. 가처분사건 심문기일 진행, 2015. 7. 22. 변론기일 진행하고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 2015. 9. 16.로 지정되었다가 2015. 9. 14. 선고기일이 변경되어 2015. 11. 25. 1심 판결선고 및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전주지방

법원 2015. 11. 25.자 2015아27 결정, 같은 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407 판결). 이에 대해 피고측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4. 25. 선고 2015누1125 판결]. 피고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6두39825 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

광주 비례의원 이미옥, 전남도의회 비례의원 오미화, 여수시의회 비례의원 김재영, 순천시의회 비례의원 김재임, 해남군의회 비례의원 김미희 등 5명은 광주지방법원 2016. 5. 19.자 2015아546 결정 및 같은 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0766 판결로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루어진 광주고등법원 2016누3917 사건은 현재까지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소송기획 관련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정당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그 지위를 박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 3차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가)-1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74](조사보고서 157쪽)

피고발인 이진만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피고발인 김종복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등이 TF를 구성하여 검토하였고, 김종복 심의관이 2015. 1. 7. 위 제목으로 작성 부분을 취합, 정리하여 문건을 완성한 후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위 문건에는 ① “당시 상황을 유·불리 공존으로 보고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회이자 GS칼텍스 사건 등 재판소원 사건에서 재판취소방지를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 가능한 점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 처리 모양새를 형성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정무적 분석을 거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은 각하는 부적절이고, 기각 또는 인용이 바람직하나, 기각인 경우에도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이고, ‘의원직 상실 여부는 정당해산결정의 부수적 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며, 바람직한 기각 이유 설시례, 인용 이유 설시례, 일부 인용 이유 설시례를 제시 하고, 각 주문 및 이유 설시례에 따른 영향 및 과장을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가)-2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200](조사보고서 163쪽)

피고발인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은 피고발인 이규진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2016. 6. 8.경 위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를 피고발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문건의 주된 내용에는,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 판결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임’, ‘헌법재판소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

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과장 분석'[76](조사보고서 162쪽)

피고발인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피고발인 이규진 상임위원이 수정하여 2015. 9. 15. 피고발인 이종현 차장에게 보고하였다는 문건입니다.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전북도의원 이현숙이 제기했던 전주지법 사건의 재판장(방창현)이 '연수원 동기'여서 사건의 심증을 확인하였고, 2015. 9. 14. 오후 늦게 기준에 예정되어 있었던 판결선고기일(2015. 9. 16.)을 2달 열흘 정도 이후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인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유를 구성"하고, 판결 선고 후 "예상되는 각계의 반응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언론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보관을 통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소송기획 관련(조사보고서 158쪽 이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대외비)'[75],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175],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174], [176]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들은 피고발인 김종복 심의관이 피고발인 임종현 기초실장의 지시로 작성하고 이규진 상임위원이 수정하는 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위 문건들에는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시키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으로 설명하면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소를 하게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과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소제기 후보지역 검토’라는 제목의 단락에는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 우선 검토 => 울산과 경남 지역(경기, 충북, 광주전남 배제) - 울산광역시 9명, - 경남 6명, - 부산 1명, 다만, 울산의 경우 의원수가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의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부적절할 수 있음,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가장 적절해 보임’이라는 기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소 필요성’이라는 제목 단락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상실겨령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의 당연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제소 방법’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피고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청구취지 000는 경상남도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등 상세한 필요사항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5. 2. 12. 부임한 피고발인 이규진 상임위원이 피고발인 임종현 기조실장으로부터 문건 수정 요청을 받고 2015. 6. 12.경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176] 문건에는 ‘...통합진보당과 같이 강제해산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역시 강제해산으로 당연 퇴직’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전제한 이후 ‘통진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 발족 => 통진당 재창당 여부에 관심 쏠림(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이라면서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창당 움직임 사전 억제 필요’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범죄성립의 검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결정을 한 이후 법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분석, 대응, 계획 등을 담은 문건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의하여 정부나 국회와 독립되어 운영한다는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에서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였고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상세한 지위 박탈 관련 쟁송방법과 그 내용까지 기재한 문건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평균적 관점에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훨씬 뛰어넘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의관들이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대와 희망, 제도적 가치가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현실에서의 실현이 방기되었고 무시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정치적 소수자, 정권에 반대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악질성과 편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법원 내·외부의 독립을 의미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자체가 애초에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결론과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 관련), 부당하게 박탈당한 지위를 다시 찾아가는 절차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도록 하였으며(비례대표 지방의원 소송 관련),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위를 상실시키는 구체적인 소송방법과 그에 관한 내용까지 마련하였던 것입니다(지역구 지방의원 소송 기획 관련).

헌법이 권력구조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실현절차로서의 ‘재판’을 완전히 형해화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서나 은밀히 작성했을 법한 내용이 피고발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판사’들에 의하여 고안·작성·보고·실행·점검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헌을 비롯하여 이규진 상임위원, 김종복, 문상호 심의관 등의 문건 작성자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무거운 형사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정권의 충신으로서 기능하는 역할 내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앞장서는 조직적인 행태 등을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라는 과제는 계속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기타 인사권 남용 등 직권남용의 범죄

가.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등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발인 이규진은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박병대 등이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을 위해서 2015년 당시에 보고받은 보고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등이었습니다.

위 보고서들에는 1, 2차 예비모임, 1차 정식모임의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

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등은 공모하여 2016년에도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 모임 중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와 그 결과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 4. 8. 제7회 모임(논제 :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이후 그 모임에 참석한 법관을 통해 강경발언을 한 법관의 발언내용 및 특정 법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인사모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음도 확인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박병대 등이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을 위해서 2016년 당시에 보고받은 보고서는,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 등이었습니다.

위 각 보고서들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로서,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 내역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 예비 모임부터 2015. 9.경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피고발인 이규진 등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규진이 위와 같은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한 행위 역시 인사모 모임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헌, 피고발인 박병대, 피고발인 이규진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헌, 피고발인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등은 공모하여 ‘인사모 폐지’를 목표로 핵심 회원에 대해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 불이익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016. 3.경부터 인사모 견제 방안으로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을 통한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는데(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다만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 활동 및 법관 사회 반발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16. 12.경부터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연

제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피고발인 이규진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학술대회가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2017. 1. 23.경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최종 의결하자, 피고발인 박병대, 임종현 등은 1. 24. 박■■■ 심의관으로 하여금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서를 작성토록 하여 보고받고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조치를 강구하여 실장회의 논의를 거쳐 2017. 2. 10. 처장 주례회의에서 당초 논의된 대응방안 중 하나인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3차조사보고서 56쪽) 피고발인 임종현 등이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년 3월경부터 이미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중 우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문건들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조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인사모 관련 고려사항, 2017. 1. 12.자 인사모 대응방안, 2017. 1. 16.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결과, 2017. 1. 23.경 인사모 대응 방안, 2017. 1.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문건들에 의하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 중복가입 연구회에서 탈퇴 처리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전문분야연구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된 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되는 점,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공지하는 방안이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 한 조치라든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행정 처의 의도를 숨길 수 있어 법관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 에 관하여 2016년 3월 경 이미 면밀한 검토를 마쳤으며,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헌, 피고발인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등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서도 인권법연구회에 가장 큰 위축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라는 정무적 판단 하에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임종헌 처장의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속하고 관련 예규(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와해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역시 이러한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행한 것은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3차보고서 58쪽).

그러므로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헌, 피고발인 박병대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 및 추천 개입 등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헌, 피고발인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등은 공모하여 김민수 당시 심의관에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의 성향 등을 분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김민수 당시 심의관은 2016. 2. 24.자로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2016. 3. 28.자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2016. 4. 4.자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에서는 2016.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등의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3차보고서 60~62쪽 참조).

또한, 특별조사단에서는 ‘송OO 판사 건의문 검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 ‘우리법 연구회회원 분석’ 등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3차보고서 64~68쪽 참조), 위 문건들 역시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어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각 문건들은 각 위원들이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특정 연구회 회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일정 집단의 법관 등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①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 문건에서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을 인사 검증의 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발인 임중헌 등 행정처는 위와 같이 작성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정보를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등 문건을 통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이라는 기재에서도 확인되는바 특별조사단 역시 이러한 정보제공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3차보고서 70쪽).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일탈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을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고 각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은 물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중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등을 이유로 사법행정위원회 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미 시행’ 등을 검토하였는데, 행정처의 위와 같은 검토 사항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다수의 안건이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중헌, 피고발인 박병대

등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의 성향을 분석하고 추천에 개입한 각 행위들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서, 위 각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법관에 대한 사찰 등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헌, 피고발인 박■■■ 심의원, 피고발인 김민수 심의원, 피고발인 김■■■ 당시 윤리감사관 등은 공모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의견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상고법원 반대 의견 표명을 차단하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로 하여금 동료 판사에 관한 과도한 사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 임종헌은 피고발인 박■■■ 심의원으로 하여금 2015. 7. 6.경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하게 하여,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입장 등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설득 작업 착수 필요”, “내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 가동”, “사전 분위기 감지 긴급요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툰다운 요청”,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고립화 전략 추진”,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부각”,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등을 전반적인 대응방안으로 삼았습니다(3차보고서 92, 93, 96쪽 참조).

피고발인 임종헌은 상고법원에 관하여 코트넷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시사인에 기고한 차00 판사에 대해서는, ① 피고발인 김민수 당시 심의원으로 하여금 2015. 8. 18.경 차00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조사하게 하였고(3차보고서 90쪽 참조), ② 피고발인 김○○○ 당시 윤리감사관으로 하여금 2015. 9. 21.경 차00 판사의 시사인 기고에 관하여 검직허가의 필요성 여부, 기고 내용의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한번에 모두 검토하도록 하였고(3차보고서 94~97쪽 참조), ③ 피고발인 김민수 심의관으로 하여금 2015. 9. 22.경 차00 판사에 대하여 “고시공부를 하던 중 학내 성폭력 관련 대자보 작성,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동참” 등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을 조사하고, 차00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00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하였으며(3차보고서 90쪽 참조), ④ 피고발인 김■■■ 당시 윤리감사관으로 하여금 2016. 4. 6.경 차00 판사가 2009. 4.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재산변동 내역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3차보고서 95쪽 참조), 대학 시절 작성한 대자보의 내용부터 7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사찰 문건을 각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선배 법관을 통한 기고 자제 설득, 검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차00 판사의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현이 형식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고법원이라는 사법 이슈에 대한 개별 판사의 의견 표명을 억제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하게 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윤리감사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심의관들 역시 이에 따라 법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인바, 공동하여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역시 이에 대하여 “특히 차○○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기고의 겸직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3차보고서 99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과정에서 작성된 각 문건들에는 “상고법원에 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됨”이라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발인 임중현 또한 스스로도 차00 판사 외에는 윤리감사관실에 특정 판사의 재산 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던 점(3차보고서 94~98쪽 참조), 2016. 8. 24.경 작성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에는 “비공식적 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이라는 기재 또한 확인되는 점(3차보고서 88~89쪽 참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발인들에게 직권남용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위 차00 판사 뿐만 아니라,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글 등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한 사찰 또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3차보고서 102~103쪽 참조), 이 부분 또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으로 하여금 동료 법관을 사찰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또한 면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사찰 및 폐쇄 유도 등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시▲▲ 당시 심의관, 피고발인 박■■■ 판사, 피고발인 성명불상인,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 등은 공모하여, 여러 사법 이슈에 대한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해 운영되었던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이하 ‘이사야’라고 합니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발인 시▲▲ 심의관, 피고발인 박■■■ 판사, 피고발인 성명불상인,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 등으로 하여금 ‘이사야’ 게시물 억제 방안을 마련 및 실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 임종현은 ① 피고발인 박■■■ 판사로 하여금 2015. 2. 15.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발인 성명불상인으로 하여금 위 문건에 관하여 2015. 2. 21.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사야’를 위축시키기 위해 고안된 각종 대응 방안을 기초로³¹⁾, ②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로 하여금 (i) 2015. 2. 26.경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취지의 게시물 초안인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고, (ii) 2015. 3. 2.경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위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문건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구체적인 댓글의 내용 등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iii) 2015. 3. 3.경 “이판사판 야단법석카페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고(3차보고서 76~78면 참조),³²⁾ ③ 피고발인 박■■■ 심의관으로 하여금 (i) 2015. 3. 9.경 ‘민감

31) 위 문건에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가 큰 기본권으로서, 익명 게시판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 중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모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도록 함”, “나아가 운영진을 알고 있는 동료 및 선배 법관에게 이 사건 카페의 게시물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시킬 필요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3차보고서 74~75쪽 참조).

글'의 개수와 내용을 주별로 정리하도록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문건인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고, (ii) 2015. 4. 6.경 비슷한 형식의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업데이트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며(3차보고서 78~80쪽 참조), ③ 기 조실로 하여금 2015. 7. 24.경 이사야의 개설자인 홍00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이라면서 설득논리와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인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피고발인 임중현에게 보고하게 하고(3차보고서 80~81쪽 참조), 피고발인 박■■■ 심의관으로 하여금 2015. 8. 12.경 홍00 판사와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홍00 판사에게 전달할 이사야 공지글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선배 법관의 조언대로 관심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논의 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등의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의 공지글 초안을 포함한 문건인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3차보고서 81~83쪽 참조), 실제로 홍00 판사에게 위 게시글 초안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3차보고서 86쪽 참조).

이는 피고발인 양승태, 임중현이 형식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법행정 사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의견 표명을 억제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를 통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글을 회원 내부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이사야’ 운영자 홍00 판사를 통하여 일정 기간 후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고, 인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32) 그 내용 중에는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 “적극적 목표 →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 “소극적 목표 → 게시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3차보고서 78쪽 참조).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양승태, 피고발인 임종현, 피고발인 김★★ 판사, 피고발인 김 모 당시 윤리감사관 등은 공모하여,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로 하여금 출마 예정자의 사찰, 다른 출마 예정자의 지원 방안 검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2016. 3.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 예정이었던 박00 판사를 견제하고자, 대응방안으로 정00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선거공약 아이템 발굴, 지원단의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선거 전략을 검토하였는데(3차보고서 100쪽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발인 임종현은 ① 피고발인 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i) 2015. 3. 12.경 “정00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이라고 기재한 문건인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문건을 보고하도록 하고, (ii) 2015. 3. 17.경 “장00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00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00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00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문건을 보고하도록 하고(3차보고서 101~102쪽 참조), ②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로 하여금 2016. 3.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³³⁾ ③ 피고발인 노◆◆ 심의관으로 하여금 (i) 2016.

33) 위 문건은 박00 판사와 정00판사의 각 ‘우호세력’의 수를 근거로 각 얻은 표의 출처를 분석하고,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 대응방안으로 “박00 판사에게 불필요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중요대응 논리를 오피니언 리더 법관에게 주

3. 26.경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3차보고서 105쪽 참조),³⁴⁾ (ii) 2016. 4. 5. 및 같은 달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 이행시기를 2016. 8.으로 하는 안의 장점이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라고 기재된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 문건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3차보고서 106쪽 참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을 행사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후보를 배척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의 낙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4.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제1기획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죄 및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가.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발인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제1기획심의관은 2017. 2. 20. 06:52부터 08:00 사이에 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24,5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납니다(3차보고서, 16쪽).

나. 김민수 전 심의관이 위와 같이 파일을 삭제한 시기는, 앞서 살펴본 법원

지시하고 충분히 전파하도록 할 것”,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할 것, 보이콧 방식도 취할 것” 등을 기재한 것입니다(3차보고서 104~105쪽 참조).

34) 위 문건에는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견제하려는 시도(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밖에 사법행정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 “수석부장이 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 등을 자주 가지면서 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에 관하여 대응논리를 적절히 설득함으로써 판사회의가 집행부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견제 시도가 법원 내에서 이미 문제된 이후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① 법원행정처는 2017. 2. 13.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등과 관련한 공지를 올렸던 사실, ② 같은 달 15일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던 법관이 위 코트넷에 법원행정처의 위 공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견제가 아니냐는 의심을 표하는 취지의 공개질의문을 작성한 사실, ③ 이에 같은 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제2기획심의관으로 부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2017. 2. 15. 당시 양형위원회 이규진 위원으로부터 위 공개질의문과 관련하여 “그 반대 논리를 위 국제인권법연구회측에 전파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④ 이에 위 제2기획심의관은 같은 달 16일 위 이규진 위원이 행한 지시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 ⑤ 이에 임종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같은 달 20. 위 공지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고 위 제2기획심의관에 대한 견임해제 발령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됩니다.

다. 이와 같이, 김민수 전 심의관이 2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법원행정처 내에서 이규진 등의 직권남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점, 위 삭제 행위를 통해 삭제된 파일 내용 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당해 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와 관련하여 암호화된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김민수 전 심의관은 추가조사위원회의 문서 암호 제공 요구를 거부하였던 점(추가조사위원회 보고서 4쪽)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김민수 전 심의관의 삭제 행위 목적은 향후 이규진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관한 진상조사 등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바, 이는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서류무효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또한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규진 등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구성원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이규진 등의 직권남용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거나 법관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결국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는 형법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5. 결론에 갈음하여 : 이 사건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은 대법원의 정책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행정처 공무원 한 두명 개인의 일탈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관료조직 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차장, 심의관들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조직적 지시와 감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발인 임중헌 역시 “우병우 카운터파트는 처장님이다”, “이 정도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시-보고-실행의 구체적 실상을 밝히는 것이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안의 핵심 정점이라 할 위 양승태에 대하여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핵심적인 주관자인 민일영, 박병대, 고영한 등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쳤습니다.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실행한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문제없었다’는 회신을 그대로 믿고, 인사 관련 자료는 제공받지도 못한 채 인사 불이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단 내에서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조치 등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멈추어버렸습니다. 애초 외부참여자 없는 법원의 셀프조사의 한계로 예정된 일이었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외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행정처는 스스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최대한 협조” 하였음을 자인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안으로 는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과 법관들을 은밀하게 사찰하고 탄압하였음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을 알게 된 고발인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그 존재 의의와 신뢰를 잃고 철저한 불신을 받는 것은 법원은 물론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 6. 5.

각 고발인들의 각 고발대리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7

이슈페이퍼

[사법농단 ISSUE PAPER ①]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2018. 6. 26.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문건

1) 임종현 꼬리자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3. 사법농단의 행태 -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쪽,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린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 파헤치고 싶
은 국민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1. 사안의 개요

2017. 2.부터 시작된 판사 뒷조사 문건과 관련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에 의하여 공개된 문건들을 통해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복판에는 상고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도대체 상고법원이 무엇이길래’ 재판거래까지 시도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원세훈 사건, 전교조 사건, 통진당 사건 3가지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부터 재판 개입이 이루어져 온 흔적을 담은 문건들이 다수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 문건들에도 여지없이 상고법원이 등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2014. 6.경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이하 ‘자문위’라 함)가 대법원장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건의하면서부터이다. 외관상으로는 자문위가 건의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실질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자문위를 통해 상고법원을 공론화한 셈이다. 위 자문위는 2013. 7.경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하여, 이미 상고법원을 염두에 두고서 위촉된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2014. 9.경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4. 10.경 국회 법사위 주최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상고법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상고법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당시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검찰은 상고법원안에 소

극적인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다보니 법원행정처에서는 당초 법안발의 때부터 법무부를 통한 정부입법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 대신 2014. 12.경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을 통해, 여야 의원 168명의 동의를 얻어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상고법원안’이 담긴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대표발의된 것이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고법원안이 발의되자, 이후 법원행정처는 마치 상고법원 제도가 마치 금방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가 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법원 출입문, 지하철 등에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면서까지 상고법원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고위 법관들은, 그 시점에서는 법률심사권,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2년 정도 후에는 언제든지 일선 법원으로 복귀하여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될 재판장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법원장들까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 달라고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법원장은 해당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서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 감독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였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사법부의 대변력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개정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부린 탓에 곧바로 민변 등 시민단체와 법무부, 검찰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상고법원안은 얼핏 보면 상고심 절차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상고법원의 판사들이 사실상 최종심을 담당하게 됨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게다가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대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지, 상고법원 판사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다.

상고법원은 당초 이러한 원초적 결함 때문에 2015년 한 해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대 국회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였던 2015. 12. 정기국회를 마감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한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올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안 통과에 핵심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 시기, 방법 등을 조율해왔다.

그리고 또한 청와대를 설득하고자 청와대의 가장 큰 관심 재판이었던 원세훈 사건과, 그 외에 전교조 사건,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해왔다.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시	법 원	청와대(BH), 정치권
2014. 6.	자문위, 상고법원 건의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작성 시작
2014. 8. ~ 9.	원세훈 1심 재판부가 이메일 첨부 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쪽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59]번 문건 작성 (8. 23.) 서울고등법원 민중기 재판장의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9. 19.) 원세훈 1심 판결 선고(9. 11.) 상고법원 공청회(9. 24.)	김영한 비망록(9. 6.)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열어도록(상고법원)” 김영한 비망록(9. 22.) “대법원X, 고법X 돌연변이, 대법원 재판 받고 싶은 희망 ⇒ 위헌소지, 대법원 궁여지책, 간단한 문제 아님.”
2014.	전교조 사건, 재항고 인용시 상고법원	김영한 비망록(11. 25.)“상고법원 대

11. ~ 12.	입법추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151]번 문건 작성(12. 3.) 홍일표 의원, 상고법원안 발의(12. 19.)	9.7 발족-대통령 임명권 배제 민주적 정당성-의원입법(꼼수)”
2015. 2.	원세훈 2심 판결 선고(2. 9.) 발상을 전환하면 오히려 이니셔티브 쉼 수 있다는 [61]번 문건 작성(2. 10.) 통진당 기획소송 [75]번 문건 작성(2. 12.)	BH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임명됨
2015. 3. ~ 4.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번 문건 작성 (3. 26.) 이완구, 성완중 사건 관련, 원세훈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 쥐고 있는 사건의 처리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204]번 [152]번 문건 작성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 대국민 담화(3. 12.) 성완중 리스트 작성 후 자살 사건(4. 9.)국회 법사위, 상고법원 공청회(4. 20.)
2015. 6. ~ 7.	전교조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6. 3.) 원세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7. 16.) BH 설득방안 [80]번 문건 및 말씀자료 문건 등 작성(7. 28.경)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치현안에서 무게중심이 BH로 쏠려있는 상황
2015. 8.	양승태 대법원장, VIP 독대(8. 6.) 임종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8. 7.) 한명숙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판결 선고(8. 20.)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358]번 문건작성(영장항고제 등 법무부 빅딜방안 등)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게 VIP 지시사항 전달 (8. 10.) 그러나 정작 법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빅딜안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 국회 법사위 1소위, 상고법원 반대 기류 강하여 논의진척 없음.
2015. 11.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번 문건 작성(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안 제시, 11. 19.)	국회 법사위 1소위 위원장 이한성, BH와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상고법원안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안건 상정 거부.

2. 각 조사보고서¹⁾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에서는 상고법원 자체와 관련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하여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이단희 판사의 사표제출 과동으로부터 시작된 판사 사찰 문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주된 이슈였기 때문이다.

물론 2차 보고서 일부에, 상고법원과 관련되어 2015년경에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방안’ 문건 등 4건에 관한 분석은 존재한다(2차 보고서, 27쪽~30쪽).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핵심은 상고법원 자체의 이슈보다는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동향분석 등을 다룬 문건이다.

그런데 2차 보고서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문건이 마지막 항목에 등장하였다. 2015. 2. 10.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 그것이다(2차 보고서, 33쪽). 여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한다는 표현이 있고, 끝부분에 ‘상고법원 관련한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심지어 스스로 역풍을 우려하는 표현까지 있었다. 참고로 이 문건은 원래 ‘김동진’, ‘동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 추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원세훈 사건 재판부의 동향’에 관한 문건까지 함께 추출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추측건대 2차 조사위 내부에서는, 이 문건의 성격이 기존의 판사 사찰 등과 전혀 다른 차원인, ‘재판의 독립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라서

1) 이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1차 조사위’로, 1차 조사위의 조사보고서를 ‘1차 보고서’로, 추가조사위원회를 ‘2차 조사위’로, 2차 조사위의 조사보고서를 ‘2차 보고서’로, 특조단의 조사보고서를 ‘3차 보고서’로 각 약칭한다.

이를 포함시켜서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차 조사위는 결국 이 문건을 포함시켰다. 그 덕분에 이 문건의 내용은, 당시 언론을 통해 다른 판사 사찰 부분보다도 더 크게 이슈화되었다.

나. 3차 보고서

그리하여 특조단은 임의 검색어로 ‘원세훈’ 외에도 ‘상고법원’을 추가하여 상고법원 관련 문건 여러 개를 추출하였다(3차 보고서, 6쪽). 그럼에도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정하여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10번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뚜렷한 문건들’ 항목 편에 다른 문건들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하 기초실이라 함)에서 2015. 3. 26.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3차 보고서 169쪽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위 문건의 5쪽 부분인 아래 내용을 제시하였다.

4.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 ▣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
- ▣ 이병기 비서실장
 - (중략)
 -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
 - (중략)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임원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중략)

- ▶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중략)

- ▣ 원세훈 사건
 - ▶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3차 보고서, 169쪽〉

그러나 위와 같은 특조단의 분석은, 명백히 위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은폐한 것이다. 특조단은 아마도 위 박스 안에 있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보류 요청’이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분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밑에 기재된, 일제강제징용 사건에 대하여는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원세훈 사건에 대하여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박스 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병기 비서실장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이병기 비서실장의 관심사인 재판을 파악, 예상’하여 나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위 박스 안의 문구 자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위쪽 상단의 표현들에 주목하여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4. 구체적 접촉·설득방안’으로서, 이병기 비서실장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인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보듯이 위 문건의 검토배경 부분을 보아도 그러하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상고법원 입법은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3차 보고서 [79]번 문건, 1쪽>

그렇다면 위 문건의 주된 의의는,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2015. 8. VIP 독대 이전인 2015. 3.경 무렵부터 이미, 상고법원 설득을 위하여 특히 정권에 치명적인 원세훈 재판 등에 대한 협조약속을 통한 BH와의 재판거래를 계획하여 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하던 그 시기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혹들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최초의 문건인 셈이다.

그럼에도 특조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덮어버린 채, 마치 이병기 비서실장이 재판에 관한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양 왜곡시켰다. 이러한 특조단의 기본적인 태도는, 아래 설득방안 문건 등에 대한 분석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번 문건

이 문건은 기초실에서 2015. 7. 28. 작성, 보고된 것인데, 이에 관하여 특조단은 보고서 172쪽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BH 설득전략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뚜렷이 있다며 ‘원세훈 재판’ 부분(위 문건의 34~35쪽)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거래, 재판개입으로까지 나아갔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조사는 생략하였고, 문건의 원문도 공개하지 않았다.

IV. 구체적 설득 전략

■ 사전 고려 사항

● ①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3차 보고서 [80]번 문건, 34쪽>

여기에는 비록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이라는 완곡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미 최소한 2015. 2.경부터 아래에서 보듯

이 ‘원세훈 재판’을, 상고법원의 설득 소재로서 재판거래를 계획하였고, 나아가 구체적인 재판개입까지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²⁾

첫째,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자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처음부터 원세훈 재판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에 필요한 핵심적인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① 2015. 3. 26.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에서, 상고법원 설득을 위해 BH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한 재판거래를 계획하면서 그 대상으로 원세훈 재판을 공식적으로 명시하였다.

② 2015. 3. 15. 작성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번 문건과, 2015. 4. 12. 작성된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번 문건에 따르면, ‘원세훈 재판’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건처리 방향과 시기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3차보고서 [152]번 문건의 7~8쪽, 16~17쪽).

● 관심 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3차 보고서 [152]번 문건, 17쪽>

사법행정담당 기구에 불과한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이라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별 재판의 사건처리방향과 판결시기조차 검토하면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2) 참고로 위 문건 중 정권에 협력한 판결 사례에는 원세훈 재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당시 원세훈 사건이 증거능력 부정으로 인한 파기환송이라서 여전히 실체적 판단이 남아있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해당 문건에서는, 위와 같이 ‘IV. 구체적인 설득전략의 사전 고려사항’ 편에서, VIP 독대를 할 때 원세훈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로 계획한 것이다(3차보고서 [80]번 문건, 34쪽).

둘째,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재판 자체에 관하여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 ① 항소심 재판의 선고 전달인 2015. 2. 8.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번 문건에서는, ‘만일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BH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상고법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여 BH의 불만, 오해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 ② 항소심에서의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5. 2. 9. 작성하여 다음날 보고한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보고’ [362]번 문건에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된 주된 원인이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점과,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분석하였고, 이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까지 전달하였다.
- ③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번 문건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끝 부분에는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쫓 수도 있음. 상고심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역풍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 ④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챙기기, 재판개입은 2015. 7. 16.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이후, 환송심에서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2015. 10.경 작성된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방향’ [60]번 문건 마지막 부분에는, ‘재판장, 주심판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란 문구가 있다. 여기서 ‘재판장’은 당시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김시철 고법 부장으로서,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심리를 2017. 2. 자신의 인사이동 때까지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문건 작성자는 서울고등법원 모 판사로 되어 있으나, 법원행

정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이른바 거점법관으로서 김시철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의심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유화적 접근 소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핵심적으로 원세훈 재판 1심부터 꼼꼼한 개입을 통해 최대한 VIP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재판거래를 계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번 문건

이 문건은 위 [80]번 설득방안 문건의 7~12쪽에 기재된 ‘정부 운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사례’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만든 것이다. 또한 다시 3~4일 후에 같은 내용으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번 문건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이때에는 당시 선고되지도 않았던 발레오만도 사건³⁾의 사건번호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법원 도입의 시급성,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 재설계, 입법추진절차 해명, 사법한류 추진 등 아이디어 제공 부분(13~32쪽)은, 별도로 그 무렵 ‘VIP보고서’ [165]번 문건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정작 원래의 모태가 된 위 설득방안 문건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단지 ‘현안관련 말씀자료’ [70]번 문건만을 공개하였다.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VIP 독대 시 활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임종현 차장의 변명을 타당하다고 단정지은 나머지 이에 대한 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것이다(3차 보고서, 175쪽).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의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몸통으로서 주도한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은폐하고, 임종현 차장으로 꼬리를 자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첫째, 원 자료인 설득방안 문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BH 설득방안’으로 제

3) 발레오만도 사건은 상고심에서 2016. 2. 19.에서야 선고되었는바, 협력 사례로 기재한 바와 같이 파기 환송되었다.

시되었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상고법원에 대한 VIP 우려를 합리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국정철학이 VIP와 유사하다는 등을 강조하기로 하는가 하면(3차 보고서 [80]번 문건, 33쪽),

나. 우려의 합리적 불식

- **[능동적 요소] 국정운영 및 사법행정의 지향점 같음**
 - CJ 임기 하반기 사법부 운영 기본방향은 VIP의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지향점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
 - ①**국정 철학 유사함**
 - ∴ 신중한 보수로서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청렴과 헌신을 강조하는 면 등 기본적인 국가관과 국정 철학 유사함
 - ②**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차 대법원의 다수를 점하게 됨**
 - ∴ 현재 3명인 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점 증가하여 2017. 6.에는 7명으로

<3차 보고서 [80]번 문건, 33쪽>

VIP와의 개별면담 자리에서 언급할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기재되어 있을 정도였다(3차 보고서 [80]번 문건, 36쪽)

- **CJ께서 VIP와의 개별 면담 자리에서, 먼저 ①정부와 사법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바람, 국정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 협조 의사 등을 피력하시고, ②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3차 보고서 [80]번 문건, 36쪽>

이처럼 해당 문건 어디에도 여당 국회의원 설득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원래의 문건 전체 취지를 무시하고서, 단지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만든 말씀자료만을 가지고 여당 국회의원 설득의 자료였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당시 여당 국회의원 설득의 필요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왜

나하면 여당 국회의원 중 검찰 출신인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개인적인 소신보다 법무부, 검찰의 조직적인 반대 입장에 따른 것이었기에, 그러한 재판협력 사례를 들어 설득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 외의 나머지 여당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이미 상고법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였기에, 굳이 그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없었다.

둘째, 특조단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병우 민정수석이 배석해서 방해하였기에 재판협력 사례를 설명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VIP 독대 이후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다른 문건인 ‘VIP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358]번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이 문건 1쪽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는 2015. 8. 6. 면담 당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표명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조단 역시 위 문건의 내용을 다른 보고서의 각주에 기재하기까지 했었다(3차 보고서 156쪽). 그런데도 특조단은 의도적으로 이 문건을 상고법원 관련 문건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나아가 특조단은 기자들에게 양 전 원장이 오찬 회동에 가져간 문건은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다른 문건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물론 당시 가져갔다는 ‘VIP보고서’ [165]번 문건에는, 정권협력 재판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 재설계 등 부분만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당초 작성된 BH 설득방안 문건을, VIP보고서 문건과 말씀자료 문건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작성한 상태였으므로, 위 ‘VIP보고서’ 라는 문건 외에 말씀자료 문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셋째, 설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오찬 회동에 해당 문건을 들고 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현안관련 말씀자료’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으

로 하여금 청와대, 국회 법사위 등에서 사법부 현안을 보고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자료라는 것을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서로서 잠깐이라도 읽어보았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BH 설득방안 문건에서 1단계로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면담을 하기로 한 주체는 법원행정처 처장이고, 2단계로 VIP를 독대하기로 한 주체는 대법원장이다(3차보고서 [80]번 문건, 36쪽). 그러하기에 위 말씀자료 문건은 당연히 1단계, 2단계 면담의 추진 주체인 처장,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위 말씀자료 문건이 아예 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보고조차 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결론지은 것이다(3차 보고서, 176쪽).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번 문건

1)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특조단은 내용을 나열한 다음 단순히 상고법원 입법추진의 컨트롤타워인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3차 보고서, 176쪽). 나아가 특조단은 결론 부분에서도, 무리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의 책임을 실무자에 불과한 임종헌 차장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3차 보고서, 182쪽). 그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행정처 처장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법부 최고 책임자 윗선인 몸통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BH 대응전략 문건, BH 설득방안 문건을 보더라도, 상고법원 추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점, ‘입법 실패시

사법부의 위상추락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진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2014. 6.부터 2015. 12.까지, 사법부의 온 역량을 집중해서 상고법원 입법에 매달려 왔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VIP 독대를 하면서 재판협력 사례를 제시하며 재판거래까지 했던 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까지 상고법원 홍보예산을 투입했던 점,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몸통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특조단은 결론 부분에서, 이번 사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상고법원의 무리한 추진을 들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동반자로 보고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점도 인정하고 있다(3차 보고서, 186쪽 중간).

그러나 정작 문건의 분석·조사 과정에서는,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분석을 생략하여 버렸고, 관련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핵심적인 재판거래의 수단이었던 원세훈 재판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하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결국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이후에야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대법원이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의 돌출판결 방지 역할 수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러한 사건의 대표격인 원세훈 사건 등에 재판개입을 해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법부가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표현을 통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재판거래를 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3차 보고서 [82]번 문건, 5쪽>

그럼에도 특조단은, 이러한 표현들에 대하여 단지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라는 식으로, 실제 재판개입, 재판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외관상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3. 사법농단의 행태 -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첫째, 위 문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국정원 등 정보기관처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풍문성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정원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음에

도 항상 경청하여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다'라거나(문건 4쪽), 윤상현 정무특보에 대하여 '의원들 사이에서 사람이 변했다는 평이 돌고 있음'이라는 식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재하고 있다(문건 7쪽). 이러한 정보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접 들어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규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므로 유력인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권한이 없고, 이에 관련되어 배정된 예산도 없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일제강제징용 사건 관련하여, 위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고등법원에서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새로운 쟁점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 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무려 지금까지도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8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법원 캐비닛에서 사건이 한 없이 잠자는 동안, 당초 소송에 참여한 9명 중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병기 실장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항고심 보류 요청과 일제강제징용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재판개입 요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협조 노력, 공감 의사를 피력하였다. 즉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자, 재판의 선고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등으로라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거나, 나아가 실제로 그러한 개입이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서 철저한 수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쪽,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위 기재에 의하면, “현 정부 아래에서 여러 고위 법관이 정부 장관급 인사로

임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정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황찬현 전 감사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법원장)·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예시로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법관의 행정부 관료 진출에 대한 사법권 독립 저해,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유능한 법관들이 VIP(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참여해 역량 발휘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깊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인선에 최대한 협조”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경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여러 차례 현직 고위 법관들이 행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때마다 법원행정처는 마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거나,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피해자 프레임을 취했었다. 그러나 위 문건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런 인사 방식에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협조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이는 BH 설득방안 문건에 담겨진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에 대한 VIP 영향력 확대 방안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것이다.

첫째, 여기에는 사법부가 헌법상 3권 분립되어 있는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즉 문건 2쪽에 의하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意中(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화’하고, ‘추천위원회 추천 의결의 기속력을 인

정' 하겠다는 세부 공약까지 밝혔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대법원과 같은 3심인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법관 아닌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상고법원 판사 인사권의 일부를 대통령에게 넘기는 식의 위헌적인 발상까지 추진한 것이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얼마나 부적절한 수단,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연장선상에서,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효과적인 협상추진전략' [82]번 문건' 4쪽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임명 과정에서 VIP 영향력 발휘 여부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런 한시운영이 상고법원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낸 셈이다. 그리고 같은 4쪽에서,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할 경우, 대법원 내 상고법원 판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삼권분립정신과, 대법원장에 의한 통제 확보를 위해 재판의 독립원칙이 침해되더라도 괜찮다는 식의 의사를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VIP 설득을 넘어서 아예 VIP 비위를 맞추기까지 한 흔적도 있었다. 위 문건 4쪽 이하에 기재된 이른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사업 추진 계획이 그것이다. 개도국에 한국의 사법제도와 시스템을 이식하자는 내용으로,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전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창조경제의 개념을 끌어다 쓴 것이다. BH 설득방안 문건 22쪽에는,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마련했던 것임에도 마치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 업적으로 포장하게 하자는 식의 발상까지 하고 있었다.

둘째,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서,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BH와 VIP를 설득한다면서 민변 등 진보 인사의 대법원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이는 기조실에서 2015. 8. 6.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회동 내용을 바탕으로 8. 20.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상고심 기능 개편이 필요하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 시비, 4심제 논란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창조적 대안을 창출해주기 바란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VIP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반겼다. 이어 “(대통령이) 협상 파트너로 법무부를 지목했기 때문에, (상고법원) 반대세력의 구심인 법무부도 VIP의 구체적 지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무부와의 빅딜”을 검토한 배경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법무부와 빅딜하려고 인권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갖고 있는 검찰 통제 수단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른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영장 항고제 도입”,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반테러법 등 공안사건에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특례 인정” 등이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를 보임해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는” ‘당근책’도 제시됐다.

그런데 첫째,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의 핵심으로서 인권 침해의 대표 사례였다. 결국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까지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고, '인권 시계'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법원은 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에 해당하고 이미 영장 재청구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며 일관되게 영장 항고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상고법원을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무너뜨리는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 한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회유책'으로 상고법원 신설에 대응해 검찰 고위직을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했다.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해 법무부 조직과 기능을 확대”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법무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법무부와의 협상 중재자로는 “VIP 신임이 두터우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대선배이자 동향 선배”인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를 지목하기도 했다.

셋째, 법무부 압박 방안으로 <조선일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2쪽). 문건에는 “주요 언론을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 미치고, BH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고 나온다. 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제목 중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은 이 보고서 이후인 2015. 9. 20.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미공개된 410개 중에는 조선일보 활용 언론전략 문건이 여러 개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론 조작의 의혹이 드러난 것이며, 또한 특정 언론을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015. 1.까지만 해도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다. 당시 정권현 조선일

보 특별취재부장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주권을 재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5. 5. 28.자 3면에서 “대법원에 年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라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법원은 언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데, 특정 언론을 지목하여 상고법원 입법로비에 활용키로 한 것은 명백히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판거래 의혹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제목에 등장하는 10개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은, 2016. 4.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의원이 되었다.

또한 일제시기 조선일보의 전 사장이었던 방응모에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이 2011. 12. 선고되었음에도 2015년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2016. 11. 9. 에서야 선고되었는데 그나마도 3가지 행위 중 1가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지은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현직 대법관 13명은 2018.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2시간 30분 만에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여 판사 사찰은 있을 수 있어도,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는 각급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체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이러한 대법관과 고위법관들 중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출신

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판사 사찰에 적극 가담했던 법관들로서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향후 수사 대상인 경우 마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지 않은 나머지 고위법관들 역시 대체로 당시 상고법원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그 주축인, 지방법원 소속 일선 판사들이 대체로 2015년 당시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마디로 재판거래 의혹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은, 상고법원 관련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상고법원 관련 문건들도,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싶은 것이다.

특조단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고법원 관련 문건들을 적당히 덮어두려 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이들에게 상고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고법원이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길래. 사상 유례없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상고법원에 올인하고, 나아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역시 한목소리로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상고법원은 고법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원원하는 방안이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들로서는 관문이 매우 좁은 대법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상고법원 판사로라도 임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상고법원은, 당시 고위법관들 대부분이 상고법원 찬성의견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고위법관들이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근거가 없으면서 이를 부정하고 수사도 덮어 두자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위법관들에 대한 더 높은 승진, 지위에 대한 열망을 활용하여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까지 가지게 되어 더더욱 고위 법관들에 대한 통제권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관통제 수단으로 가장 강력하게 활용했던 것이 고법부장 승진제도였다. 그래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태 이후 소장판사들이, 근본 원인인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 12.경 법관 이원화 제도(경력 10년차 정도 때 미리 고등법원 판사를 선발하여, 고등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함)를 도입하여 7년여 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2011. 9. 취임한 이후 ‘법관 통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위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제27조(고등법원 부장판사 규정)의 개정을 계속해서 미루었다. 나아가 2015. 9.경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법원 내부 통신망에 ‘당초 25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고법부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고법원 도입을 필수적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법원 판사를 발탁인사할 수 있게 되면,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유지할 명분 역시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법부장들의 대법관에 대한 열망을 활용해서,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고법부장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늘면서 고법부장 자리는 조금씩 늘었지만, 대법관 숫자는 13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대법관 제청되는 비율이 종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평생 법관 제도의 도입과 변호사 시장 위축으로 고위법관들이 사직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해지기도 했었다. 그러다보니 고법부장 중에는 예전과 달리, 대법관이 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서 이른바 소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불만스러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고법원 제도 도입이었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통해, 고법부장들에게 ‘이게 출세의 끝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고법부장들까지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법부장들의 더 높은 승진과 자리에 대한 욕망을, 상고법원 제도 도입에 활용한 셈이다.

셋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고법원안을 자신의 임기와 겹치는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국정철학이 유사하기 때문에 VIP의 협조를 받기 쉬울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마침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2017. 9. 후임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기 대법원장 역시 그 후로도 6년 동안이나 자신의 일관된 법관 통제권 강화정책을 계승할 것이 분명했던 상황이었다. 그러하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설령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무리수가 생기더라도 후임 대법원장에 의하여 문힐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 파헤치고 싶은 국민

이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위법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서 상고법원에 올인하게 된 동기가 분명한 이상,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느라 BH에 대한 재판거래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적어도 원세훈, 전교조, 통진당 3가지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밝혀진 문건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재판개입으로까지 나아간 정황이 드러났고, 향후 강제수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더 많은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상고법원은 재판개입 직권남용죄(판사사찰 직권남용죄 포함)의 범행동기에 해당한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고 확고할수록, 범행의 실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과거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태에서도,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재판개입의 동기였다. 실제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촛불집회 재판개입 직후인 2009. 1.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문서로 객관적으로 표출된 바가 없었다. 이에 비하여 상고법원은, 재판거래, 재판개입의 강력한 범행 동기였음이 여러 문건에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향후 수사에 있어서도, 재판개입 여부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상고법원 문제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②]

사법행정권 남용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2018. 6. 27. (수)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1. 들어가며

2017. 2.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 받은 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1차 진상조사위원회, 2차 추가조사위원회, 3차 특별조사단의 조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 결과 1, 2차 조사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과 특정 연구회, 법관들의 익명게시판 등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해왔음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재판을 정치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특정 판사와 연구회, 법관들의 자유로운 익명 게시판을 사찰하고 사법행정위원회와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 2014년

- 8. 8. 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 [49]
- 9. 22. 단독판사회의 결과 보고 [54]

◆ 2015년

- 2. 1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344]

- 2. 15.(추정) 인터넷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검토 [355, 356]
- 2. 21. 인터넷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검토 [186]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87]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88]
- 2. 27.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이판사판게시글 초안) [26]
- 3. 2.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 3. 3.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8]
- 3. 9.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29]
- 3. 12.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50]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189]
- 3. 17.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51]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190]
- 4. 6.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30]
- 7. 24. 익명카페 설득 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33]
 카페 설득 논리 및 대응책 [34]
- 8. 11.(추정)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8]
- 8. 11.이후(추정)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11]
- 8. 13.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7]
- 8. 14.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 조치 [31]
- 8. 15. 차장 지시사항(이판사판 야단법석) [32]
- 8. 18.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18]
- 8. 19.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방향(대외비) [1]
- 8. 23. 인사모 대응방안 종합[박○○] [180]
- 8. 24.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대외비) [2]
- 9. 15.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 [4]
- 9. 17. 민판연 대응방안 검토 [17]
- 9. 21. 차성안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 허가 [45]
 차성안 [319]
- 9. 22. 차성안 판사 시사인 투고 관련 대응방안(김○○)(대외비) [38]

차성안 판사 시사인 칼럼 두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20]
차성안 판사 [321]

9. 30.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167]
*별지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등 인사조치가
헌법 제 106조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

◆ 2016년

2. 2. 송오섭 판사 건의문 검토 [19]
2. 5. 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평택지원 이○○판사) [9]
[인사모] 판사의 사법행정참여방안 1월 모임 후기 (평택지원 이○○판사) [10]
2. 24.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229]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325]
3. 7.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대외비)[김○○] [46]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322]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대외비)[김○○] [191]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307]
3. 8.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16]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대외비)+1 [334]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차장님 수정) [335]
3. 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281, 282]
3. 14.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323]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 [350]
3. 15.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28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임종현 수정) [283]
3. 2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 [326]
3. 2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192]
서울중앙지법 현안 관련 검토 [279]
3. 25.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181]
3. 26.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193]

- 3. 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327]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최종)[김○○] [18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3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최종) [402]
- 4. 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329, 332, 40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1(박○○ 부장님) [333]
- 4. 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33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 [35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1 [401]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송부용)(인사실) [299]
- 4. 5. 사법행정위원회 안건 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 [20]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판 실행방안 [194]
- 4. 6.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39]
- 4.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대외비) [6]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5]
 전문분야연구회 개선 방안(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검토) [12]
 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인사모 관련 추가)[박○○] [182]
 전문분야 연구회 일반 개편방안 [277]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84]
 전문분야연구회 일반 개편방안 [285]
-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21]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차장의견반영)[심⊗⊗] [22]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보고(대전지방법원)[차○○] [55]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82]
- 4. 11.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계획 [353]
- 4. 12.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판 실행방안(수정)[노○○] [195]
- 4. 15.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추가 정책 결정 필요사항 검토[심⊗⊗] [23]
- 4. 18.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현황 및 전망[김○○] [47, 196]
- 5. 13. 서울중앙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가칭 충실한 재판연구반 [199]

- 5. 26.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향후 계획 추가)[김○○] [170]
- 5. 31. 미디어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 [309]
- 7.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324]
순회 간담회 정례화 방안 [399]
- 7. 25. 순회 간담회 정례화 방안[박○○] [161]
- 8. 24.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354]
- 9. 22.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과 보고[김○○] [48]
- 11. 10. 사법행정위원회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기초검토)[김○○] [25]

◆ 2017년

- 1. 12. 인사모 대응방안(4) [7]
- 1. 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14]
- 1. 24.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312]
- 2. 6. 중복가입 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13]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양형실장님 수정) [316]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초안) [337]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1
- 2. 7. (전정국 의견 반영) [338]
- 2. 10.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 안내말씀[이규진] [14]
- 2. 13.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2
[전문재판부 추가] [15]
- 2. 15.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대응 논리 [340]
- 2. 16.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대응 논리 [315]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추가 안내 말씀(박○○) [317]
- 2. 20. 전문분야연구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계획 등에
대한 안내 말씀 [18]
- 3. 8. 이탄회 판사 관련 정리
- 3. 26.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보고 [398]

◆ 작성일 미상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인사실 송부용) [297]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43]

1633_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 내용(1) [270]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송부용) [298]

57452_송순순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42]

우리법연구회 회원 분석 [394]

박○○판사의 향후 동향 [393]

박○○판사의 향후 동향(1) [394]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일종의 사상 검증)는 언론 보도에도 침묵하는 법원 분위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판사들이 모인 것을 계기로 2015. 7. 만들어졌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사모는 처음부터 현안인 상고법원이나 사법 관료화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었다.

인사모가 결성되자 박병대 처장은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진은 2015. 8. 19. 이들이 “법관의 업무 부담 개선,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인사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방향’ 문건을 작성해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했고, 주례회의에서 논의했다.

인사모는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법부장 제도 방향 등 다양한 사법행정의 이슈들을 논의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계속 행정처의 주시 대상이 되었다. 임종헌 차장은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은 2016. 3. 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보름 뒤인 2016. 3. 15.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은 인권법연구회를 자연적으로 와해시키는 방안으로 다른 판사 모임과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내용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초실장에게 보고했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보고

인사모 1, 2차 예비모임, 1차 정식모임의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1(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대외비) [1]

2015. 7. 초순경 박병대 처장이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데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했다. 인권법연구회 성격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인사모 활동이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문제점으로 지적, 대책 마련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연구회 자체 대책’을 제시하였다.

◆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대외비) [2]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결과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된 이후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사모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면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방식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16, 334, 335]

임종헌 차장이 김☆☆ 심의관에게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세부목차까지 알려주면서 기조실에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및 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기재하였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281, 282, 287, 291]

2016. 3. 초순경 임종헌 차장이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데 따라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 보고한 것으로, 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을 추정하면서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이라고 기재하였다. 문건 말미 핵심 회원 명단을 첨부.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인사모 핵심그룹이 김명수 당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며 이를 전문분야를 이탈하여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문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는 핵심 회원이 연구회를 주도하는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인사모 폐지 및 관리를 통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시작 전 인사모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인사모 폐지 방안은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다. 폐지 방안으로 자발적 해산부터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의 안의 네 가지를 상정하면서 단계별 시도를 검토하고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 기재 중에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핵심 회원에 대한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280, 283, 286, 288, 289, 292]

281번 문건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인사모 폐지 방안’ 및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내지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자진해산 권유와 자체적 해결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검토했다.

◆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181]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335번 문건의 완성본에 해당하며, 박■■■ 심의관이 기초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차장에게 보고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동하는 정황이 감지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하여 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으로 ① 다수 법관들의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전문분야연구회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연구회를 신설하는 방안, ② 실질적으로 인권법연구회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 시행,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장점과 시행에 따른 인권법연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분석 등을 상술하며 인사모의 자연소멸을 목표로 하는 대응방안의 로드맵까지 제시하였다.

◆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보고(대외비) [6]

인사모 7차 정식모임을 앞두고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고영한 처장, 임종현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사모 설립 경과 및 그간 모임 활동 내역을 기재했다.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6. 4. 3. 인사모 신입 회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부장판사와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인사모가 연구회 내 존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미디어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전략 [309]

181, 12번 문건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방안에 대한 후속 문건으로 임종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행 연구회 관도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전에 ‘미디어 분야 연구회’가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문건 말미 시기별 시행방안을 기재한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인사모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처사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 경 예비모임부터 2015. 9. 경 정식 첫 모임까지 집중적으로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5. 8. 경부터는 처장 주례회의, 실장회의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윤리감사관실에 인사모 개설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또한 인사모가 상고법원 등 대법원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외부에 표명할 것을 우려하여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인사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사모 커뮤니티 외 활동을 권유한다는 취지로 행정처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2016. 3. 초순경에는 임종헌 차장이 김●● 인사총괄심의관에게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조실에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각 보고문서가 작성되었다. 인사모의 자연소멸을 목표로,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검토되었다. 2016. 3. 24. 경에는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 최우선 방안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고려,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쳤으나,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 활동 및 법관 사회 반발 등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더 이상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2차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는 2017. 4. 7. 법원행정처장에게 의혹과 관련된 문서·이메일의 확보를 위하여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6년도 기획 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① 확인하고자 하는 의혹의 문서나 이메일을 생성하고 관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작성자의 동의를 없는 한 처장이 위 요청을 수락할 권한이 없고, ③ 법원행정처 문서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들이 다수 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된 자료만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자료만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1,2차 조사위원회는 부당한 견제나 압박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렸으나, 3차 조사에 이르러 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에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 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바, 문건 작성의 초기 단계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들이 공정성에 현저한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아울러 임종현 차장이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방안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라. 평가

특별조사단은 이전 조사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특히 물적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감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의 의견 청취도 고려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에 있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검토 요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자체 조사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조단은 인사총괄심의관실로부터 회신자료 외 추가 요청사항에 대하여 인사상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받은 후, 회신과 대면조사 등의 소극적인 검토만을 진행했다. 이후 공개된 문건 외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부과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특조단의 태도는 보고서 서언에서 언급한 이 시대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물적 자료 조사에 있어서 검색 키워드를 한정하고, 법원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파일 및 강제수단이 없어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파일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특조단의 결론은 인사상 불이익 존재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철저한 사실 확인과 수사 및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2016. 12. 경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이 주축이 되어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논의하자 12. 24. 경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 1. 3. 실장회의에서 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메모를 중심으로 간략히 1차 보고하였다. 이후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2)’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대책으로 보고하였다.

2017. 1. 23.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2017. 3. 25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 게,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는 기조실에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기 방안’으로 나뉘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¹⁾, 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인사모 고립 내지 견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중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2016. 3. 경 인사모를 견제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행정처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방안이었으나 법관 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보류되고 있던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확정하자 2017. 2. 10. 처장 주례회의에서 그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7. 2. 13.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공지, 실행하

1)

였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번

인사모와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하 이사야)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일종의 어용 연구회(사법국제화연구회,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를 신설하여 법관 사회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였다.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다며,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①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 無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사모의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 간의 분리 방안을 도모하며, 내부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의 집단 탈퇴 명분과 시기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 등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상당수 법관이 모임을 외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사모 대응방안[4]-7번

국제인권법 소모임 “인사모”가 연세대와 공동학술행사(‘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폐지’, ‘고등부장 제도의 문제점’,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집중’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분석)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

인사문제'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밝히며, 회장은 “판사들이 법관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핵심 세력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문건은 소모임 운영자들이 행사 목적·발표자·주제·일시·장소까지 다 정한 후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승인’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학생/사회운동 및 진보정당에서 NL 계열이 보여주었던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예: 한총련, 통진당 등)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시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되며, 취소권자인 행정처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312번

당해 문건은 공동학술대회가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정치 세력을 활용한 공론화 시도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모 주도세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 간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하며, 일반 법관을 설득할 논리 개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정치적 목적 하에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일반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둘러싸인 연구회 주류 성향 선배 법관들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분산 탈퇴하되, 다수가 탈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다수의 법관들이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사모 활동 제재를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사모 활동을 지속할 경우 전문분야 국제화연수 혜택도 박탈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인사모로

인해 국제인권법 일반 회원 법관들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인사 모측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복가입자 해소 조치를 이행할 경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가 시작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인사모 대표, 이 모 부장판사 등에게 외부기관과의 법관인사제도 논의는 부적절하고 연구회 내 소모임이 연구회 명의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1차 경고를 한 후 실장회의에 보고하였다. 이후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2) 문건을 작성하여 처장 주례회의에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안(인사모 운영위원회 등을 회장이 일대일로 만나 학술대회를 부결시키도록 함), 2안(국제인권법연구회 대신 인사모의 명의로 공동주최 함), 연기 안(시기를 7~8월로 연기), 자체 행사 안 등으로 다소 유화적인 수준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연구회가 긴급 운영위원회,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연속으로 열며 학술대회 시기를 3월로 확정하자 행정처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아예 연구회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였다. 인사모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논의하기 약 9개월 전인 2016. 3.경부터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인사모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명분, 실리 모두를 충족하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마련하였으나 그 시행은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연구회를 와해하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시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커뮤니티 관리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하는 것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 수단

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사전 검토에 따라 전산정보국장이 코트넷에 공지를 함으로써 시행이 되었다.

2016. 3. 25. 박■■■ 심의관이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에 의하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 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보아 탈퇴 처리를 하면 가장 늦게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가 431명에서 204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는 2012. 1.경 행정처 기조실에서 전문분야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이규진은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법원행정처의 업무와 무관한 직위에 있으면서 연구회 사안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여러 사건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식 보직 명칭도 아닌 양형실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행정처 회의에 참여하였다.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모 대표, 이 모 부장판사 등에게 공동학술대회의 부적절성을 전달하고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이규진의 행위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인 바, 이규진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시 내지는 묵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위선을 밝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3번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즉,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인사모라는 연구회 내 소모임을 행정처가 와해시키려는 단일 목적으로 방안을 검토,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장의 명의로 공지하는 것이 행정처의 개입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였다.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1~16번, 18번, 180~182번, 277~278번, 280~285번, 312번, 314~317번, 334~340번, 398번 파일이 모두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문건으로 약 1년에 걸쳐 42개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었는바, 이 문건들을 작성한 이규진, 박■■■ 심의관 외 성명불상자와 이를 보고받은 임종현 당시 차장, 박병대 처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모 구성원들의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므로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 보고를 어느 단계부터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개입의 정도를 밝혀야 한다. 이 사안은 누가 보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 내지는 직권남용 사안임이 명백하여 하급자 선에서 책임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고를 하는 모양새만 취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고를 하게 된 배경,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인지 경고로 인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또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라. 평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1, 2, 3차 보고서 모두 이 사안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다.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분야 연구회에서 법관의 인사제도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했다는 이유로 대회를 축소, 무산시키려 하고 여의치 않자 아예 소모임 자체를 와해하려고 했던 이번 사안은 법원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는 사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시도했던 방법 또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 자부하는 판사들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것이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핵심세력이라 칭한 후 다수의 판사들과 분리, 고립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조직 내 왕따 전략을 세우거나, 소모임 운영자들이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승인’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사모 내부 갈등을 야기하려 하고,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시켜 다수의 법관들로 하여금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며 버젓이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누군가가 오늘도 법대에 앉아 심판을 하고 있는 게 법원의 현실이다. 이런 법원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연구활동의 일환인 학술대회를 무산시키고 조직을 와해하려 한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조속히 징계하고 관련자들은 응당의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③]

사법행정권 남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2018. 7. 3.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라. 사법농단의 실체

마. 평가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2015. 12. 경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¹⁾, 2016. 2. 19.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활성화”를 명목으로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를 위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6.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는 등 사법행정참여에 대한 관심 및 논의가 심화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여론 및 위원회 자체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모니터링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을 핵심 그룹 등으로 나누어 고립화시키는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여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고 각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하여 추천 과정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1) 법률신문(2015. 12. 9.), 홍세미 기자, “상고심제도 개선·사실심 충실화 논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165>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 2016년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에서 송오섭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발표
2. 1.	송오섭 판사가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헬에 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이 필요하며 ②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하며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급 법원 판사회에서 논의하도록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
2. 2.	‘송오섭 판사 건의문 검토’ [19] (김모 심의관 작성, 임종현 차장 지시)
2. 15.	김기영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송오섭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 기고
2. 23.	경향신문이 송오섭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 게재
2. 24.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229, 325] (김모 심의관 작성, 임종현 차장 지시)
2. 26.	인사모가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헬 개최
3. 14.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기획제2심의관실 명의)
3. 28. 경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402, 328, 326] (김모 심의관 작성, 임종현 차장 지시)
4. 2. 경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330, 332, 403, 333]

	(기조실 심의관들이 나누어 작성한 것을 김모 심의관이 취합하여 작성)
4. 4. 경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298, 299, 301, 302, 303]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기조실의 요청으로 작성)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401, 352] (김모 심의관 작성)
4. 5. 경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 간사인 임모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 보고)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장이던 심모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작성)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추가조사위원회는 문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특정 연구회 회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으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은 일정 집단의 법관 등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①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각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아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보고서 중 공개된 보고서에 한하여 보고서 목차와 별개로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사보고서에서 각 문서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 송○○ 판사 건의문 검토 / 기획조정실 [19]²⁾

[주요 내용]

- 송 판사의 특징(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1/29 ‘인사모’ 토론회 발표 및 참석자 기재
- 송 판사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수시로 파악하여 판사들의 호응도 살핌
- 법원행정처 확정안인 ‘권역별 고등법원장 추천방식’과 건의사항인 ‘과반수 이상 판사회의의 선출방식’을 검토
- 송 판사의 주장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다만 그의 주된 관심이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봄
- 송 판사가 인사모에서 발제한 발표문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맞지 않으므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개정 전까지는 판사회의를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하여 수평적·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재

2)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인용례에 따름. 이하 같음.

김☆☆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송○○ 판사를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리더’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인사모’의 2016. 1. 29. 토론회 참석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고, 송○○ 판사가 2016. 2. 1. 코트넷에 게시한 게시물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위 문건은 송○○ 판사의 토론회 발표문이 ‘논란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심☆☆ 심의관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송○○ 판사의 특징 등은 평소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재하였고, 임종헌 차장은 위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조정실 [229]

[주요 내용]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재
- 핵심 그룹은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라고 하면서 명단 작성

김☆☆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은 송○○ 판사가 2016.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것을 기화로 송○○ 판사의 ‘특징’, ‘주된 관심사’를 정리하면서 송○○ 판사의 주된 관심이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의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하며 ‘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송○○ 판사가 2016. 2. 1.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헬’게시판에 위 발표

문을 게재하자 위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 댓글 등을 분석하면서 댓글을 단 판사들이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거나 ‘송 판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일부판사’로 정리하는 등 댓글을 단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전○○ 부장판사에게 확인하여 송 판사와 친분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모 판사가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 작성을 부탁한 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위 게시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6. 2. 15. 법률신문에 동일한 논지의 칼럼을 기고한 김○○ 판사가 위 칼럼을 기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분석하며 송○○ 판사와의 인연을 추적하고 송○○ 판사의 부탁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6. 2. 23.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된 것을 두고 송○○ 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리하고, 이후 ‘인사모’의 토론회에 대해서 정리, 참석예정 인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해당 문건은 ‘우리법연구회의 전, 현 회원들’을 ‘핵심그룹’으로 칭하며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평가하고, 송○○ 판사가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송○○ 판사가 행정처 내부 인맥을 활용하여 행정처 보고서를 입수하였으리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소위 ‘핵심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핵심그룹이 다수 일반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 판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대응안으로 2016. 2. 25.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을 ‘인사모’의 토론회 전에 선제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종현 차장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핵심그룹’, ‘주변그룹’에 대해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명단을 관리한 사실은 없고 이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김☆☆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송○○ 판사의 위 건의문 등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혁적인 성향의 위원들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작성하였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어느 위원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었다고 진술하였다.

◆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기획제2심의관실 (16. 3. 14.)

[주요 내용]

- 사법행정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2016. 2. 인사모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토론회, 2015. 12. 21. 인천지법 판사회의 내규 개정(내부 판사회의 의장 선출직으로 변경 / 내부 판사회의 3회 소집 명시), 2016. 2. 1.자 송 판사 게시글(‘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과 2016. 3. 14.자 김 부장판사의 게시글(‘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2차 건의문’) 거론
- 내부판사회의 폐지 등을 통한 판사회의 억제 시도 시 핵심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일반 법관들까지 집단적 반발 가능성 있다고 봄
- 법원장 주도의 의견 수렴 및 안건 선정(해외연수 선발을 희망하는 판사들은 법원장의 부탁에 적극 동조하는 경향이므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소통 이미지 선점하면서 법원장이 해계모니 장악
- 일반직 직원으로 하여금 판사회의에서 현안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장의 중립적 이미지 취득, 부정적 답변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해당 실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기재
- 판사회의에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초과하는 내용의 발언 등 부적절한 안건 또는 의사진행발언이 제기되는 경우 사법행정의 ‘민주화’는 ‘판사의

뜻'에 따른 행정이라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행정이라는 논리로 핵심 세력의 '민주/비민주' 프레임을 역이용하고, 판사회의의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판사들의 '합법성에 관한 민감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기획조정실 [327]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송○○판사를 비롯,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등 추적하고, 위 판사모임을 '핵심그룹'이라고 칭하며 이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위원후보자 조건을 제시, 검토함
- 각 고등법원장이 '왕당파'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이라면서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법관 등을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할 필요 있다고 함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1(적색), 2(청색), 3(흑색) 순위로 분류하고,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어떻게 나누어 배치할지 검토
- 검토 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다른 심의관들에게 전달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와 추천사유를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진술

김☆☆ 심의관이 2016. 2. 2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다른 심의관들 도움 받아 작성, 보고한 문건이다. 소위 '핵심그룹'을 칭해지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한 뒤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할 것에 대응하여 각 고등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법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329]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로 분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2016. 4. 2. 나누어 작성하고, 김☆☆ 심의관이 취합하였다. 추천된 위원들의 성향 및 특이할만한 경력 등을 정리하고, 송○ ○ 판사와의 인연까지 확인하고 있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기획조정실 [331]

[주요 내용]

- 사실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위원이 추천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작업. ‘부작용은 안건 선정으로 통제’와 같은 시각을 드러냄
- ‘주류 법관’과 ‘핵심그룹’으로 나누어 ‘핵심그룹’을 소수입장으로, 행정처의 입맛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주류법관’으로 칭하고,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이를 반영할 세력이 적게 추천된 점을 우려함
-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을 발휘할 방안을 주로 검토

김☆☆ 심의관이 2016. 4. 4.경 작성하였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는데, 단수추천을 통하여 소위 ‘핵심그룹’이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할 여지를 줄이는 대신 법원행정처가 각 위원회의 안건을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의지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작용’이라고 언급하고 ‘통제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는 단수추천의 부정적 요소로서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 부존재’라고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류 다수 법관’의 입장을 대변할 법관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관을 ‘주류 다수 법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이 보고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329]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붉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로 분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2016. 4. 2. 나누어 작성하고, 김☆☆ 심의관이 취합하였다. 추천된 위원들의 성향 및 특이할만한 경력 등을 정리하고, 송○○ 판사와의 인연까지 확인하고 있다.

◆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 (인사실 송부용)/기획조정실 [297]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특기사항으로 기초실 추천군 포함 여부, 성향 등을 좀 더 상세히 기재
- 특별조사단 조사에 의하면, 인사총괄심의관실은 기초실로부터 송부받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하여 개별 위원들에 대한 평정 자료 등을 확인하고 특기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기초실에 송부했다고 함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2016. 4. 4.경 기획조정실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에 전달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2016. 4. 2.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329]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양식을 바꾸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각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위 [329] 문건에 비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으며, 각 위원의 성품에 대한 평가, 사법행정에 협조적인지 여부, 출산 등의 개인사, 코트넷에 게재했던 글의 성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성향에 관한 기

재 중에는 ‘해외시찰 5회 à 사법부로부터 많은 혜택받음’, “사법행정에 협조적”, “당돌하고 예절감각이 부족하다는 평”, “배석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업무지장 호소”, “술을 하지 않음(회식자리에서 잘 어울림)”,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 “지역거점법관”, “다소 까다로운 성격이나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 여성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 “인사에 대한 요구 내지 불만이 많음”, “진보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상당기간 병가 사용”, “조직적합성이 뛰어나”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관련 보고(임○○ 수정)/통합실무지원단 [20]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하여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
-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프레임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 다양한 경로로 일선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성, 중요성,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안건이라고 대외적으로 소개하면서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준비한 안건 중 위원회에서 첨예한 논쟁과 충돌 가능성이 낮은 안건을 논의 안건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
-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안건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법원문화개선 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모두에 20건 이상의 안건이 제출됨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 간사인 임○○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다. 2016. 4. 1. 각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이후 해당 위원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위 ‘특정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위원은 소수’라고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법원행정처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해줄 위원의 수가 적다는 평가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서 위원회 논의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건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고,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준비한 안건 중 위원회에서 논쟁 등 충돌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 안건을 논의안건으로 설정하고, 회의 전까지 별도로 안건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통합실무지원단이 안건을 제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프레임 설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통합실무지원단 [21]

[주요 내용]

- ‘특정성향’의 법관과 ‘다수 법관’의 성향이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회의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 등을 통제할 목적 세움
- 사안 및 위원회 별로 보고서의 상세정도 등을 통제하여 일선 법관에게 전달되는 정보 내용 통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처의 입장을 대변할 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로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2016. 4. 8. 현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문화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감하거나 예민한 안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건 당 간략한 쟁점위주보고서 방식을 채택하고, ‘재판제도 개선위원회’는 모든 쟁점을 분석, 정리하는 정도의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검토하는 등 보고서 작성 양식을 달리하여 회의 내용 전달의 정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장이던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2016. 4.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임종헌 차장,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임●● 심의관 모두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 문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는 문건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부분에 관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라. 사법농단의 실체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쌍방향 소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선에서 미국 연방법원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검토가 시작되었다가 양대법원장 지시로 급물살을 타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2016. 4. 4.경 대법원 측에서 설명하였다(뉴시스 2016. 4. 4.자).

2016. 4. 11.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설적 논의를 부탁하였다. 행정처는 법원 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판사를 참여시켜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행정처장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인력을 추천받아 임명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것을 명분으로 만든 ‘사법행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의 수평적 운영을 기대하는 법관들의 움직임을 ‘소수의 핵심세력’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송○○ 판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부터 추천기준을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구성될 위원회의 안건을 통제하여 논의방향

을 법원행정처가 예측가능하도록(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논의결과가 도출되도록)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에 방해가 될 ‘핵심세력’에 대하여 사실상 사찰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노조는 2018. 5. 30. 양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포함시킨바 있다.

마. 평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³⁾가 포함되어 있다.

- 사법행정권자가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한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음
- 실제로 작성된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성향, 다른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 특정 연구회와의 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 [297] 문건에서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을 인사 검증의 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보임
- 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 행정처의 위와 같은 검토 사항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확인되

지 않았고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결국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소위 ‘핵심세력’으로 일컬어지는 판사들의 지적처럼,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목적에 방해가 될 ‘핵심세력’에 대하여 사실상 사찰을 진행하였던 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군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목록화한 점, 사법행정위원회의 논의 안건 및 회의 보고서 등의 상세정도를 조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일선 판사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

특히 위와 관련한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로 작성하였는데, 법원사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더라도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1.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4.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보건대, 비록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기획조정실의 업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원구성, 회의 주제, 보고서 세부정도 규정을 통한 정보통제 등은 그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주도하고 실행한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인사모’ 등의 특정 판사들을 ‘핵심세력’이라 규정짓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를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3) 특별조사위 조사보고서 p. 71~72 참고

기구로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정 기준을 도입하여 후보군 명단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 또한 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시하는 등 고등법원장들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직권을 남용하였고, 심지어 위원으로 추천된 판사들의 성향 및 개인적 성격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역시 남용하였다. 가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될 추천법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행정에 협조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 내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부적절하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중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등을 이유로 사법행정위원회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 ‘안전제출 활성화 방안 미시행’ 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일선 법관에 대한 사찰은, 사찰당한 법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찰행위를 실행하고 법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곧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일선 법관들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헌적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법원행정처가 2015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편 또한 단독판사회의 제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이후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하면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하지 않던 단독판사회의의 관례가 깨지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대해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대 의견을 ‘코트넷’에 올린 박노수 판사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 박노수 판사의 과거 이력, 경선 출마의 경위, 지지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 전략으로 다른 경선 참여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박노수 판사 당선 이후에는, 단독판사회의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그 일환으로 수석부장판사제도를 재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고, ‘법원장’의 권한을 수호하려고 역력히 노력한 흔적들이 선연하다. ‘사법농단’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018. 1. 22.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이라는 문건[322]에 대해 조사하였고(위 보고서 17~18면 참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위 문건의 내용과 관련 있는 7건의 추가 문건을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 단독판사회의 관련보고 [50. 189]

김★★ 당시 서울지방법원 기획법관⁴⁾이 2015. 3. 12.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그 내용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가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의 입후보 방식으로 자원 및 2인 이상의 추천을 제시하고, 최선임자 6인에 대하여 입후보를 독려하였으나 모두 거절한 사실을 정리하면서, 이에 관한 “전망”으로 “입후보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입후보 절차를 공지하였고, 그 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공지된 절차에 따라 입후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김○○ 판사는 제3의 후보(특히, 인권법 학회 회원)를 물색하여 입후보를 독려할 가능성 있음”, “장○ 판사, 또는 실질적인 독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기 최선임자 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3의 후보가 입후보한다면 작년과 같이 경선이 예상됨.”,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법원행정처가 현안보고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으로 인권법학회 회원 등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바람직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4) 2013. 2.부터 2015. 2.까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었고, 2015. 2.부터 2017. 2.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었음(조사보고서 108면 참조).

이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김★★ 기획법관은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부분은 현안 보고를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할 수 없어 기재한 것이다,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단독판사회의 일정 공지를 하면서 판사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출석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단독판사회의 관련보고 [51. 190]

김★★ 당시 서울지방법원 기획법관이 2015. 3. 17.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같은 달 16.경 진행된 단독판사회의의 경과, 결과, 전망을 기재한 것이다. “경과”에 관하여, “전 의장인 김○○ 판사는 경선을 유도”, “입후보자 추천결과 → 장○, 이○○, 정○○ 판사 추천됨”, “장○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김○○ 측은 제3의 후보들에게 입후보 의사를 타진 → 별다른 성과 없자 이○○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 측의 의중과 다른 ‘바람직한’ 후보 선출을 위한 추천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결과”에 관하여, “김○○ 판사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관례대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또한 투표 결과 만장일치 찬성이어서 관례대로 박수에 의해 추대하는 형식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 →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 지지기반 상실.”,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단독판사회의 내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 →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을 통해서 법원행정처가 김○○ 판사가 이끌었던 2014년 단독판사회의

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견제하였고, 2015년에 위와 같은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김★★ 기획법관은 특정 판사를 추천 추진하였다는 점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선임 기수인 29, 30기 단독판사들이 위 추천을 추진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이 추천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특별조사단은 맥락상 김★★ 기획법관이 직접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 점검 [52]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임종현 차장에게 보고한 문서로, “부장판사 업무 관련”, “전담법관의 역할 문제”,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합의·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문제”, “일반직 사무분담 문제 - ○○○ 전담법관 재판부에 배치된 ○○○ 참여관”, “2016년 정기인사 운용방안” 등 인사 관련 여러 문제들을 정리한 6면짜리 문건이다.

위 문건 중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에 관하여는,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30기)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으나 좌절”이라고 평가한 후, “현재 내규 개정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설명으로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에서 김○○ 판사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추진 움직임(장○, 이○○, 정○○ 판사 등에게 후부로 나서줄 것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선임자인 장○ 판사의 단독 후보 출마로 귀결되어 만장일치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 예전과 같은 지지세력 부재”,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에 메일로 공지 절차를 거쳐 단독판사회의 내 ‘사무분담 연

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 →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까지 연구모임 결성 등 메일 공지도 없는 점에 비추어,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문건 [51]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를 통해 일부 판사들이 사무분담을 '희망'을 1순위로 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게 된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위 문건은 “단독판사 동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 단독판사 동향

- 김○○ 판사(30기, 중액단독):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무분담 내규 개정 추진하다가 좌절.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이후, 박○○ 판사(30기, 폐암 투병 중) 모금활동에 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허○(30기), 신○○(32기) 판사: 2014년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김○○ 판사의 지지세력 형성. 김○○ 판사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올해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29기, 신청단독): 서기호 의원 법원 재직 시절 함께 법관인사제도나 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도 추천을 거부하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31기, 중액단독): 박○○ 판사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단 적 있으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별다른 활동 없음
- 박○○ 판사(31기, 파산·회생단독):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 후보자 임명 반대 글을 게시. 현재 별다른 활동 없으나, 돌발 행동 배제 못함

이는 주로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김○○ 판사는 물론 그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했던

판사들, 법관인사제도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 판사들, 2015.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수 판사,⁵⁾ 위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단 다른 판사들의 동향까지 파악하여 상세하게 관리한 것으로,⁶⁾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판사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별조사단 또한 이러한 동향 파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11면).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322]

김☆☆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한 문건으로, 2014년 김○○ 판사⁷⁾가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된 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2015. 4. 16.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박노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인 점을 검토 배경으로 명시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판사회의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도 내려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노수 판사에게 출마 제안을 하였고, 박노수 판사가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상세하게 출마 경위를 기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박노수 판사가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으로 당선되면 건의문과 성명서의 채택,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으로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

5) SBS “현직 판사 “박상옥 후보, 대법관 임명 반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33720&plink=ORI&cooper=NAVER&plink=COPY PASTE&cooper=SBSNEWSEND으로 접근 가능.

6) 당시 법관이었던 윤나리 변호사는 박노수 판사의 지지글을 올린 판사는 바로 법원장 호출을 받고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들이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는 취지로 글 삭제를 설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21, “지금 필요한 건 판사 독립”,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085.html으로 접근 가능).

7) 위 문건상 김○○ 판사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소신이 강하다,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프로파일로 정리되어 있다.

의 지원을 받는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라고 명시하면서, 김★★ 기획법관, 정◆◆ 판사(정○○ 판사와 같은 방 사용)를 지원단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선거 전략

-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언을 할 판사 협의
- 정○○ 판사를 지지할만한 단독판사들(예: 형사단독판사)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정○○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끝>

이는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저지시킬 후보에 관하여 지원단까지 구성하여 구체적인 선거 전략까지 모색하는 등 마치 선거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점을 잘 보여주는 문건이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위 문건에 대하여 “대응방안의 실행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김☆☆ 심의관은 “지원단의 구성”,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부분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종헌 차장은 지원단의 구성은 지시한 적 없고 정○○ 판사의 완주 의사 피력에 대해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하

여 부인하였고, “지원단”으로 지목된 김★★ 기획법관, 정◆◆ 판사는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고, 정○○ 판사의 완주 의사 또한 행정처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조사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지원단의 구성” 등 검토는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지적하였으나, 언급된 법관의 구체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는바, 실제 실행 여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조사보고서 110면).

◆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323]

위 문건은 기획제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문건이다. 위 문건은 ‘인사모’ 활동, 내부판사회의 의장을 선출직으로 변경한 인천지방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대한 판사들의 건의문을 “사법행정에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이라고 정리하고, “내부판사회의 폐지 등을 통한 판사회의 억제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판사회의 활성화 취지의 내규 규정을 주도하여 체계모니를 선점하는 것은 “내규 개정의 비가역성”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판사회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순기능 극대화 필요”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검토한 문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재 법원장이 판사회의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을 전환하여, 판사회의 전에 법원장이 다각도의 의견 수렴 노력을 하자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판사회의 관련 전 과정에서 법원장의 체계모니 장악, “핵심세력”의 방안인 내부판사회의 등을 통한 소통을 무력화하는 것을 기대 효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세력은 여러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등장하는 “우리법연구회 핵심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판사회의를 “사무분담을 둘러싼 법원장들과 판사들의 전쟁터로 인식”한다고 기재하면서, “사무분담 등 인사문제”에서 “근무여건 개선 등 복지문제”로 안건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원행정처가 “사무분담”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제시 행위만으로 법원행정처가 개별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써의 “인사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문건은 “부적절한 안건에 대한 의연한 대응”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전제에 어긋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판사회회의는 자문기구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행정, 판사회회의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판사회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비민주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미지 싸움”에서 “부당한 요구 제기하는 판사에게 선동적, 감정적, 조직적, 독선적, 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를 낙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192, 279, 290]

정◆◆ 판사가 임종헌 차장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으로, 박노수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관하여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전망과 대응방안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한 문건이다. 법원행정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던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던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회의 의장 선거와는 사뭇 다르게, 매우 상세한 결과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분석”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인원 분포(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를 고려하여 박노수 판사와 같은 소속인 파산단독 23인,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신청단독 8인을 박노수의 우호세력으로 파악하고, “우호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이라는 분석 하에 박노수 판사에게 약 21표, 정○○ 판사에게 약 19표가 투표되었으리라고 가정한 후,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 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박노수 판사에게 약 44표가 투표되었으리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제한된 상황과 정보 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이라고 하여 박노수 판사의 ‘우호세력’이 아닌 판사들이 다수 지지를 보낸 것을 ‘여론이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우호세력’이 아닌 판사들이 박노수 판사의 지지기반이 되지 않도록 포섭하는 것을 ‘개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망” 부분에서는, 박노수 판사가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고, 각 목표별 전망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에 관해서는, “사법행정 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2015년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이라고 평가하여 2015년 단독판사 의장 선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이 개입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문건은 2015년과 달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장 직선 체제가 상시화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 “판사회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들이 쉽게 세력화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판단하면서, 판사회의의 역량 강화·장악이 사법행정위원회 역량 강화·장악으로 이어지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세력·조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에 반대하고자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목표에 관해서는, 인권법 커뮤니티에서 판사회의의 실질화·정례화,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 판사회의의 기관(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을 2016년 판사들이 해야 할 일로서 논의한 것을 인용하며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가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예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공지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진 일정에 따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삼아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판사회의가 중심이 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과 안건 제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⁸⁾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전체 기조”를 “박노수 판사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 주지 않는 것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의장 직선제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견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요 목표별로도 “구체적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사무 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관해서는,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선거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과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매우 적극적으로 판사회의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점이 드러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임종현 차장은 [50], [51] 문건에 비추어 위 문건의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 2015년 단독 판사회의 의장이었던 장○○ 판사는 김★★ 기획법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담당자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8) 한편, 공개 문건 중 비슷한 시기에 2016. 4. 5.자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2016. 4. 8.자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21]이 작성되어, “특정 성향”의 사법행정위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대해 부적절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09면 참조).

◆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193]

노◆◆ 심의관이 2016. 3. 26.경 임종헌 차장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으로,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중심으로 판사회의 활성화 움직임 → 판사회의 운영을 둘러싼 법관 내부 갈등 우려 및 판사회의 의결을 통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견제, 도전 예상”을 검토 배경의 하나로 삼고 있고, 수석부장 제도 의 문제점 중 하나로 “내부 소통 한계”를 들면서, “기존 사법행정에 비우호적인 박노수 판사(회생단독)가 경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판사회의 활성화 예상”,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사법행정 현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 “수석부장이 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 등을 자주 가지면서 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에 관하여 대응 논리를 적절히 설득함으로써 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인사나 사무분담 결정 등 사법행정을 매개로 법원장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수석부장 체제를 이용하고, 더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 [194, 195]

노◆◆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2016. 4. 12.경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앞서 검토했던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방안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 중 시행시기에 관

하여 2016년 8월로 할 것인지, 2017년 2월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2016년 8월 안의 장점을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 2016년 하반기에 ‘희망 최우선’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으로 꼽고, 단점을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민사수석부장이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민사단독판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로 오해할 가능성”이라고 꼽으면서, 위 단점 불식을 위해 “사전에 법률신문을 통해 서울중앙 민사부의 비대화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검토”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2안인 2017년 2월안의 단점으로는 “단독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법행정권 도전에 대하여 대응시기를 놓칠 우려 ⇨ 대법원장님 임기 말 리더십 타격 예상”이라고 기재하여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회의를 제어하고자 민사수석 부장판사 이원화 결정을 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실제 2017. 2.경 “민사제2수석부장”자리가 신설되었다.⁹⁾

특별조사단은 민사수석부장 판사 제도를 재편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기초하여 재편 여부를 검토한 부분과 단독판사회의 제어를 고려하여 실행시기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11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 가칭 「충실한 재판 연구반」 [199]

김★★ 당시 서울지방법원 기획법관이 2016. 5. 13.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구성한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구성에 대해서는 “김○○, 이○○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목적과 운영 일정을 정리하며, “판사들의 수다 I”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첨부했다. 이는 법원행정

9)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 ‘민사 제2수석부장’ 신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119>)으로 접근가능, 검색일 : 2018. 6. 22.)

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별조사단은 위 문건에 관하여 연구반 구성원의 특정 연구회 회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11면).

◆ 기타 비공개 문건

그 외 미공개 문건 중에서도 2014. 8. 8.자 “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 [49], 2014. 9. 22.자 “단독판사회의결과보고” [54], 2016. 4. 8.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구성 관련보고(대전지방법원)(차○○)” [55], 2016. 4. 18.자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현황및전망(김★★)” [48], 2016. 8. 1.자 “서울중앙민사단독상반기통계분석(김★★)” [53], 2016. 9. 22.자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경과보고(김★★)” [49] 등이 관련 문건으로 보인다(3차 조사보고서 첨부 문서 목록 참조).

다. 사법농단의 실태

앞서 살펴본 각 문건들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된 후 단독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에 관한 의견 수렴 등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관련된 의제들에 관심을 갖자 이를 경계하였고, 위와 같은 판사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으로 2015년, 2016년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경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판사가 직선제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고, 판사회의를 실질화하여 사법행정위원회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문건에는 ‘판사회의의 실질화’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뉘앙스가 분명하고, 그러한 명시적 표현도 기재되어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수호**라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

진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9조의2는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판사회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14조에서 각급법원이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하며,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법적 목적에 지극히 충실한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선거가 민주적 방식인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정한 방식에 따른 의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선거 개입을 진행한다면, 이는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판사회의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막고 형해화시킨다는 위법한 목적으로, 행정처 소속 판사들로 하여금 입맛에 맞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판사 사찰, 구체적인 선거 개입 방안까지 고안하는 문건,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의장 및 집행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의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백안시한 점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공작행위이고, 판사회의의 업무 방해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는 문건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행정의 형식적인 권한에 기대어 실질적으로는 부당하

게 직권을 남용하여 지시를 받은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의 활동을 방해하려 노력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에 관하여 서로간의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단독판사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표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정인을 ‘우리법연구회’ ‘핵심세력’ 등으로 낙인찍으며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당선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당선 후에도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 법원행정처의 방식 또한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학회나 ‘인사모’는 물론 ‘이판사관’ 등 인터넷 카페에서의 표현행위까지 억압하려고 하는 등 의견 표명 자체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판사들이 사법행정 사안에 대해 침묵하도록 하는 자기검열기제를 작동시키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의견 표명조차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라. 평가

3차 조사를 거치면서 법원행정처가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판사들의 활동을 차단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회의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되는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마 예정자

의 사찰, 다른 출마 예정자의 지원 방안 검토, 당선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안의 검토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법원행정처가 가진 형식적 권한에 기대어 소속 판사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소속 판사들인 문건 작성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 남용 사례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철저히 틀어쥐고 개별 판사들을 통제해야만 성립 가능한 ‘재판거래’ 의혹의 동전의 양면임을 고려할 때, 당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 독립을 위한 개혁 방안 수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조사단의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인 실제 문건 기재 내용의 실행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조사단은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정 경선 개입의혹의 구체적인 실행 사실에 관해서는 입증에 실패하였다.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단 조사의 한계로 보인다.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문건이 작성 및 보고되었던 점, 적시된 실행 방안 등이 매우 구체적인 점, 문건의 작성자와 문건 작성 지시자(임종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실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제안 받지 않았다는 ‘지원단’ 판사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은 실제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강제 수사를 통해 문건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선거 개입 방안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행정처는 박노수 판사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법원행정처는 위 단독판사회의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민사수석부장체제의 재편을 검토하였고, 당시 실행시기 [2안]으로 검토된 2017년 2월 민사 제2수석부장 자리가 신설되었다. 그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업무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았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민사수석부장체제의 개편 자체는 필요했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뿐,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단독판사회의 실질화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부분 또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의도대로 작동했고, 추후의 구체적인 지시 등에 따라 단독판사회의의 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 또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 움직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이 위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일련의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 또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단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의혹과 한계점들을 낱낱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절실하다. 나아가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에 있어 법원행정처의 ‘통제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양심에 따른 재판,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재판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법관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억압당했던 사법농단의 실태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국민과 멀어지게 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의 방향은 사법행정 제도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④]

사법행정권 남용

-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2018. 7. 4. (수)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범농단의 실태

라. 평가

2. 법관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범농단의 실태 및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동향 파악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이사야’)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폐쇄 유도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344]¹⁾

2015. 2. 14. 시모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사야’의 게시글 및 댓글을 분석하여,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사건 선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에 관한 게시글 및 댓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처 방안으로,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며 실제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인용례에 따름. 이하 같음.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355, 356]

2015. 2. 15. 경 서울중앙지법 박모 판사(기획조정심의관 발령받은 상태)가 임종헌 기초실장 지시로 작성하여 정모 심의관 통해 보고한 문건이다. ‘이사야’의 현황을 정리하고, 게시글의 유출 위험을 이유로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위험성 있는 글 삭제 ·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는 방안,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에 관한 주의 공지하는 방안, 인터넷 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86, 187, 188]

2015. 2. 21. 경 임종헌 기초실장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문건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언급하며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모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안, 동료 및 선배 법관을 통해 운영진에게 유출시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주의 환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26]

2015. 2. 26. 경 정모 판사(직전 행정처 심의관)가 작성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전달한 문건이다. ‘이사야’에 게시할 글 초안으로서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평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2015. 3. 2. 경 정모 판사가 작성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위 게시글 초안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그 조회수를

체크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적 반응이 다수라며 카페의 동향을 분석하고 추후의 논의·논쟁의 추이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보고, 심지어 게시글 열람 추이를 지켜보며 ‘통상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접속이 상당히 빈번함’이라고 보고하는 등 판사들의 게시판 접속시간까지 파악하려 하였다.

◆ 이관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8]

2015. 3. 3. 경 정모 판사가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위 게시글 초안 게시 이후 카페 동향을 분석하면서, 민감 글 자진 삭제 문화 정착, 유출 가능성 자각,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29]

2015. 3. 9. 경 박모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을 앞두고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카페 내부 논의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전관예우, 신영철 퇴임, 원세훈 사건, 검찰비판, 언론과 재벌, 김영란법 등을 민감 글 사례로 분석하면서 기자 취재 시도 공개, 처장 당부사항 공지, 민감 글 삭제 내부 제안 등 이후의 민감 글 게시 통계 등을 분석하며 2월 3주 이후 민감한 글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 이후 카페 운영 방안으로, 카페 운영진이 글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방안,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 자동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유출 방지를 위해 복사 방지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위축 효과 지속 여부를 포함한 카페 활동의 지속적 추이 관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 이후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30]

2015. 4. 6. 경 박모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 후 이사야의 주간 게시글을 분석하여 카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종전과 달리 대부분의 글에서 스크랩 및 복사 금지를 설정하는 추세이며 이사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33, 34]

2015. 7. 24. 경 기조실에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이사야의 개설자인 홍모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이라면서 설득논리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법관들의 ‘해방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므로 고도의 자기 절제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홍모 판사가 법원장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종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개설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음은 종전에 검토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부장판사 이상 선배 법관 등이 대거 가입하여 코트넷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배법관이 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해명할 경우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이 사실상 공개된다는 부담감을 느껴 글 작성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31]

2015. 8. 경 박모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이다.
2015. 8. 12. 홍모 판사(이사야 운영자)와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김동오)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홍모 판사에게 제공할 이사야 공지 글 초안을 검토한 문건이다.

위 공지글 초안에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법관이 있다거나 전관예우로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거나 하는 법관들의 글이 유출되면 전관예우에 관하여 법원이 방어할 논리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내용, ‘부장판사가 기록은 보지 않고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거나 지원에서 사무부담은 정치관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이라는 등의 게시글이 알려지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는 내용, 복사 방지 등 기능을 활용하여 유출 가능성을 줄이거나 일정기간 후에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2015. 2. 경 임종헌 기초실장은 이영한 부장판사의 정치편향, 막말 익명 댓글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사야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위험성 있는 글 삭제,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는 방안,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에 관한 주의 공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 2015. 2. 27. 및 2015. 3. 1. 정모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모 판사의 아이디로(김모 판사는 2015. 2. 3. 이사야 가입신청) 이사야 게시판에 접속하여 민감한 글은 일정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글에 대한 반응과 이사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보고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사야 회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운영진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이사야의 운영자인 홍모 판사와 홍모 판사의 소속 법원장의 면담을 성사시키고 이 자리에서 미리 작성된 카페 게시글을 전달한 사실은 단순히 동향을 감시, 보고 한 차원을 넘어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법원노조는 2018. 5. 30. 양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부분도 포함시켰다. 뒤이어 2018. 6. 5.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헌이 형식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법행정 사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의견 표명을 억제하려는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를 통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글을 회원 내부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이사야’ 운영자 홍00 판사를 통하여 일정 기간 후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행정처 소속법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2018. 6. 1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하였는데,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특조단이 확인한 410개의 행정처 문건뿐만 아니라 이 문건들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되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현직 법관들 모임인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카페 운영에 개입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신문, 2018. 6. 19. “檢,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직권남용죄 등 적용 가능 판단”).

라. 평가

특별조사단은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344] 문건이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실제로 보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야 자진 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355] 문건에서 이사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역시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나아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라면서 ‘사법행정권의 남용’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사야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위계로 이사야를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사야가 익명 카페로서 게시글의 명의자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 판사가 이사야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며,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고, 이와 같은 글을 장기간 지속적·연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속 법원장이 이사야 운영자에게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 유출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가 이를 넘어서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할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서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이라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이사야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회원들의 게시물 작성에 대하여 ‘위축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작전 글’을 게시한 점, 이사야 운영자에 대하여 소속 법원장이 면담을 하고, 법원행정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지글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초안을 전달한 점 등은 충분히 소속 법원장이라는 상급자에 의한 위력의 행사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게시물 작성의 ‘위축효과’를 통한 표현의 자유(카페운영목적)의 원활한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특히 임종현 등이 이사야 운영자 홍모 판사에 대하여 논쟁적인 글을 일정 기간 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압박한 점은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넘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사법행정권은 사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작용으로 법원 직원의 임면 및 감독과 법원의 회계·경리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 하여도 법관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주고받는 익명게시판을 사찰하고 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작전 글을 게시하는 데다 상급자로 하여금 운영자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한 행위를 행정권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본 특별조사단의 해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못해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 문건의 작성자들이 스스로 밝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했던 자들이 다름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법관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연루된 법관들은 형사적 책임 여부를 떠나 이미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

2.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행정처의 김민수 심의관 등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지시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왔다.

특조단은 “의혹별 조사결과” 초두에서 “<조사의 개요와 평가의 기준>”을 기재 하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 훼손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 중에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잘못’으로 분류, 평가하였다”고 하면서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부적절

이나 잘못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보고서 19쪽). 이러한 기준은 직권남용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보이고(특조단이 스스로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조사단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차성한 판사에 대한 뒷조사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특조단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했지만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차성한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18]

김민수 심의관이 임종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본 문건은 차성한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차성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본 문건은 탐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고법 95나44148 판결 -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사건 참고). 차성한 판사의 개인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그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의 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차성한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허가 [45]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본 문건은 상고법원 반대의 논조로 시사인에 5회에 걸쳐 글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 자체만 보면 윤리감사관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 판사의 상고 법원에 대한 입장 때문에 기조실 주도의 동향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고법원 반대 입장의 내용을 언론사에 기고한 행위 자체를 타겟으로 삼아 징계를 검토한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차성안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20]

김민수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본 문건은 차 판사가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다루고 있다. 차 판사가 하급심 충실화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데, 진보 매체인 시사인 편집팀에서 차 판사의 이러한 의견을 왜곡하여 대법원과 판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취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리감사관실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선부른 조치를 하기엔 여론의 역풍 우려가 있다고 기재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예의주시,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등을 제시하였고, ‘예의주시’ 부분에서는 특히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 정리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문건은 순번 1번 문건에서 대응방안으로 언급된 ‘선배판사의 설득’을 차성안 판사의 친척인 차00 판사를 통해 실행했으나 실패했다고 기재하고 있어, 문건에서 논의한 대응방안을 실제 실행하였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성폭력 등 사안에 대자보 → 비주류 운동가형”이라고 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탐문을 통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칼럼의 내용인데...”라는 문구 등에서는 동향, 성향 파악 및 징계 검토의 목적이 결국은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이 여론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원장을 통한 면담에서 거론할 부분” 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장 면담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행정처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 지원장을 통한 면담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조선일보와 관련한 문건들이 차 판사의 시사인 기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39]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차성안 판사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코트넷 게시글의 제목과 일자, 시사인 기고문의 일자 등이 정리되어 있고, 2009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차 판사의 재산신고 내역을 정리한 표와 변화추이가 기재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사인간의 채무가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본 문건의 작성 행위는 재산신고내역을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용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문건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검토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나 전체 내용, 작성 시기(2016. 3. ~ 5. 경. 인사모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이 다수 작성된 시기와 일치함)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의심되어 검토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차 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적인 압박을 가할 수단을 찾기 위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42]

2015. 1.~ 2. 기조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성향 분석 부분은 주변 판사들에 대한 탐문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게시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건의 작성경위, 목적은 조사단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 박노수 판사의 동향 관련 자료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본 자료가 포함된 파일 내용이 깨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 각급 법원 주기적 검토 방안 [354]

본 문건은 임효량 심의관이 2016. 8.경 임종현 차장의 지시를 김민수 심의관을 통해 전달받아 작성했다. 거점법관(행정처 출신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정보 수집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법원장 등을 통해 점검, 대응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위 내용 이외의 뒷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현 전 차장은 이 문건을 반려하여 실행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탐문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실제 거점법관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해도 행정처 출신 등 정보를 수집하는 법관이 법원별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방안 [346]

박상언 심의관이 2015. 7. 경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주된 부분을 작성하였

다. 이 문건은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 6. 경 작성된 것으로서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가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온 근거자료라는 취지로 조사단은 판단하였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특조단은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문건들을 정리하였는데 종합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보임”(보고서 99쪽)

특히 특조단은 행정처에서 “차성안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기고의 검직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한편 특조단은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처 심의관들이 다른 법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이사야 게시글을 확인한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특조단은 차성안 판사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시자인 임종현 전 차장을 기준으로 인적 책임을 묻는다고 보면, 차성안 판사뿐만 아니라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송승용 판사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특조단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직권남용죄 성립과 관련하여 관례는 지시를 행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특조단은 이 부분 종합검토에서 이미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 및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보고서 99쪽). 우병우에 대한 직권남용 관련 1심 판결(민정비서관으로서의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위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초 검토 내용과 다르게 전원회의에 심사관 조치의견이라는 문건을 보고하게 하고 고발 의견을 진술하게 했다는 취지), 김종덕에 대한 직권남용 항소심 판결(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자들의 지원배제를 위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심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게 한다든지 명단을 송부한 행위들도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인정), 앞서 언급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관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판사들에 대한 동향성향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추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성안 판사에 대한 문건에는 개인 이메일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만약 행정처에서 대법원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조사보고서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대부분의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되어있으나 애초 박병대 전 행정처장이 2015. 7.경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하여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조사결과(보고서 20쪽), 이 무렵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법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 BH에 협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던 점, 전체 문건 중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한 문서들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들도 임종헌 전 차장을 최종 보고받는 자로 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각 처장 및 대법원장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5.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 간의 경과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3. 사법농단의 실태

4. 평가

[붙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1. 사안의 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선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와대는 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선법위반의 점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3년 실형), 대법원(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유죄(4년 실형), 상고기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1심부터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2017. 3. 24.부터 2017. 4. 18.까지 26일간 행해진 사법부 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원세훈 재판과 관련된 이슈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어서 2017. 11. 20.부터 2018. 1. 22. 사이에 행해진 사법부 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는 “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문건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문건(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

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1))은 3차 조사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위 문건을 작성한 정00 심의관(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문건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이르러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위 문건을 제외한 원세훈 재판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 또는 공개되었다. 이 문건들은 사법행정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명백한 정황을 다수 담고 있다.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공판진행상황 [64]

위 문건은 2014. 1. 27. 경(2014. 1. 27. 공판준비기일 전) 박00 심의관(당시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 현 서울고법 판사)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박00 심의관은 위 문건을 기초실장의 요청에 따라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의 작성 행위를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세훈(전 국정원장) 사건 개요 [61]

위 문건은 2014. 8. 23. (2014. 9. 11. 선고기일을 앞두고) 박00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는 김용관 사건 담당부. 김용관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

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인용례에 따름. 이하 같음.

죄 선고한 바 있음.” 부분과 같이 원세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과거 담당 사건과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 [56]

위 문건은 2014. 9. 12. (1심 판결 선고 직후) 박00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차장과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1심 사건의 선고결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된 것이다.

◆ 원세훈 사건 1심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 [57]

위 문건 역시 2014. 9. 18. 박00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위 56번 문건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위 문건은 2015. 2. 8. (2015. 2. 9.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정00 심의관(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항소기각과 인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문제되는 문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362] ·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 보고(요약) [29]

위 문건들은 2015. 2. 9. 오후 4시경(항소심 선고 직후) 박00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박00 심의관은 구체적 지시 없이 현안보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했다.

문건 자체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작성이 되어 있으나,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 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의 논리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건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

위 문건은 2015. 2. 10. 정00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정00 심의관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작성사실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그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정00 심의관은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임종헌 기조실장은 “무죄를 예측하고 있어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향소심 선고와 관련된 동향 파악이 정리되어 있어, 가장 문제되는 문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67]

2015. 7. 23. 신00 연구관(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현 평택지원 부장판사)이 작성한 것으로 해당 파일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법리가 정리되어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 [66]

2015. 7. 23.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

원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88호) 심리방향 [60]

2015. 10. 6. 작성된 것으로 “당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작성자는 서울고등법원 소속판사로 추정된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문건의 작성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65]

위 문건은 2016. 7. 18. 경 임종헌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를 담고 있다.

◆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7. 18. 재판) [62]

위 문건은 2016. 7. 19. 이00 공보관(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서울고법 판사)이 작성한 것으로 이00 공보관이 직접 법정에서 참석하여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위 공판기일에 참석한 국회의원, 기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특별조사단 조사의 초점은 ‘재판관여 행위’에 맞추어져 있었다. 특별조사단은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재판관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3. 사법능단의 실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공판진행상황 [64] 문건 자체는 일반적인 재판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나, 기조실장이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에게 이와 같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개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사건 개요 [61] 문건에는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는 김용관 사건 담당부. 김용관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한 바 있음.”이라는 기재내용이 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원세훈 재판, 청와대 각본·대법원 연출 법정드라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심 선고 결과가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된 정황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한다. 선고 당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장' 아래에는 원 전 원장을 뜻하는 '元-2.6y, 4유, 停3'”라고 쓰여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메모 그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이 메모가 기록된 청와대 비서관 회의는 오전에 열렸고, 선고는 오후 4시께 결과가 나왔다. 이후 9월 25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원세훈 판결 세미나 → 법원 접수기. 고급 협박'이라고 적혀 있다. 민정수석실이 1심 결과를 분석해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영향을 끼치라는 지시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에 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 주심판사의 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및 출신 고등학교가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나꼼수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본 문건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인

정00 심의관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여 무엇에 대응하려고 한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행위 자체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위 문건은 BH, 여권, 야권,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최근 정세를 마치 정보기관인 양 정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 문건 중 2페이지 내용을 보면,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이 환영, 안도라고 하면서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를 작성한 정00 심의관이 위와 같은 후문을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추적하여, 구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 중 누가 사법부 소속의 어떤 인물에게 감사의사를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감사의사 전달이 단지 1심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위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 또는 항소인용으로 날 경우에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하며 “다만, 김00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 자제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기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건의 작성자는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김00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관들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김00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사법부 내부의 불만 표출을 최소화 시키는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무엇보다 위 문건은 항소기각 판결시 사법부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글 작성, 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

심의관)은 당분간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 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함”이라는 기재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아울러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한 부분은 법관 인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법원장을 통하여 사법부 내의 법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과기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향은 BH, 여권 대응이 중심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BH 및 여권에 대하여 “신뢰 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해야 한다고 기재한 부분 또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연 사법부와 BH · 여권과의 사이에 어떠한 신뢰 관계가 있었고,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 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 법무부장관 의견 제출 기회 부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항소심 재판의 결과와 상고법원의 추진을 연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와도 연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고 하면서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한 것과, “3.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라고 기재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BH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 진행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표출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해당한다.

급기야 위 문건의“4.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 입장 전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설득 절차를 거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법부의 비공식라인이 BH와 닿아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진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의를 BH가 곡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사법부는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진의’라는 표현은 아래 59번 문건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5. 전면적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 인프라 혁신플랜’ 논의로 국면, 논의 방향 전환을 노력”이라는 제목 하에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BH 입맛에 맞는 사법제도를 제안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362] 문건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판단이 갈렸던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문건은 2015. 2. 10.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모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었다. 대법원은 이 보고서를 적극 수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5개월 뒤인 2015. 7. 16. 선고에서 2심에서 인정된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부분을 파기하였다. 보통 대법원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연구관이 법리를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검토보고서를 적극 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모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이 문건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문건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와대의 우려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대법원 재판부에게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실제 판결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들어간 보고서가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행정처의 재판관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 문건에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행정처가 항소심 판결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것이다. 법무비서관실의 누구와 사법부의 누가 서로 재판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행정처가 왜 불안해한 것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위 문건에는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라인을 통하여 보고됨”이라는 기재 부분도 있다.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민정라인 사이에 원세훈 재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결하다.

또한 판결 선고 후 동향 분석 관련 부분에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부와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를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나아가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이라는 문구에 포함된 “진의”란 “원세훈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이기를 바란 법원행정처의 의도”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이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 해명을 위해서는 위 문건과 관련된 정00 심의관, 임종헌 기조실장, 청와대 곽00 법무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등의 연결성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방향 [60] 문건은 작성자가 원세훈 사건 과거 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통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누군가 엿듣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반대로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거점법관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리방향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이라면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재판에 관여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²⁾.

2) 당시 재판장(김시철 부장판사)의 성향과 재판진행 태도(참고 : 시사인 기사, ‘이상한 원세훈 재판, 판사야? 변호사야?’, 2016.8.4.) 및 문건 내용의 구체성을 고려했을 때, 재판장이 자신과 주심판사의 통화내용을 거점법관에게 의도적으로 들려주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다. 위 문건은 제목을 "당심"이라고 붙였고 재판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재판장은 "기획법관이 궁금해할까봐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획법관이나 재판부가 직접 작성했을 개연성이 제3의 어떤 서울고법 판사가 작성을 가능성보다 높고 이 문건이 행정처 기조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행정처에서 지시를 받고 보고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어떤 서울고법 판사"가 "알 수 없는 경위로" 전달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사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건작성자가 누구인지,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떠한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 [66],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 [62] 문건들은 위 언급된 문건들에 비하여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으나, 그 작성의도가 의심스럽다.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65]** 문건과 관련하여서도 임종현 기조실장이 직접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단독] 박근혜·양승태 핵심 측근 간 '사법농단 직거래' 새 증거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2015년 7월 임종현 법원행정처 기획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물적 증거가 추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거래' 의혹의 물적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평가

특별조사단은 주로 원세훈 재판의 진행 과정에 사법행정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다수 기재되어 있다. 특별조사단은 재판관여는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 내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조사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강제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발견된 문건 그 자체의 존재,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특히 앞서 본 58번, 362번, 59번, 그리고 60번 문건에는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다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대상이 된다) 실제로 재판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다소 불명확하나, 본 문건들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BH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해야 하므로 판결이나 절차진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 2013년

- ▶ 4. 1.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고발
- ▶ 4. 18. 수사경찰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구성
- ▶ 4. 29. 원세훈 전 원장 1차 소환조사
- ▶ 4. 30. 검찰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 ▶ 5. 22.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9명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 ▶ 6. 14. 검찰,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원장(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불구속기소
- ▶ 8. 26. 원세훈 전 원장 첫 공판
- ▶ 11. 20. 검찰,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트위터 글 121만228건(선거 관련 64만7443건, 정치 관련 56만2785건)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 ▶ 11. 28.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 2014년

- ▶ 7. 14. 검찰,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 ▶ 9. 11.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3명,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국정원법 위반 인정,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 안 된다”

-원세훈 전 원장,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

- ▶ 9. 12. 김동진 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원세훈 판결 정면 비판
- ▶ 9. 15.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 ▶ 9. 17.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열고 1심 판결 항소 결정, 법원에 항소장 제출
- ▶ 9. 26.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 ▶ 11. 7. 서울고법,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 11. 14.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첫 공판
- ▶ 12. 3.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 ▶ 12. 29. 검찰,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 2015년

- ▶ 2. 9.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3명,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모두 유죄 인정”
 - 원세훈 전 원장 법정구속,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 **2. 10. 대법원 법원행정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작성(‘사법 블랙리스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공개 내용)**
 - ▶ 2. 12.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 상고
 - ▶ 2. 13. 검찰, 대법원 상고
 - ▶ 2. 24. 대법원 3부에 배당
 - ▶ 3. 16.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에 보석신청
 - ▶ 4. 6. 대법원,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간 갱신
 - ▶ 4. 10. '대선 개입 사건' 주심에 민일영 대법관
 - ▶ 6. 3. 대법원,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간 갱신

- ▶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 판결 파기환송
- ▶ 10. 6.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보석 신청 허가

◇ 2017년

- ▶ 2. 1. 법원정기 인사로 파기환송심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로 교체
- ▶ 7. 10
 - 세계일보, 국정원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후 'SNS 장악 보고서' 의혹 폭로
 - 법원, 검찰 측 'SNS 장악 보고서' 증거 신청 기각. 결심공판 연기
- ▶ 7. 24. 검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서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구형
- ▶ 8. 24. 검찰,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재개 신청
- ▶ 8. 28. 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공판 변론재개 신청 불허 결정
- ▶ 8. 30.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법원, 원 전 원장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
- ▶ 9. 1.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 재상고
- ▶ 9. 4. 검찰, 대법원 재상고
- ▶ 9. 12. 대법원 3부에 배당
- ▶ 11. 6. 재상고심 주심에 김재형 대법관

◇ 2018년

- ▶ 1. 19.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 검찰 소환조사
- ▶ 1. 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동향 청와대 보고 문건 공개
- ▶ 1. 23. 현대법관 13명 "청와대 교감설 사실무근" 입장발표

[사법농단 ISSUE PAPER ⑥]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6. (금)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3. 사법농단의 실태 -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4.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 및 추가수사 필요성

가.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한 비판

나. 형사처벌 및 추가수사 필요성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1. 사안의 개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에 의하여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에서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다. 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②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으로 명명된 고 김형근 교사 사건, ③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문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앞의 두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작성된 문건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술되고 있어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법외노조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이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흔적을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쥔 주요사건”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대법원의 결정 방향 및 결정 시기,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문건을 생산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출발은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다(이하 ‘법외노조통보처분’). 전교조가 같은 날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쟁송이 시작되었다. 크게 ①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사건, ②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효력정지 사건(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 ③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소송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상황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법외 노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제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3. 11. 1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효력정지 인용(서울행정법원 2013. 11. 13.자 2013아3353 결정, <u>1차 효력정지 결정</u>) :관여법관 판사 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법내 노조
2013. 11. 21	고용노동부장관,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고용노동부장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자 2013루1179결정) :관여법관 민중기(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2014. 6. 19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청구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u>1심 본안 전교조 패소</u>) :관여법관 판사 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법외 노조
2014. 6. 23	전교조, 항소	
2014. 7. 10	전교조, 항소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2014. 7. 22.	전교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4. 9. 19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366 결정, <u>2차 효력정지 결정</u>),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413 결정) :관여법관 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현종, 판사 김관용	법내 노조
2014. 9. 30	고용노동부,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	
2015. 5. 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21 등 결정)	
2015. 6. 2	대법원 제1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 인용, 서울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대법원 2015. 6. 2.자 2014무548 결정) :관여대법관 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법외 노조

2015. 11. 16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효력정지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11. 16.자 2015아328 결정, 3차 효력정지 결정) :관여법관 판사 김명수(재판장),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법내 노조
2016. 1. 21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2심 본안 전교조 패소) :관여법관 판사 황병하(재판장), 판사 유현중, 판사 김관용	법외 노조
2016. 2. 1	전교조, 상고(대법원 특별3부 계속 중, 2016두32992호)	
2016. 2. 1	전교조, 상고심에 효력정지 신청(대법원 특별 3부 계속 중, 2016아1011호)	

다시 본안 사건과 효력정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 본안 사건(원고: 전교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사건명: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의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2013. 10. 24. 소 제기 → 2014. 6. 19. 원고 패(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원고 2014. 6. 23. 항소 - 2심: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 원고 2016. 2. 1. 상고 - 3심: 현재 특별3부 계속 중(대법원 2016두32992호)
<p>○ 효력정지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본안에 부수: 2013. 10. 24. 본안 소 제기와 동시에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 → 인용(서울행정법원 2013. 11. 13.자 2013아3353 결정, 1차 효력정지 결정) → 고용노동부가 항고 → 기각(서울고등법원 2013. 12. 26.자 2013루1179결정) - 2심 본안에 부수: 2014. 7. 10.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 → 인용(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366결정, 2차 효력정지 결정):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 → 위 결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재항고/ 대법원은 재항고 인용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대법원 2015. 6. 2.자 2014무548 결정):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2015. 5. 28.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효력정지사유는 없다는 이유

→ 서울고등법원(환송심)에서 다시 효력정지신청을 인용(서울고등법원 2015. 11. 16.자 2015아328 결정, **3차 효력정지 결정**) : 현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다툼의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어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

- **3심 본안에 부수:** 2016. 2. 1.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2016아1011호로 계속 중)

3차 보고서에서 특히 문제된 부분은 바로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환송심)에서 다른 이유를 들며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전교조는 2심 본안에서 패소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되었다. 전교조는 상고와 동시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결정을 지체하고 있어 전교조는 2심 본안 판결 선고시인 2016. 1. 21.부터 현재까지 계속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 중 오로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만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문건이 있다. 2014. 12. 3. 작성·보고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¹⁾이 그것이다.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복하여 재항고심이 계류 중이었던 시기, 대법원 결정 방향 및 시기를 제안하고 대법원 결정의 파급 효과와 이후 대응을 분석하고 있는 문건이다. 3차 조

1) 3차 보고서 기재 방식에 따름. 이하 같다.

사위가 열지 못했다고 밝힌 2014. 12. 3. 작성된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 [311]’은 위 [151]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으로 보인다(3차 보고서 166쪽 참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청와대의 관심사건으로 언급하며 대법원의 효력정지 재향고심의 처리 방향과 결정 시기를 검토하는 문건으로는 ▲ 2015. 2. 8. 작성·보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 2015. 3. 12. 작성·보고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 2015. 4. 12. 작성·보고된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가 있다.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를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언급한 문건으로는, 2015. 7. 27.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²⁾,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등이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소송의 경과와 문건 작성 시기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법원행정처 문건은 파란색 표시).

본안 사건 및 기타	효력정지 사건 및 관련 문건
2013. 10. 2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제기	2013. 10. 24. 전교조 효력정지신청 2013. 11. 13. 효력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 2013아3353) 2013. 11. 21. 고용노동부장관 항고 2013. 12. 26. 고용노동부장관 항고기각 결정 (서울고등 2013루1179)
2014. 6. 19. 전교조 패소 (서울행정 2013구합26309)	

2) 3차 보고서에서는 문건 명을 ‘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기재하고 있으나, 보고서 인용 파일 추가 공개 시 파일명은 ‘과거왜곡의 광정’이다

<p>2014. 6. 23. 전교조 항소</p> <p>2013. 7. 22. 전교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p> <p>2014. 9. 1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서울고등 2014아413)</p>	<p>2014. 7. 10. 전교조 효력정지신청</p> <p>2014. 9. 19.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 결정(서울고등 2014아366)</p> <p>2014. 9. 30. 고용노동부장관 재항고</p>
<p>2014. 12. 19. 통진당 해산결정(2013헌다1)</p>	<p>2014. 12. 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p> <p>2014. 12. 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 [311]</p>
<p>2015. 5. 28. 합헌결정(헌재2013헌마671등)</p>	<p>2015. 2. 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p> <p>2015. 3. 12.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p> <p>2015. 4. 12.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p>
<p>2016. 1. 21. 항소기각(서울고등 2014누54228)</p>	<p>2015. 6. 2. 효력정지 파기환송 결정(재항고인용, 대법원 2014무548)</p> <p>2015. 7. 2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p> <p>2015. 7. 28.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p> <p>2015. 7. 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p> <p>2015. 11. 16. 환송심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 2015아328)</p>
<p>2016. 2. 1. 전교조 상고(대법원 2016두32992)</p>	<p>2016. 2. 18. 전교조 효력정지신청</p>

나. 문건별 내용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2014. 12. 3. 보고한 문건이다. 그 내용을 분설하여 살펴보면,

①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한 BH의 입장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추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 후의 청와대 입장을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한 현안으로 취급’으로 분석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다. [검토]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원원의 결과가 될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151] 2쪽 참고

② 재항고 기각과 인용의 각 득실을 분석하였다. 재항고 기각은 양측(BH 및 대법원)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인 원원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③ 결정 시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을 가장 극적인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④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가 ‘야당 34 대 여당 5’라며, 결국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강한 비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 역시 관심이 분산되어 거센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⑤ 본안사건 담당 판사의 인사교체시점과 결부시켜 본안사건의 결정시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다.

⑥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본안사건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향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안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른 파장까지 분석하고 있다.

-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
- '최교조는 문제가 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
- 만일 결국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 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실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151] 7쪽

⑦ 재항고 인용을 전제로 이에 대한 BH의 반대급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원세훈 항소심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015. 2. 8. 정다주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결과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문건이다.

②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③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58] 8쪽

이 문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세훈 사건이 파기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되는 경우에, BH·여권(與圈)에 대응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사건 사법 현안 신속 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범외노조 사건은 BH가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하였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와 함께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정다주 심의관이 2015. 2.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된 후임에도 임종헌 당시 기초실장의 지시로 같은 해 3. 15. 작성·보고한 문건이다. 2015. 3. 12.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문건이다.

■ [착안점③]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끝]

[295] 8쪽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사정을 강화할 경우 등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

박상언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4. 12. 작성·보고한 문건이다. 2015. 4. 9. ‘성완중 리스트’가 공개되자 이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정국에의 영향 및 사법부에 미칠 영향 예측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다.

● 관심 사안의 적절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152] 17쪽

대법원은 당시 정권이 ‘성완중 리스트’의 등장으로 국정 장악력 및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의 영향력 저하되고 ‘상고 법원 등 이슈’가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BH와 여권의 국정장악력 상실로 인한 진공 상태를 활용하여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BH와 입법부에 대한 협조 및 우호관계의 유지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관심 사안”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앞서 설명한 문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 이전 그 대법원 결정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검토인 반면, 위 문건들은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 이후 그 대법원 결정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의 시작은 정다주 판사가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7. 27. 작성·보고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이다. 이 문건은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을 모아놓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은 당시 정부의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적시되어 있다.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도 같은 내용이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은 시진국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의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을 대표적 협력 사례로 들고 있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협력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전교조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에도 불구하고 2015. 11. 16. 서울고등법원(환송심)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이 다시 인용된 이후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 문건에서 계속 언급하였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은 동일하게 사법부의 정부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3. 사법농단의 실태 -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2014. 6. 14. 시작해서 2015. 1. 9. 끝나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하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초기 기록에서부터 전교조에 대한 언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 판결 선고 이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p>2014. 6. 15.(일) 김영한 비망록 장(長)</p> <p>②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중요 승소시 강력한 집행 (전교조) 교육감 비협조 예상 YS때 노동법 개정(제3자 개입 금지) 오세용. 부의장. 노조 명당성당 점거 재판 집행 철저히 - YS 시절 잘못 교훈 삼아 의지. 수석, 관계부처 - 독려</p>
--	--

2014. 6. 19.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은 행정부처의 대응으로 현실화되었다. 2015. 6. 20.자 비망록에는 “교육부 전교조 관련 공문 시행, 복직명령, 직무이행명령”이라고 대응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부는 2014. 6. 20.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허가를 취소하며 복직명령을 내리고 전교조에게 지원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하거나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h1>보도자료</h1> <p>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p>
--	--

[자료문의] ☎ 044-203-6464 교원복지연수과 과장 이용학, 사무관 김규호

교육부,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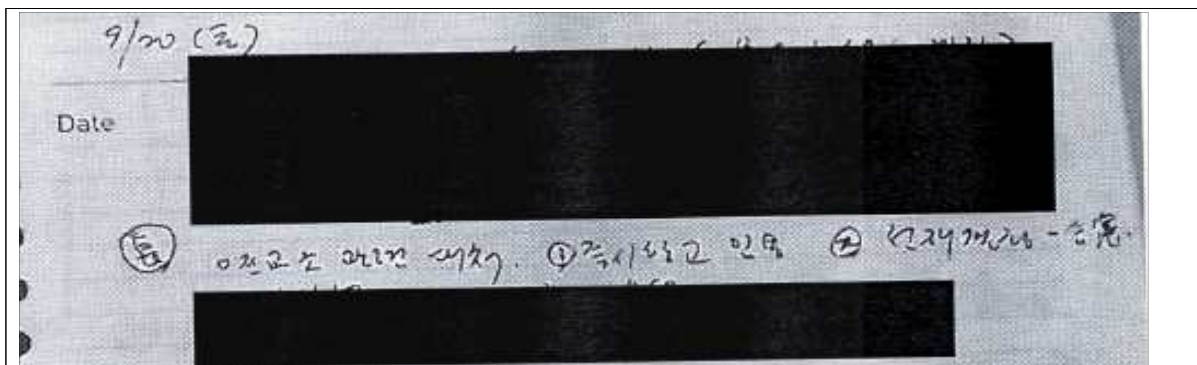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로도 청와대가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메모를 여러 날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4. 6. 20.자 비망록을 보면, 행정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외 단체 및 국회의 법 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2014. 6. 20.(금) 김영한 비망록</p> <p>○ 전교조-고용부에 조치토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OECD에 외무부 통하여 취지 전달토록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原則) 고수토록 독려 - 전교조 투쟁 일정 : 6/27(금) 상경투쟁, 7/12(토) 전국교사대회 <p>장(長)</p> <p>○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p> <p>*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항 : 半합법, 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법집행. <p>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p>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엠네스티, ILO, 대사들로 숙지토록</p>
--	--

2014. 6. 25.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대응 방안 - 6/26(목) 대검 공대협”라는 메모가 등장한다. 실제 2014. 6. 26.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전교조 조퇴투쟁에 대하여 엄정대처를 천명하였다. 2014. 7. 1.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복귀 조치 우선적으로 단행 - 형사고발”이라고 기재하여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고 있으며, 2014. 7. 5.자 비망록에는 각 시·도 교육청의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여부를 확인하며 “자금 추적 요원 파견 필요”라고 적고 있다. 2014. 7. 15.자 비망록에는 “미복귀자는 직권면직”, 2014. 8. 2.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 직무이행명령, 교육부장관 직권면직 대(代)집행”, 2014. 8. 9.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매우 꼼꼼히 챙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항소심 단계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2차 효력정지 결정)되어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실행하기 어려워지자, 청와대의 대응은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로까지 나아간다. 2차 효력정지 결정 바로 다음날인 2014. 9. 20.자 김영한 비망록에는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 - 합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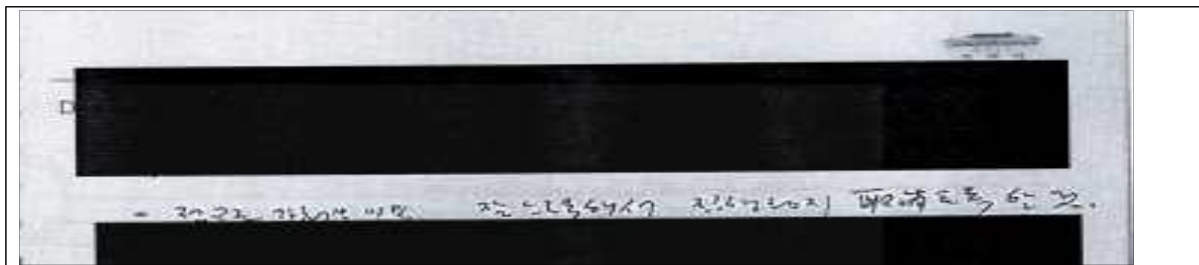


2014. 9. 20.(토) 김영한 비망록

장(長) ○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 - 합헌(合憲)

이 시기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 이전으로, ▲ ‘즉시항고’란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 ‘헌재결정’이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청와대는 법외노조 사건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4. 9. 22.자 비망록에서 청와대의 재판개입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효력정지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관련하여 ‘공대협(공안대책협의회)’에 대응을 주문하는 문구와 함께 “전교조 가치분 인용 -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문구가 발견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다.



2014. 9. 22.(월) 김영한 비망록

전교조 가치분 인용 -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

이후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는 2015. 6. 2. 대법원에서 인용되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김영한 비망록에서 효력정지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문구가 등장한 이후부터 (2014. 9. 22.) 대법원의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2015. 6. 2.), 법원행정처는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문건을 집중적으로 생산해낸다.

2014. 12. 13. 작성·보고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라는 문건이 대표적이다. 이 문건은 재항고 인용결정(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이 결국 BH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재항고심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이 교체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결론이 항소심 본안 판결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5. 2. 8. 작성·보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2015. 3. 12. 작성·보고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2015. 4. 12. 작성·보고된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에서는 청와대의 관심사건인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심의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

위 문건의 검토대로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2015. 6. 2.)을 한 이후에는, 이 대법원 결정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열거하며 상고법원을 추진을 위한 설득방안으로 내세웠다(2015. 7. 27.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대가로 이득을 얻겠다는 차마 믿기 어려운 ‘재판거래’를 실제로 기획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BH에 대하여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상고법원 입안을 위하여 이 ‘이니셔티브’를 가감 없이 활용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재항고 인용이 BH와 대법원 양측 모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전제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5. 5. 28.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불과 5일 만인 2015. 6. 2.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정식으로 접수되기도 전에 미리 재항고 신청부터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51] 문건의 내용과 같이 범외노조 사건 본안 2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하였고, 특히 종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했던 민중기 재판장이 황병하 재판장으로 교체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2심 본안 사건의 시간 끌기, 재판장 교체도 [151] 문건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중기 당시 수석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였으며, 전교조의 1심 단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 2013루1179 결정의 재판장으로, 대법원의 시나리오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법관인사이드’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법원 행정처가 가장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한 개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후 범외노조 사건 항소심 본안은 위 문건의 내용대로 민중기 판사의 보직이동 후인 2016. 1. 21. 선고되었다.

특별조사단도 인정하고 있듯,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보고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문건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동일하게 실현되었고, 다시 법원행정처는 범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대법원 결정을 정부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거래는 실제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문건의 내용은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등의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교조 탄압을 추진하는 정부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 및 추가수사 필요성

가.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한 비판

특별조사단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의 결론이 있게 되면 후에 대법원의 본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함부로 관측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검토가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분석하였다(3차 보고서 175 내지 176쪽).

3차 보고서는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조사보고서 183쪽 참조),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 적어도 전교조 법외노조 등 직접 관련된 문건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밝혀내었어야 한다.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퍼즐을 맞추듯 밝혀냈어야 한다. 그럼에도 특별조사단은 이를 만연히 흘려보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음에도 판사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바 없다는 점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재판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사건에 관하여는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조사보고서 185쪽 참조)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법관이 다른 법관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조사를 거부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강제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고, 문건 작성자들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보고서는 일부 사법거래 흔적에 대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울만 좋은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 형사처벌 및 추가수사 필요성

임종헌 기조실장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청와대와 음험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문건 작성을 정다주 심의관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문건 작성 지시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지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으로 할 수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건은 양승태의 사전 지시 내지 적어도 사후 승인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승태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승태, 임종헌, 정다주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관의 재판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실제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서 ‘재항고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

고, 이를 실행에 옮겼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 문건에는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양승태, 임종헌, 정다주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재판부와 어떤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하고도 독립적인, 납득할만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⑦]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2018. 7. 10.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나. 사안의 개요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가. 사안의 개요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4. 결론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의 협조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등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과거 재임 기간 중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퇴임 이후 ‘디가우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이유로 검찰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 새벽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2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은 대체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 대다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위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등은 사법농단 사태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및 파일 삭제 행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행정처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 해명의 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디가우징(degaussing)이란, 통상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포렌식 등의 기술적 복원 방식을 통해 파일 등 자료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디가우징은 디가우저라는 장치에 하드디스크를 넣은 후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하드디스크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더라도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디가우징이라는 용어가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0년경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장진수는,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최종석의 지시로 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하였다. 이후 위 장진수는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어,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주요한 문건 작성 도구로 활용된 만큼, 디가우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디가우징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 롯데 그룹 비자금 사건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나. 사안의 개요

검찰은 2018. 6. 26.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

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튿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디가우징은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위 디가우징의 경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관련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답변하였다. 즉,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를 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 1)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임의로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2)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국가의 소유이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작성 공무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록이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이 대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거이다. 여기서의 ‘기록물’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 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대법관 이상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보는 완전히 소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령의 요구는 ‘공식적으로 결재·접수한 기록물’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정보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모두 완전히 소거한 것이라면 이는 공공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공공기록물법 제50조 제1호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들 기록물은 반드시 남겨 관리했어야 하며, 그렇게 관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한 행정예규에 불과한 “전산관리운영지침”이 이러한 ‘공공기록물’을 소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 지침 자체가 상위 법률인 공공기록물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 3) 사건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의 일반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수사기관’이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혐의자들이 근무했던 법원행정처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사건 관련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인들이 형사재판절차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판결을 하면서 당연한 전제로 여겨왔던 것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범죄행위 혐의를 받는 조직 스스로가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료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올 뿐이다.

- 4) ‘공무상 비밀’이라는 사유가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모두 ‘공무상 비밀’이었다. 이미 공개가 된 자료들 중에도 문건 자체에 이미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었다. ‘공무상 비밀’인 자료를 공개한 법원행정처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하드디스크 원본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고 복구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하드디스크 원본 자체에 대한 압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실제로 ‘사건 관련성’이 없고 ‘공무상 비밀’인 자료들이 있다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을 준용하여, 검찰에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개별 파일마다 소명을 하여 수사대상 자료에서 제외시키면 족한 것이지, 자료 전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5) 한편 최근 언론 보도¹⁾에 의하면, 최근에 퇴임한 박보영 대법관 등의 경우 재임 중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행위가 규정 또는 관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6) 무엇보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된 것은 2017. 10. 31.인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2017. 9. 22.)한 후 한 달도 더 지난 시기이며,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²⁾하기 불과 3일 전이다. 이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법률 규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확립된 관례도 아닌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1) 2018. 7. 5.자 JTBC, <썰전>

2)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은 2017. 11. 3.이다.

가. 사안의 개요

김민수 부장판사는 2015. 2.부터 2016. 2.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 2016. 2.부터 2017. 2.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을 역임한 법관으로, 심의관 재임 당시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다가, 특조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김민수 당시 심의관은 인사이동 당일이었던 2017. 2. 20. 06:52부터 08:00까지, 인수인계할 파일을 추려낸 이후 2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주목했던 암호 파일도 삭제되었는데, 그 파일명은 ① 인사모 관련 검토, ②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③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등이다.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 1) 형법 제141조는 공용서류무효죄와 관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김민수 전 심의관은 인수인계할 파일을 추려낸 후 나머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민수 전 심의관이 위와 같이 파일을 삭제한 시기에는 이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관련 문건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점, 삭제된 파일에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는 파일들(인사모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통상 인수인계 대상에서 제외할 파일들은 업무관련성이 없

는 개인적 파일들이라 할 것인데 위 파일들은 파일명만 보더라도 그 개인적 파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임자로서 인수인계할 파일을 선정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 삭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 2)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행태가 직권남용 등 형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민변 사법농단 T/F가 발간한 다수의 이슈리포트의 내용으로 같음하기로 한다. 나아가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민수 전 심의관은 임종현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본인의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다수의 파일을 삭제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대로 김민수 심의관이 파일 삭제를 한 시기, 삭제한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일 삭제 행위는 직권남용죄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위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위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정다주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대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협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강제수사 등 보다 능동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하여야 한다. 시간이 늦추어질수록, 증거인멸의 속도와 범위는 더욱 빨라지고 넓어질 것이다. 진실이 다가우징 되기 전에, 진실이 삭제되기 전에.

[사법농단 ISSUE PAPER ⑧]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2018. 7. 16. (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 「갑을오토텍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5
가. 조사내용의 기재	5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9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9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10

1. 사안의 개요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기본급에 비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형태가 많고, 이러한 임금구조는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보통 기업들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은 산정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통해 이를 정당화해 왔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잘못이라며, 추가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91046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규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고수했고,¹⁾ 재계는 이러한 행정해석을 근거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배제해왔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은 더 많은 통상임금 사건을 가지고 법원을 향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 「갑을오토텍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2013. 5. 초순 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1) 「통상임금 산정 지침」,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GM사의 덴 애커슨 회장과 ‘통상임금’ 이야기를 나눈다.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 된다는 조건부로 5년간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고, 박 전 대통령은 통상임금에 대해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²⁾

2013. 7. 26. 한국 GM 사무직 근로자들이 낸 업적연봉에 관한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이하 ‘경총’이라 함)는 2013. 7. 28. 경 “상여금이나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하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 그 이틀 뒤인 2013. 7. 29.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던 이혜훈 의원 역시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촉구”하였다.⁴⁾

그리고 실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2012다89399호,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 회사가 상고, 2012. 10. 10. 상고장 접수)」 통상임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로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바꾸지는 못하였지만,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사합의로 이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과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원고 패소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통상임금 판결’이라 함)을 한 것이다.

2) 연합뉴스, ‘칭 “미GM, 통상임금 해결 전제 80억불 투자 재확인”’, 2013. 5. 9.

3) 머니투데이, ‘재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필요”’, 2013. 7. 28.

4) 이데일리, ‘이혜훈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해 통상임금 기준 마련해야”’, 2013. 7. 29.

근로자의 임금 관련 조항들은 강행법규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통상임금 배제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일반 원칙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과거의 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은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3건의 문서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2건을 공개하였다.⁵⁾

첫 번째 문건은 2017. 9. 5. 공개변론이 있기 2주 전(2017. 8. 22.)에 작성한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⁶⁾이다. 두 번째 문건은 판결 선고 하루 후(2017. 12. 19.) 작성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파악 [69] [391]’에 관한 것이다.

한편 특조단이 통상임금에 관한 문건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라는 또 다른 문건⁷⁾에서는 통상임금 사건을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문건은 특조단이 암호파일을 열어보거나 검색어를 통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적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4개의 파일 중 하나이다. 정다주 전 심의관과 임종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통상임금

5) 문서번호 69, 391, 409번. 391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69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힘.

6) 특조단 보고서 기재례에 따름. 이하 같음.

7) 80번 문서에 인용되거나, 82번 문서에 별첨으로 인용됨

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2013. 8. 22.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보고한 문건으로, 같은 해 9. 5. 공개변론을 앞두고 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ii)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iii)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여부 등에 관해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책연구소’의 의견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이 문건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2013. 12. 18.) 다음 날인 2013. 12. 19. 정다주 전 심의관이 임종현 전 기획실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으로, i) 청와대, ii) 여야 각 당, iii) 재계, iv) 노동계, v) 언론계, vi) 온라인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이 중 <청와대 반응> 중 ‘대내적’ 평가 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 “여야, 판결 존중하지만...온도차, 청, 말 아껴”(뉴데일리 보도 내용)
▶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①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
 - ②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
 - ③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은 보고서는, [69/391]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이 “청와대 입장”을 기재한 부분이라고 보고(조사보고서 148쪽),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018. 3. 20.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는 H4에서도 발견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 [391]’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건에는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재”라고 하였다(조사보고서 149쪽).

또한 이들 문서에 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관해서는 “임종헌 기초실장, 정다주 심의관의 대면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종헌 기초실장이 정다주 심의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와대의 동향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임종헌 기초실장은 당시 카운트파트너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짐작되나 2013년 12월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교체 시기로 전임자(이혜진) 및 후임자(김종필) 모두와 최근 전화통화를 해보았음에도 정확히 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들은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49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조사 대상이 된 사법농단 주요 의혹을 10가지로 추리면서 통상임금 전원 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을 하나의 주제로 삼았다(조사보고서 3쪽).

특조단은 문건 내용과 임종헌·정다주 진술을 종합하여, [391] 문건의 ‘청와대 (대내

적) 입장' 부분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에 판결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50쪽).

한편 [409] 문건에 대해서는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느 한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문건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다고 보임”이라고 한 다음 “다만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한다(조사보고서 150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이 사안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재판부나 재판연구관이 아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재판 진행 중, 개별 사건의 내용과 사회적 반응을 취합하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경제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본래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개별 재판의 내용은 물론 그 영향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며, 실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사건내용을 조사하거나 각 사회부문의 입장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예상·분석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정치권력(청와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였다.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였는가. 권력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재판거래’의 목적이 아니라면,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는 명백히 법원행정처의 권한 밖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설령 실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판결의 취지를 보고하였고 그 반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 : 홍경식)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정치권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민정수석에게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정수석실의 평가를 전해 듣는 것 자체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판결 내용에 관한 교감을 직·간접적으로 나누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권한 범위 내이거나 직무상 의무가 아닌 것은 물론, 정치권력과의 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소통이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특조단 조사보

8) 실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라는 문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노력한 사안으로 경제, 노동 관련 사건이 다수 제시되어 있으나, 통상임금 사건과 같이 판결 선고 전에 기조실에서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은 통진당, 원세훈, 전교조 사건 등과 같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거나 큰 관심을 가졌던 사건들이다.

고서가 언급하였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 충분한 부적절한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부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이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 정작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내용상으로도 기획조정실장이 판결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전해 받은 청와대는 해당 판결이 재계와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해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사전 교감의 존재와 재판거래를 통한 정치적 목적 추구를 추단할 수 있다. 청와대의 이러한 ‘관심표명’이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특정문제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하게 했다고 짐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조치가 단순히 판결 선고 후 취지 전달에 그쳤는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원에서 이렇게 음성적이고 변칙적인 정치권력과의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문건 5쪽을 보면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왔다”고 이야기하며 그 예로 통상임금 판결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같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와 ‘사전교감’, ‘조율’, ‘원만한 유대관계’의 내용이 비단 판결 결과의 사후 보고와 반응 청취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문건은 특조단이 암호파일을 열어보거나 검색어를 통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적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4개의 파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조사보고서에는 이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즉,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다고 했 으면서도, i) 구체적으로 이 문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인지, ii)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에 의하여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지, iii) 왜 이를 굳이 조사 대상으로 추가하였는지, iv) 작성 경위와 목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정황 설명이 없는 것이다.

특조단은 그저 문건이 각 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대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는 추정만 덧붙이고 있으나(조사보고서 150쪽),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 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특조단의 추론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문건이 작성된 무렵인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실시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실제 이 기간 대법원에 대한 현안질의는 실시되 지 않았다.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앞서 지적하였듯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보고서, 특히 그 중에서도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은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22.)은 물론 공개변론(2013. 9. 5.) 이전인 2013. 8. 22. 작성된 것으로, 다른 사건과는 달리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가 발견된 몇 건 중의 하나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판결 선고 전에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재판거래에 대한 강한 의심의 근거가 된다. 단순히 판결 결과를 유리하게 가공하여 정책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력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위해 재판 결과에 대한 사전적인 개입(조율)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연히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 경위(예컨대 정다주 심의관이 어떠한 자료를 보고 누구에게 문의하여 재판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사건 담당 재판연구원들과의 접촉 여부)와 보고서의 활용(작성된 보고서는 누구에게 보고 또는 열람되고, 보고받은 사람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조사대상자 확대

법원이 공개한 98개의 문건 중에서 청와대에 판결을 전달·보고했다는 기재는 딱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 통상임금 사건이고, 하나는 원세훈 사건이다. 이렇듯 청와대에 별도로 전달·보고할 만큼 깊이 교감하고 있었던 원세훈 사건에서는 법원이 청와대의 입장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재량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역시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원세훈 재판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이라는 문건이 담당 재판연구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재판장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장에게 전달되었는지, 반대로 문건의 작성 과정

에 대법원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문건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전달되지는 않았는지, 청와대 역시 어떠한 입장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 사건에 관여한 재판연구원, 보고서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⑨]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18. (수)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7
나. 특조단의 평가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10
가. 사건의 경위	10
나. 표적징계	12
다. 재판거래 의혹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4

1. 사안의 개요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2014년에는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¹⁾), 2015년에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²⁾).

이 판결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³⁾와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과거사 단체들은 물론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⁴⁾

- 1) “긴급조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유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도 없었고, 과거사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사실, 진실규명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대구 10월 사건 관련 희생거명자로 첨부 자료에만 기재돼 있을 뿐, 진실규명결정의 주문에 포함돼 있지 않고 나아가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달리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국가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3) 위헌인 법령에 기한 공무원의 영장주의 위반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위헌판정(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결정)을 받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사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2013다95896 판결에 반한다.
- 4) 윤진수,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민사법학 제91호(2017); 서동근 외 4,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전남대학교 인권법평론 제15호(2015); 이덕연,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헌법판례연구 17권(2016); 한상희,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민주법학 제59호(2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토론회 자료집(2015. 6. 22.) 등

이러한 비판은 시민사회나 학계뿐 아니라 하급심 판결로도 이어져, ① 2015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재판장 이옥형)이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⁵⁾을, ②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기영)⁶⁾과 2016년 광주지방법원(재판장 마은혁)⁷⁾에서는 긴급조치 발령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었다.⁸⁾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5. ~ 2010)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해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그런데 2013. 5. 1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⁹⁾ 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시효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상당한 기간’(6개월, 특수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10678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4225 판결

7) 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 판결

8) 2014,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전후하여 나온 하급심 판결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긴급조치 발령의 위법성과 수사의 위법성을 함께 인정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가합702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5440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단174452 판결 등 ;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2013가합5329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5352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3가합438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3가합5440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2014687·2014694(병합) 판결 등

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03253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77825 판결

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

이어서 2015년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도 하지 않고 직권 조사 개시 결정도 나지 않은 사건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이 또한 종래 대법원의 판결례¹⁰⁾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결 역시 과거사 피해자들이나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¹¹⁾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과거사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412]’, ②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③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등 크게 3개로 볼 수 있다.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412]

이 문건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법관에 대하여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이 있으며(직무감독 가부 및 범위에 대한 검토 포함),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

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재다841 판결

11) 홍관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대법원 판결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법조 제713호(2016); 김상훈,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법리”, 민사법연구 제44집(2014); 정구태·김어진, “국가에 의한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인문사회 21, 제7권 제6호(2017) 등

한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투명한 방법을 고안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되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의 하나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들면서,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한 김기영 전 부장판사와 이옥형 전 부장판사를 명시적으로 특정한다.

■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가 되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환형유치에 있어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정 하한보다 낮은 유치기간을 정한 사례 [남○○ 부장판사(○○기)]
-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 [김○○ 부장판사(○○기), 이○○ 前 부장판사(○○기)]
- 뇌물수수 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벌금형을 누락하여 국감에서 지적된 사례 [2014년 광주지법 국감]

■ 잘못된 재판결과는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 → 직무 감독을 행할 필요성 자체는 있음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이 문건에는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를 한 김기영 부장판사를 특정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고 나서, 징계를 포함하여, 회피 및 재배당, 법관 연수 강화, 선례 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한 판단

■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 또는 ‘준거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헌법 제11조 제1항과 103조 등을 근거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 선고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 존재**

● [원칙] 하급심 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따를 의무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② 법적 안정성의 요청, ③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닌 직업적 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급심 판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함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무감독권 발동’ 자체는 “판사들의 심각한 반발” 또는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과 야당에서 법원을 공격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하면서도, 회피 및 재배당(하급심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앞세우는 것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경우라고 함), 사건 신속 처리 트랙 개발(1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여 신속한 처리), 법관연수 강화(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김○○ 부장판사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선고 사례 등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관들 사이의 진지한 토론 유도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앞세워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사들에게 자신의 판결이 법관연수에서 강의 및 토론 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로 일정한 시그널(Signal)을 줄 수 있음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이 문건은 긴급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청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례로 크게 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② 미래지향적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들고 있는데, 이 중 ①과 관련된 사례로 ① 과거사 정립,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을 들고 있다.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과거사 정립”을 위한 사례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건」과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을 들면서,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한 것과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제한한 판결들과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한 판결들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p>☑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p> <p>▶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u>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u>,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u>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u></p> <p>☑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p> <p>▶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u>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u></p> <p>☑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p> <p>▶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p>
<p>☑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p> <p>▶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u>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u></p> <p>☑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p> <p>▶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u>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u></p>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은, 「조사대상 주요 의혹」 10가지 중 하나로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를 정한 다음,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412]’은 2015. 9. 19. 최 전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고,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은 2015. 9. 22. 김민수 심의관이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 ‘상고법원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은 2015. 7. 28. 시진국 전 심의관이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사보고서 151~153쪽).

이 중 특히 [80] 문건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정다주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지시로 작성, 보고한 문건인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 [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 [71]를 시진국에게 교부하여 포함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시진국이 임종헌에게 “긴급조치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의 설득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임종헌이 이를 수긍하였다고 한다(조사보고서 153쪽).

또한 특조단의 인적 조사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김기영 부장판사의 긴급조치 판결이 선고된 직후, 위 사례를 비롯하여 “잘못된 재판결과에 대하여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과 행사방안”을 검토하도록 윤리감사관실에 지시하였으나 최두호 심의관이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396] 문건과 [412] 문건을 2015. 9. 18.과 같은 달 19. 차례로 보고하자 보고를 중단시키고 기조실의 김민수 심의관으로 하여금 김기영 부장판사의 위 판결을 지목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조사보고서 154, 155쪽). 이에 김민수 심의관은 김기영 부장판사 사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후, 일반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는 소극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회피 및 재배당 제도 이용,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 법관 연수 강화, 한국형 선례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를 제안하였다(조사보고서 155쪽).

또한 윤리감사관실 및 사법정책연구원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윤리감사관실은 2016. 1. 13.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해외 연수 법관들에게 수사부와 과제로 각 국(또는 주)에서의 재판상 잘못(법정언행, 잘못된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권리 미보장, 재판의 지나친 지연, 악의적인 판단, 기타 명백한 법률적인 잘못 등, 가급적 다양한 범주)에 대한 직무감독(주의촉구 등) 및 징계청구의 사례, 그 근거 규정, 판단기준에 관

한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하여 줄 것과 각 국(또는 주)에서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주의촉구 등) 또는 징계청구가 부정된 사례나 근거 규정, 관련 논문 등도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 정지영 당시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연구원에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방법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연구과제로 추천하였으나 이는 2016. 2. 18. 개최된 제3회 연구과제 심의 위원회에서 2016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다(조사보고서 155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조치에 대하여, 임종현 차장이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에서 과거사 정립의 주요 판결로 인용한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이 그 선고 후 6개월도 되기 전에 김기영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 의하여 부정되자, 윤리감사관실의 최두호 심의관에게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그 방향이 소극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재차 기조실의 김민수 심의관에게 위법성, 징계 가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한 것은 “재판의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조사보고서 155쪽).

또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에 연수중인 판사들에게 법관 징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¹²⁾에 대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가 구체적

12) 경향신문 2018. 3. 22. 자 : “...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해 9월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헌 판단 등을 들었다.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2010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긴급조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들은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위헌은

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수준이었고, 해외 연수 법관들에 대한 수시과제 부과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의 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어서 특정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법관의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조사보고서 156쪽).¹³⁾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가. 사건의 경위

과거사 사건에 대한 부당한 판결과, 그에 대해 이견을 표명한 하급심 법관에 대한 징계 추진 시도 관련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사실관계
1	2015. 3. 26.	긴급조치 관련 문제의 대법원 판결 선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이나 대통령의 위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
2	2015. 7. 27.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 OO 판사가 ‘현안 관련 말씀자료’를 작성함. 사법부가 그동안의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례로서 위 2015. 3. 26. 판결을 언급함

맞지만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시민단체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거뒀다.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박정희 정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판사 등은 자신이 담당 사건에서 대법원과는 다른 결론으로 판결을 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등을 오히려 징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대법원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그냥 놔두면 앞으로 대법원 입장과 다른 판결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에 연수중인 판사들에게 법관 징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남용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문서로 확인했다 ... “

13) 특조단 조사보고서 156쪽 참조

순 번	일자	사실관계
3	2015. 7. 28.	임종헌이 시OO 행정청 심의관에게 위 '현안 관련 말씀자료' 문건을 교부하였고, 위 심의관은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BH 설득의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중 하나로 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4	2015. 8. 6.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오찬회동
5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OO 부장판사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6	2015. 9. 18.	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선고 이후, 임종헌 차장이 법관의 잘못된 재판결과에 대하여 직무감독(징계)을 행할 필요성 및 행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고, 윤리감사관실 최OO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검토계획' 문건을 작성함. 해당 문건에서 직무감독권 행사는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극적 방향으로 작성·보고됨
7	2015. 9. 19.	위 검토계획 문건을 초안으로 다시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최OO 심의관이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문건을 작성함. 위 검토계획 문건과 같이 소극적 방향으로 작성·보고됨
8	2015. 9. 22.	임종헌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의 김OO 심의관에게 이 사건 판결을 지목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이에 김OO 심의관은 이 사건 판결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후, 대응방안으로서 징계는 소극적으로 보고하고, 회피 및 재배당, 판례의 구속력 경각심 고취,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 등을 제시함
9	2016. 1. 13.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서 해외 연수 법관들에게 각국에서의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징계청구 사례와 근거 규정, 관련 논문 등의 수집을 수시부과 과제로 요청함. 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산하기관)에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방법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추천함

순 번	일자	사실관계
10	2016. 3. 31.	사법정책연구원 모OO 연구위원은 '재판상 과오에 대한 직무감독 권 행사와 한계'라는 20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뢰기관인 행정 처 윤리감사관실에 전달함

나. 표적징계

이 사안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며 국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추진한 것이다.

특히 계속된 '소극'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바꾸어 재차 검토를 지시하고, 심지어 '수시부과 과제'로서 해외 사례까지 수집을 지시하는 등으로 징계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 것은, 헌법상 법관의 재판상 독립(헌법 제103조)과 신분상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법관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법관의 징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사찰'에 가까운 징계의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다. 재판거래 의혹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 긴급조치 관련 문제의 대법원 판결 등을 BH에 적극 홍보하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오찬회동 과정에서도 상고법원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의 내용은, 2015. 8. 6. 자 「현안말씀자료」¹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왜곡을 광정하고 과거사를 정립한다”는 명분하에, ①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은 부당하게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요건을 정립한다는 이유로, ②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은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이유로, 각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내세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과거사 판결이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 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온 것으로 자의적으로 진단하고,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과거사 판결들을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중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써 제시했다(2015. 7. 28. 자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추진하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의 과거사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재판결과를 상고법원 입법추진과 관련한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BH에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 사건이 모두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해당 사건의 실질적 피고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소송 당사자 일방과 ‘판결 거래’를 했던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은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함으

14) 2018. 5. 25. 공개된 특조단의 「조사보고서(별지)」의 [별지3]으로 공개된 것으로, 2015. 8. 6.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오찬회동을 앞두고 작성된 것이다.

로써 스스로 긴급조치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현안관련말씀자료”에 언급된 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무리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판례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법리와 다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비판받아 왔던 것들이다.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일관된 기획과 업무 추진 등은 재판거래를 위해 이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그 결론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보인다.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과거사 사건 판결을 둘러싼 표적징계와 재판거래 의혹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 볼 수 있다.

2015. 8. 6.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한 달 만에 위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자, 상고법원 추진에 혹여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여, 그 직후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하급심 판결 재판부의 부장판사에 대한 일련의 징계권 행사의 검토를 지시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5. 9. 18. 및 9. 19.경 두 차례에 걸쳐 징계에 소극적인 검토 의견이 보고되자, 다른 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재차 징계 가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거나, 심지어 해외 연수 법관에게조차 관련 징계 사례와 자료 등에 대한 수집까지 지시하는 등 특정 판사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권 행사에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직권남용죄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긍정의견과 부정의견을 병

렬적으로 나열하면서 명확한 판단을 회피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관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과거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충분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법관들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 목적물로 삼고서 해당 재판의 진행경과,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 및 담당 대법관의 심증, 선고시점과 같은 절차적 사항 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 누설한 행위로서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부와 독립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판결을 하고,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함의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결들은 대통령(정부)과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상식과 법리를 벗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이는 형식상 대법관의 재판일 뿐 그 실질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내린 부당한 판결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법부 수장에 의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된 사건으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세력을 일소하고, 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임을 다시금 일깨워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⑩]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2018. 7. 19.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1
나. SR 법인 설립	2
다.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사건	3
나.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6
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7
1) SR 법인 설립조사 인가결정	7
2) 2009 철도노조 파업	8
3)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8
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 9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10
가. 조사내용의 기재	10
나. 특조단의 평가	11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12
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의 졸속 설립	12
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철도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2
다. 철도민영화에 발맞춘 KTX 승무원 판결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5
가. '참고자료' 판단의 문제점	15
나. 문건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15
다. 재판관계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16
[보론] KTX 승무원 판결에 대한 2018. 6. 20. 자 대법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1. 사안의 개요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사건 중 ‘철도공사’와 관련된 판결은, ①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이하 ‘SR’) 법인 설립등기 사건, ②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사건, ③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판결들이다. 이들 사건은 각기 다른 시기에 선고되었고, 그 쟁점도 각기 다르지만,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¹⁾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대법원이 각종 문건들을 생산하며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시기²⁾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추진했던 시기와의도 맞물려있다.

시기	경과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2012. 8.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임명
2012. 12. 20.	121220 최종보고서 버전 2 (사법제도TF)+5(박근혜 당선자) [비공개 문건]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2013. 12. 9.	철도노조 - 수서발 고속전철 자회사 설립 반대 파업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주) SR 발기설립조사 인가 결정(2013비합55) 국토교통부 - 면허 발급
2014. 8. 20.	철도노조 2009년 파업 대법원 판결
2014. 12.	상고법원 입법 발의
2015. 2. 26.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 판결

- 1) 2013. 6. 26. 발표 - 2013~ 2017년에 걸쳐 공공기관인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구조로 재편하고, 여객자회사, 화물자회사, 정비 및 시설 등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인력을 간접고용하는 것.
- 2) 임종헌이 법원행정처 기초실장으로 임명된 2012. 8. 이후 대법원은 사법제도 TF를 운영해왔다(비공개된 문건 중 (121220)최종보고서 버전2(사법제도TF)+5(박근혜 당선자) 등).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 410건 중 가장 과거 시점에 작성된 문건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31219)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 등). 즉 대법원은 2013년부터 통상임금 판결 선고 직후 ‘민정라인’을 통하여 직접 판결 취지를 전달하고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고려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BH와 재판 내용에 관한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흐름은 2014. 12. 법안 발의를 거쳐 2015년 상고법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기로 이어진다.

나. SR 법인 설립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임기 막바지에 발표되었으나, 총선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여론을 의식하여 전면화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그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정부는 2013. 6. 26. ‘철도산업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설립’을 발표하였지만, “철도 분할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였고, 여러 법률적 문제³⁾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철도노조는 2013. 12. 9.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사회적 논의 및 충분한 검토의 선행과 이를 위한 면허발급 보류 등을 요구하였고, 당초 언론보도⁴⁾에 따르면, 법원의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등기는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렵고 해를 넘겨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일반적인 사업인가와 달리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크고 광범위한 사안 ... 1천 쪽이 넘는 설립비용 관련 서류들을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법원관계자의 전언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파업이 길어지고 청와대가 강경대응 기조를 본격화하였고,⁵⁾ 그로부터 사흘

-
- 3) i) 2003년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였고 민간위탁규정을 모두 삭제하였고(철도공사 법무처조차도 수서발 KTX 분리설립은 ‘위 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ii) 국토교통부가 면허발급의 근거로 삼은 철도사업법 제5조는 국유철도 노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민자철도’ 등에 한 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SR 면허발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iii) 2004년 KTX 1단계와 2011년 KTX 2단계는 1년 이상 철저한 검사와 시험운행을 거치고 시설물이 완공된 후 면허발급이 되었던 것에 반해, 수서 KTX의 경우 전체 인력이 20명에 불과하고 전체 운영자금 800억 원 중 코레일이 우선 출자한 50억 원 뿐인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면허발급
- 4)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해 넘길 듯 (2013. 12. 27. SBS 뉴스),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내년이나 가능할 듯 (2013. 12. 27. 13:46 아시아경제)
- 5) 2013. 12. 22. 경찰 병력이 파업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을 부수고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013. 12. 24.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각 부처 장관들이 철도 파업 문제를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자, ‘철도 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관련 부처별 대응실태 등을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朴대통령 “철도파업이 남의 일인가” 장관들 질책 (2013. 12. 26.자 언론보도), 鄭총리 “‘철도파업’ 정부대책 TF 즉시 구성” 지시(2013. 12. 24.자 언론보도)

후인 2013. 12. 27. 금요일 밤 8시 40분경 대전지방법원이 전격적으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의 법인 설립등기를 인가하였다. 20분 후인 9시, 국토교통부는 바로 면허발급을 완료하였고,⁶⁾ 10시경 대국민 브리핑을 하였다.⁷⁾

이러한 기습적인 면허발급을 통한 상황 종식은, 수서발 KTX 자회사의 분리설립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노사 간 교섭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종교계 등에 의한 중재는 물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결국 2013. 12. 30. 철도노조 파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

다.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사건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사이에 2008년부터 1년 반에 걸쳐 단체협약 갱신 및 2009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계속 결렬되고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자, 2009. 11. 26.~12. 3.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간부 226명을 형사고발하였고, 전국 22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평화적인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지도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2심에서 이러한 종전 판례의 입장에 따라 2010. 7.과 2010. 12. 위 파업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⁸⁾.

그런데 2011. 3.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단순파업 업무방해죄에 관한 종전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즉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집단적 노무

6) 정부,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한밤중 ‘기습’ 처리 (2013. 12. 27. CBS 노컷뉴스 기사)

7) “면허발급 해 넘길 것” 예상 깨고 경쟁체제 도입 ‘못박기’(2013. 12. 28. 동아일보 기사)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례 변경에 따라 2012~2013년 사이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⁹⁾이 잇따랐고,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지도부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아졌고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 8. 이러한 하급심 판결을 배척하며 예측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¹⁰⁾ 그로 인해 약 226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1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10여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조계나 학계로부터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본적인 논리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¹¹⁾

라.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은 승무 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강행하고, 2003. 12. 31. ‘흥익회¹²⁾’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파견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의식하여 2년마다 외주 위탁업체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KTX 승무원들은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에

9) 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 2729(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대전지방법본부 간부 22명 무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1. 29. 선고 2010고단285 판결(영주지방법본부 간부 9명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노1074 판결(부산지방법본부 간부 10명 무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2. 14. 선고 2010고단170, 2010고단335(병합) 판결(영주지방법본부 간부 10명 무죄), 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대전지방법본부 간부 1명 무죄)

10) 형식적으로 두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 판결이지만, 2011도468 판결[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안전운행 투쟁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2012도14654 판결[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의 무죄판결을 대부분(안전운행 투쟁 제외) 파기한 것이다.

11) 신수정, “파업과 업무방해죄 : 2009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4년 10월호 ; 장승혁,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요건으로서의 전격성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노동법연구 제38호(2015), 도재형, “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파업은 범죄인가”, 대한변협신문 (2014. 10. 13.) ; 심상정 의원실 등,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2014. 9. 2.)

12) 철도청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주요 임원이 철도청 간부로 구성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 소속이 '홍익회'에서 2004. 12. '철도유통', 2006. 또다시 'KTX관광레저'로 변경될 것을 요구받았다. 승무원들이 2006. 3. 1.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공사는 철도유통을 통해 이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 전원을 해고하였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두 건(1차 소송, 2차 소송),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임금지급 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인 홍익회나 철도유통(이하 '철도유통 등') 소속이었지만,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등 정규직과 함께 같은 열차에서 근무하며 철도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거나 근로자 파견관계(열차승무 업무는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실제 사용자는 '철도공사'라고 주장하였다. 일련의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자회사인 철도유통 등의 법인격을 이용하였고,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¹³⁾. 근로자지위확인 사건(민사 본안)의 하급심 1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1, 2차 소송의 1심 법원은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승무원들과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판결을 하였다.¹⁴⁾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차 소송의 2심 법원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으나,¹⁵⁾ 2차 소송의 2심 법원은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패소판결을 하였고,¹⁶⁾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3) ①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② 2007년 12월 20일 당시 KTX 승무지부 지부장에 대한 파업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912 판결), ③ 2008년 4월 8일 철도공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항고(서울고등법원 2006라1737 결정), ④ 2008년 8월 22일 철도공사가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6256 판결), ⑤ 2008년 10월 1일 34명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449 결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09가합4607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1나7897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15. 2. 26. 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서 위장도급(주위적 주장), ② 불법과건(예비적 주장)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패소판결(1차 소송 원심 판결 및 2차 소송 원심 확정)을 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주심 고영한 대법관).

같은 날 내려진 다른 불법과건 사건 2건(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¹⁷⁾, 남해화학 사건¹⁸⁾)에서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 불법과건이 인정된 것과 대조적이었고, 소송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¹⁹⁾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되는 등 그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철도 노조 또는 철도 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150728)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1507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²⁰⁾, ‘(151119)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82]’ 등 모두 3건인데, 문건 [71]은 2015. 7. 28. 작성된 ‘설득방안 [80]’ 문건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오찬회동을 앞두고 작성된 2015. 8. 6. 자 「현안말씀자료」에도 포함되었다.

17)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주심 고영한 대법관]

1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주심 고영한 대법관]

19) 양승광,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닌가”, 노동법연구 제39호(2015. 9.) ; 박제성, “KTX 승무원 사내하청 : 사실과 논리에서 의견과 신념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3년 2월호 (2012. 10.) ; 김홍영·양현, “KTX 승무원 업무는 도급이 가능한 업무인가”,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2013. 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2017. 9. 18.)

20) 특조단 조사보고서 153쪽에 따르면 “임종헌 기조실장은 정다주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지시로 작성, 보고한 문건인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71]를 시진국 심의관에게 교부하였고, 시진국 심의관은 이를 [80]문건의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1) SR 법인 설립조사 인가결정

2015. 7. 28. 시진국 전 심의관이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위 문서에는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제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하면서 ① 과거사정립,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③ 국가경제 최우선 고려, ④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⑤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을 언급하였는데, 이 중 ‘국가경제’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등기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조한 재판’의 대표적 사례로 2013년 주) SR 법인 설립 시 조사인가 결정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 12. 27. 자 2013비합55 결정)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설립등기를 허가”함으로써 법원이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로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2)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위 문건은 또한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이라고 하면서, 사법부가 그동안 “노동 부문 선진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2009년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노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편, 특조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비공개 문건목록에는 ‘(140831)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이라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시점은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유죄판결(2014. 8. 20. 과 8. 26.) 직후로서, 그 내용과 관련성 역시 철저히 조사될 필요가 있다.

3)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위 문건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 부문’이라고 한 다음, 법원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KTX 승무원 사건」을 언급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 KTX 승무원 사건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한다고 한다.

■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그리고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조사례’에 ‘KTX 승무원’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²¹⁾

21) 협력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별첨자료 3]은 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철도공사·노조 사건을 진실 규명 대상으로 구별하여 검토하지는 않고,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의 일부 내용(나. 기타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조사보고서 166쪽 이하)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중 [80] 문건에 대해서, “시진국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고, “임종현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조사보고서 171쪽).

또한 [82] 문건과 관련해서는, 임종현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로 예상되고 청와대,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양지인 청와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3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80] 문건 중 박지원·원세훈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조사보고서 172쪽), 임종현 기조실장과 정다주 심의관의 진술과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문건은 임종현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쪽).

한편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현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현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앞서 본 것처럼 철도공사·노조 관련 사건들은 모두 당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지극히 이례적이고 상식에 반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인바, 위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문건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력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의 졸속 설립

수서고속철도 법인 설립 당시 상황을 보면, ① 대전지방법원이 2013. 12. 27. 오후 법인 발기설립 조사인가 결정을 하고, ②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설립등기를 완료하자마자, ③ 불과 20분만인 오후 9시경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 이어 오후 10시경 브리핑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매우 이례적으로 법원과 국토교통부의 통상적 일과시간이 끝난 9시에, 그것도 2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의혹을 샀다.

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철도과업 업무방해죄 처벌

2009년 철도과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대법원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대비할 수 있었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를 동원한 판결이다.

이 사건 하급심의 인정사실만 보더라도, 사용자가 사전에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이미 파업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여러 자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예측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당시 파업에 관한 여러 하급심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전격성 유무’라는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이 사건 파업과 같이 단체교섭이 진행된 결과 의견 불일치가 있어 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조정 및 찬반투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적인 쟁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전격성 유무 - 객관적인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과거의 판단기준(파업 목적의 불법성)이나 ○ 국가경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이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음)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벌성이 없다고 본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파업’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례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이 없이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파업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킨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자, 사법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2014. 8. 20. 판결 선고 직후 배포된 대법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철도 등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된 문건에서 내세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다. 철도 민영화에 발맞춘 KTX 승무원 판결

공개된 위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이라고 표현하였다. 왜 간접고용이나 외주화가 아니라 ‘민영화’일까? 이는 대법원이 위 사건을 단순히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12. 12. 19.)의 맥락 하에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공사가 지주회사로서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운송사업만 담당하고, 그 외의 물류, 차량정비, 시설부문 등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철도공사의 구조개편을 담은 것으로 일종의 철도 분할 민영화의 준비단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 중인 2014년~2017년에 걸쳐 물류·차량정비·시설 분야 역시도 KTX 승무원들과 같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만일 KTX 승무원 업무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 파견 관계(철도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수행되고 분리하여 도급 위탁될 수 없는 업무)로 결론이 내려지면, 청와대가 중점사업으로 진행해온 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지속적인 추진 역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KTX 승무원에 관한 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라는 법률적 쟁점만을 놓고 내려진 것이라기보다는,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부분 개혁(특히 노동부문 개혁)’ 내지는 ‘공공부문 민영화(철도산업발전방안을 통한 분할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의중에 맞추어 내린 판결이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특조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참고자료’ 판단의 문제점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위 [80] 문건을 “임종헌 기초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과소평가하였으나, 같은 내용이 다른 시기 다른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판결이 선고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종헌 전 차장이 지속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였다는 것인바,²²⁾ 이들 사건의 선고를 전후하여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문건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82] 문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왜 직접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22) JTBC 2018. 7. 19. 자 “임종헌 행정처 전 차장, 청와대 출입... 짚어지는 ‘유착’ 의혹” 등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갔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활용하겠다는 기조 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여러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획·예비 단계에만 거친 것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의 구체적 작성 경위와 실제 활용의 모습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다. 재판관계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특조단은 [82] 문건을 분석하면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고 하여, 실제 영향력 행사(=조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 스스로 시인하였듯이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각 재판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KTX 승무원 사건의 주심은 ‘판사 사찰 및 통제 의혹’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사퇴한 고영한 대법관(2016년 2월 ~ 2017년 5월, 제22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같은 날(2015. 2. 26.) 동일한 쟁점에 관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과 남해화학 사건에서는 기존 판례 법리에 따라 불법과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파건의 요소가 강한 KTX 승무원 사건에서 파건을 부인한 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개입 및 위법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설립조사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문건에서 “설립 등기를 허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권한을 과장하여) 협력 사례로 거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연내 철도과업을 끝내고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설립등기와 면허발급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청와대 비서실 등이 사전에 비공식적 물밑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양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사전 연락이나 교감이 있었는지 엄정한 진상규명과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범인 설립등기의 진행경과나 이후 방향을 보고받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하였다면, 담당 법관들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보론] KTX 승무원 판결에 대한 2018. 6. 20.자 대법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KTX 승무원 판결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취지는 당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도급과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으며(같은 날 선고된 현대자동차 사건 및 남해화학 사건), KTX 승무원 판결 역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였으나 다만 본 사안에서는 도급의 요소가 우세하다고 판단된 것일 뿐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이미 개시된 상황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대법관들이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의 방식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법관 보도자료는 재판 거래 의혹을 해소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사안에서 의문이 제기된 대상은 위와 같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판결 등을 통해 정립한 도급과 파견의 구분법리 그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법리’의 적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판결이나 남해화학 판결과 같이 불법파견 관계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KTX 승무원의 경우 왜 결론이 다르게 내려진 것인가, 즉 ‘사실관계 포섭’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법원 보도자료의 내용은 ‘법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그쳤을 뿐, 정작 문제가 제기된 ‘사실관계 포섭’의 적절성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다른 두 사건과는 달리) ‘KTX 승무원의 경우 도급의 요소가 우세하다고 판단된 것’이라는 종전 결론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인 현 상황에서, 대법관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해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상규명과 수사협조, 그를 통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⑪]

**쌍용자동차 · 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24.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1
나. 콜텍 정리해고 사건	3
다.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사건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5
가.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6
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71],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7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7
나. 특조단의 평가	8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9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0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10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미흡	11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11

1. 사안의 개요

쌍용자동차 경영상 해고, 콜텍 경영상 해고, 발레오만도지회 조직변경 사건은 대법원 재판 진행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이다. 위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2심까지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통상적인 법리에 따른 2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여 결국 그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180도 바뀐 사건들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8개월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거나(쌍용차), 감정인의 감정취지와 다른 판결을 하는 등(콜텍)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한 2심의 엄밀한 사실적·법적 판단을 바꾸거나 조직변경에 대해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를 가져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화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2004~5년 상하이차가 인수할 당시부터 먹튀 논란이 있었던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는 2009. 1.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2009. 3. 31. 무려 2,646명(전직원의 37%, 생산직의 45.5%)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2009. 6. 8. 희망퇴직하지 않고 남은 980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이후 추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영상 해고된 인원은 165명)를 실시했다. 이 중 156명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¹⁾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약 2년간 심도 깊은 심리 끝에 2014. 2. 7. 경영상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²⁾

그런데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주심 박보영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22574 판결, 사무직 5명이 평택지원에 제기한 2009가합3533판결도 있음

2)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판결

대법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6869, 56876(병합) 판결), 다시 상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9. 28. 2016다29944·29951 판결, 주심 김소영 대법관).

당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실제와 다른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판단하였으며,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밝혀진 회계장부 조작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³⁾

한편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5. 12. 30. 쌍용차, 쌍용차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해고자들에 대한 단계적 복직 합의를 하였고 이후 다수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상 해고 및 그 이후의

3)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동성 위기 판단 -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담보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은행의 대출 거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 및 기업어음발행, 자산매각 후 리스 등 민간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피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너무나 간단히 쌍용차의 유동성위기를 인정했고 이를 완화할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재무건전성 위기 관련 -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되지 않았고 재무건전성 위기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신차 개발이 거의 완료된 C200(코란도C)의 경우 반드시 매출 수량이 추정되어야 하며, 안전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차종의 경우 모두 공헌이익이 (+)였으므로 계속 생산되어 판매하면 미래현금흐름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이 561%에서 187%로 떨어지게 되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 전반기까지 계속 (+)의 영업현금흐름을 유지하였으므로 영업만으로도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만연히 쌍용차의 재무건전성 위기를 인정한 것이다, ③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성격 관련 -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는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쌍용차는 2008년 이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고, 신차종 개발도 예정되어 있었다. 2008년 들어서 국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 유럽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가 있었던 2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금융위기, 유럽환경 규제, 경유가격 인상)들도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었다. ④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 관련 - 인력 구조조정 규모도 모달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레이아웃을 검증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쟁송과정에서 쌍용차는 그 주장을 스스로 변경하여 교대조 감축(2교대⇒1교대)이 인력구조조정 규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⑤ 해고회피노력 관련 - 대법원은 부분휴업, 임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경영상 해고 이후인 2009. 8. 6.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 당시인 2009. 6. 8.을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노력이 우선적이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지난한 복직 투쟁 과정에서 최근 30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나. 콜텍 정리해고 사건

2006. 4. 2.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설립되자, 주식회사 콜텍(이하 '콜텍'이라 함)은 2007. 1. 조합원 4명을 강제 전환배치 명령하고, 같은 달 22. 조합원 2명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회사는 같은 해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이인근 등 간부 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40명에 대하여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다가, 2006. 4. 9. 휴업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7. 10. 조합원들을 전원 경영상 해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콜텍은, 매출액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11억원에서 690억원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같은 기간 손익 또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66억원 이상의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불능력과 자금조달이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이었는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

이에 콜텍지회 조합원 39명은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2008가합10205)(제1사건), 먼저 해고된 4명은 2008. 8. 15. 같은 기간 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008가합23355)(제2사건).

두 사건은 모두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39600 판결, 2009나47090 판결). 이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등법원의 콜트약기, 콜텍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하였고(2010. 10. 4.), 2년이 넘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2010다3735 판결 - 주심 이상훈 대법관).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2014. 1. 10. 상고취지에 따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21609 판결, 2010다3629 판결), 재상고 되었으나 같은 해 6. 1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843 판결, 12850 판결).

당시 2년을 미루다가 “심리가 미진하다”⁴⁾며 상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비판이 많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콜텍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 영업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이 없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3. 8. 16. 자 ‘주식회사 콜텍 및 대전공장 경영상황 감정보고서’⁵⁾), “정리하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파기환송심⁶⁾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재상고심(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사건

2010년 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해 회사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주를 받은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 현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의 모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회를 개최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가결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가합124798 판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

4) 대법원은 콜텍의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냈다고 전제한 후,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이 무엇인지, 위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위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콜텍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가 대전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이 피고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피고가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조치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5) 감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전공장을 콜텍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부문 또는 조직으로 간주할 수 없고, 둘째, 대전공장의 손실금액은 콜텍 전체의 자산규모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3.4%에 불과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의 영업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콜텍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 영업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6) 관여법관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지회 차원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상고 4년 만인 2016. 2. 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 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 의견 8인7, 소수 의견 5인8).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1. 30. 파기 취지 그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 대법원에 재상고 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 3. 9. 자 2016다56694 판결).

그동안의 판결레나 하급심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와 학계로부터 ① 민법상 비법인 사단론을 “이상하게” 끌어들이는 정체 불명의 판결, ② 독자적 단체협약 능력이 없는 근로자단체가 조직형태 변경을 거치면 독자적 협약 능력이 생긴다는 기이한 논리, ③ 조직형태 변경으로 산별노조에 편입한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특별히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9)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 강기봉 등은 노동조합 총회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이유로 고소된 후 재정신청 인용결정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법정 구속은 안됨)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306·848(병합) 판결 -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총회에 개입한 노무법인 창조건설팅도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사건). 이러한 사용자와 창조건설팅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의 패소 확정 등으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력 복원은 매우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7) 대법관 양승태, 김용덕, 박보영, 고영환,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김용덕, 이기택은 보충 의견 제시)

8)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보충 의견 제시), 김소영, 박상욱

9) 박중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안암법학 50권(2016); 이승욱, “조직형태변경과 산별노조의 하부조직”, 노동법연구 제42호(2017); 신수정,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노동법학 제57호(2016)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쌍용자동차·콜텍 정리해고 사건과 발레오만도 지회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것은 '(150727)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150728)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1507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71]¹⁰⁾, '(151119)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82]' 등 모두 4건이다.

가.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27. 작성된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아래 ㉓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㉔노동, ㉕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부문'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정리해고 사건」을 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이라고 하면서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언급한다.

이 문건 내용은 다음 날(2015. 7. 28.)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80] 문건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71],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10) 특조단 조사보고서 153쪽에 따르면 “임중헌 기조실장은 정다주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지시로 작성, 보고한 문건인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71]를 시진국 심의관에게 교부하였고, 시진국 심의관은 이를 [80]문건의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 정리해고 사건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2015. 7. 31.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과,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위 [70], [80] 문건에 기재된 사건들 외에 몇몇 사건을 추가하여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를 내세우고 있는데, 「4대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목차에 노동 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발레오만도 사건을 언급한다.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사건 ⇨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

☑ 대법원 2012다96120 사건

▶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금속노조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15. 5. 28. 공개변론 실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쌍용자동차·콜텍·발레오만도 사건을 독립된 진실 규명 대상으로 구별하여 검토하지는 않고,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의 일부 내용(나. 기타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조사보고서 166쪽 이하)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중 [80] 문건에 대해서, “시진국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고, “임종헌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조사보고서 171쪽).

또한 [82] 문건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가 예상되고 청와대,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양지인 청와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3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80] 문건 중 박지원·원세훈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조사보고서 172쪽), 임종헌 기조실장과 정다주 심의관의 진술과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문건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쪽).

한편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특조단 3차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임종헌 차장과 정다주, 시진국 심의관 등이 해당 노동사건 판결이 청와대 의도에 부합하도록 청와대와 적극 교감하였고, 대법원이 특정 의도(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BH의 의도에 부합함으로써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는 의도)하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82]” 문건을 보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다고 스스로 적었다.(3차

보고서 173쪽). 그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법원행정처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거시하면서, “직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은 기존에 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구체적 재판 사건에 대해 협조해왔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특히 발레오만도 지회 사건의 경우, 위 문건들이 모두 실제 발레오만도 지회 사건의 공개변론(2015. 5. 28.)을 실시한 다음, 판결이 선고(2016. 2. 19.)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된다고 하면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단순히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래 판결이 선고될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재판 거래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BH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재판의 결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앞선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하였듯이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협조사례’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문건 작성 지시자, 작성자, 보고 및 실행자, 그리고 재판 관여 법관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앞서 철도노조 사건 이슈페이퍼에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위 [80] 문건을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지나친 과소평가이다. 같은 내용이 다른 시기 다른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 [70]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미흡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할 뿐, 보고서와 문건을 통해 드러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문서 작성 경위, 지시 및 보고 범위, 구체적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82] 문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왜 직접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갔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활용하겠다는 기조 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여러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획·예비 단계에만 거친 것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마친 것이다.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특조단 스스로 시인하였듯이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

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각 재판의 관계자들에게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이들 세 가지 노동사건은 공통적으로, 통상적 법리에 따른 2심판결이 파기되고 재판 결론이 180도 바뀐 사건들이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8개월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거나(쌍용차), 감정인의 감정취지와 다른 판결을 하는 등(콜텍)의 절차적으로도 많은 의구심을 남긴 사건들이다. 무엇보다 사실심의 엄밀한 사실적·법적 판단을 바꾸거나 조직변경에 대해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를 가져와 노조의 단결권을 형해화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발레오만도 지회 사건은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협력사례’로 언급함으로써 노골적인 재판거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커, 이후 1,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이라는 재판 결론에의 영향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⑫]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25. (수)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3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5
가. 조사내용의 기재	5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6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8

1. 사안의 개요

2010. 11. 17.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학생회 연합단체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주도하여(이후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음),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및 전국의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24개의 국립대학교 재학생 2만여 명이 원고가 되어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져 있었고, 국립대학 학생이 납부하고 있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학년부터 2007학년도까지는 80% 내외였고, 2010학년도에는 84.6%에 이르렀다.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 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업료와 더불어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었고, 각 대학들은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에서 정하였다. 각 대학 기성회 규약들은 ‘재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성인인 대학생들에게 보호자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들과 학부모 중 기성회와 기성회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대학 등록을 위해 기성회장 명의로 부과된 기성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대학들은 수업료보다 기성회비 인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고, 기성회비를 관리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와 달리 감사를 받지 않아 대학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고,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현재 고등교육법에서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와 관련한 별도규정은 없었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

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도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특히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2심 법원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라는 제3의 단체를 만들어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명확히 하며 원고들에게 각 대학 기성회들이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1177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2나19910 판결).

그러나 2015. 6. 25.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판결).

다수의견은 국립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편의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대법관 박보영, 고영한,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을 묵살하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 2심의 일치된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관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상옥,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김창석).

대법원의 위 판결은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하급심 법원과 원고들,

나아가 등록금 경감을 기대했던 전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대다수 법조인들은 굳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과기환송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¹⁾ 특히 위 판결은 1, 2심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전혀 다르게 판단한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성회를 통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음으로써 학교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왔다는 사정)을 알면서 국립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사로 기성회비의 납부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국립대학에서의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실체에 부합한다”라고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 자체를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로 인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록금 경감이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채, 학생들 등록금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이득을 본 정부와 대학은 대학회계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기성회비 사건과 관련된 것은 ‘(151119)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82]’이다.

이 문건은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번복시킬 수 있는 ‘실효적 압박카드’의 내용으로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압박에 앞서 우선 상세히 설명해야 할 ‘협조 사례’의 하나로 기성회비 사건을 들고 있다.²⁾

1) 이광윤,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 행정판례연구 21-2 (2016); 하주희,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판결에 대한 평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106호(2015) 등
2) 이 문건에서 말하는 ‘압박’의 순서는 대략 ①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BH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 다음, ② 사법부

i)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ii)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iii)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ㄴ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같은 문건의 [별첨 자료 3 :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는 이러한 ‘협력 사례’를 사건별로 다시 모아둔 것인데, 이 중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제목 아래 통상임금·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사건·철도공사 사건 등과 함께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고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이 10조 원이 넘는 기성회비 반환으로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③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고, ④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 관련 민정수석이 취해 온 그간의 반대 행보, 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절로 사법부 및 국민 전체가 입게 될 피해와 충격 그리고 향후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계속 호소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부운영에 사법부가 협력한 사례라는 것이다.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

-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고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국공립대학이 10조 원이 넘는 기성회비 반환으로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 모면케 함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 ▶ 국공립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해 온 기성회비는 교육 서비스와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징수라고 판시하며, 기성회비 반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 173쪽은 위 [82] 문건에 대하여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과 계기로는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하는 안, 대통령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압박카드로는 ‘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여기에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 위 「압박카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서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기재하고 있다.

나. 특조단의 평가

앞서 다른 이슈페이퍼에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현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현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위 문건은 임종현 전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문언상으로도 “협조해 온 사례”임을 분명히 기재하고 ‘사전에’ 조율과 협조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합리적 근거 없이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법부의 ‘협조’였다는 것으로, 최고 법원이 스스로 ‘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임”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니(위 조사보고서 177쪽 참조) 그 심각성은 단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과 등록금을 부담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열망과 교육에서의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향소심 판결 선고 후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립대학교에 대학회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재정적 문제와 관련한 보장을 이미 마련하였고, 그러면서도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학 기성회 직원들의 급여도 이미 삭감한 상태였다(기성회비로 인한 급여보조성 경비가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인 직원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이다).

결국 직원과 학생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는 아무런 손해 없이 과거의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면제되고 거둬낼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조차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BH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판단 한 것이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특조단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언급된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BH에 협조해 왔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원심의 결론을 파기한 것이라 대법원장의 사건에 대한 개입의 직접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⑬]

전교조 사국선언 · 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26.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
나. 고 김형근 교사 사건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5
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	6
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8
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입법 추진 전략 [82] ..	8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9
가. 조사내용의 기재	9
나. 특조단의 평가	10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11
가. 비판적인 표현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11
나. ‘빨갱이’ 몰이에 협력한 고 김형근 교사 사건	13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4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14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14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15

1. 사안의 개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사건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관련된 판결은, 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②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으로 명명된 고(故) 김형근 교사 사건, ③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이다. 이 중 ③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진행 중 대법원의 결정 방향 및 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다수의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재판거래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범외노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8. 7. 9. 발표된 민변 사법농단 이슈페이퍼(6) 참조).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다소 빗겨져 있으나, 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② 김형근 교사 사건 역시 재판거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사건들이다.

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 17,000여명은 「교사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이하 '1차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인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시국선언 직후 곧바로 참여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제차 발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절차가 진행되어, 해임이 17명, 정직이 49명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¹⁾

전국의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²⁾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³⁾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8인, 소수의견 5인.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 현재는 84조의2로 조문 이동).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 2)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 2009고정2259, 2009고단4126(병합) 판결 - 피고인들이 참가한 시국선언이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낡은 경험에 근거한 편견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육행정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단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도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시국선언문에서 당시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이념, 제도, 역사적 사실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행위 과정에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보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이상 곧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가 된다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 다수의견(양승태,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⁴⁾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 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그러한 1차 시국선언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⁵⁾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데 대하여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⁶⁾ 이후 다른 형사사건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해임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4)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2차 시국선언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5)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하여 왔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의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소수의견(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은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범위 하에서 1, 2차 시국선언은 “유사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명한 교사 명단을 취합하여 발표한 것만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도 아니라며,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2차 시국선언 관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이종수,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헌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4) ; 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형사정책 제24권 제2호(2012) ; 문현웅,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제100호(2012) 등

나. 고 김형근 교사 사건⁷⁾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 도덕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고(故) 김형근(이하 ‘김 교사’)은 2015. 5.경 관촌중 내 통일산악회 회원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였다. 관촌중학교는 2005년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는 등 통일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김 교사는 그러한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산행 전 일정으로 전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산악회의 산행 일정으로 추모제 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1년도 훨씬 지난 2006. 12. 6.경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 없이 섬멸하자”와 같은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였다는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

한때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김 교사는 기사 이후 한순간에 ‘빨갱이 교사’로 몰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수사기관은 그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김 교사는 전야제에서 중학생들을 포함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고 자신도 이에 호응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8년 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으로 나온 김 교사의 수업자료 등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혐의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7)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⁸⁾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⁹⁾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 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¹⁰⁾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2015. 7. 27. 작성·보고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 전주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고단21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노224 판결.

9)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341 판결.

10) 한편, 1, 2심 법원에서는 김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북한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취득·소지·반포에 관하여 이적목적성을 부인한 표현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적목적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82]' 등이다. 이 문건들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김형근 교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¹¹⁾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① 과거사 정립,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④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⑤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을 모아놓고 있다.

1.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1]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2]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이 중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하여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를 위해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여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을 한 사례로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하였다.

11) 2018. 5. 25. 발표된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서는 문건명을 ‘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기재하고 있으나, 보고서 인용 파일 추가 공개 시의 파일명은 ‘과거왜곡의 광정’이다.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

한편 ⑤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을 적시하였다.

■ **6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도 [70] 문건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설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문건이다.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협력 관계 노정의 과거와 미래상 제시”를 언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을 대표적 협력 사례로 들고 있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의 내용을 그대로 넣고 있다.

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입법 추진 전략 [82]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다. 민정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청와대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력 사례’ 중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포함하고 있으며, [별첨 자료 3]으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와 거의 같은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ㄴ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들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진실 규명 대상으로 구별하여 검토하지는 않고,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의 일부 내용(나. 기타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조사보고서 166쪽 이하)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중 [80] 문건에 대해서, “시진국 심의관과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라며, 정다주 판사가 앞서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의 내용이 그대로 삽입되었다고 한다.

“임종헌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조사보고서 171쪽).

또한 [82] 문건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가 예상되고 청와대,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양지인 청와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3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80] 문건 중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조사보고서 172쪽). 임종헌 기조실장과 정다주 심의관의 진술,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문건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쪽).

한편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현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현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조사보고서 176, 177 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특조단이 공개한 위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전교조 시국선언, 고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또는 이전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협력한 재판’이었으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활용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 비판적인 표현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법원행정처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을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교육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판결’로 들고 있는 이유는 전교조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떠오던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전교조는 정부의 집중적인 탄압 대상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회의에서 지시·강조한 사항을 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원세훈 사건에 제출된 국정원 회의 녹취록 등에서 정보기관이 적극 나서 전교조의 비판적 활동을 막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차 시국선언 바로 다음날인 2009. 6. 19.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섰다며 종북좌파 단체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2011. 2. 18.에는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며 확실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¹²⁾ 박근혜 정권 당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서도 전교조를 향한 꼼꼼한 탄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은 교사·공무원의 집단적 표현행위인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립한 판결이다.¹³⁾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고, 자동적으로 교사·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통해

12) 녹취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2017. 11. 24.자 뉴스타파 기사,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 참조) -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 6. 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 2. 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13)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여 왔다고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도 모두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무원·교원의 노동운동이 가능해지자 오히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공무원·교원의 정파적인 활동이 문제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으로 기소하였어야 할 것이나,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그에 부합하지 않자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사법부는 공무원·교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행위까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

교사 및 교원노조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워 정부가 ‘교육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노동 문제에 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지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갑작스레 선고가 연기됨으로써 결국 무죄 입장을 보였던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 4월, 보수적인 성향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춰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외부적 요인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

나. ‘빨갱이’ 물이에 협력한 고 김형근 교사 사건

법원행정처 문건은 고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하며,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시된 국가관의 방향을 바로 정립한 사례로 소개한다.

김 교사가 전야제 참여로 재판을 받게 된 실질적 계기는 전야제 참가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빨치산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구호는 김 교사 일행이 참석한 전야제 때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추모제 본 행사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서 실시한 사실인정의 근거(경찰의 정보 상황 보고문 등)를 배척하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근거로 김 교사가 빨치산 찬양 구호가 외쳐지는 전야제 행사에 학생들을 데려갔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위 [80] 문건을 “임종헌 기초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내용이 다른 시기 다른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2015. 8. 6.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82] 문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왜 직접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

조 역시 유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갔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활용하겠다는 기조 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여러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획·예비 단계에만 거친 것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의 구체적 작성 경위와 실제 활용의 모습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특조단은 [82] 문건을 분석하면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고 하여, 실제 영향력 행사(=조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 스스로 시인하였듯이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재판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각 재판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경우, 주심이었던 대법관을 포함하여 무죄 입장의 대법관들 퇴임 후, 유죄 입장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주심 변경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안대희 대법관은 2012. 4. 19.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관하여 유죄 취지 의견을 낸 후, 5개월도 채 못 되어 같은 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이 역시 ‘거래’와 완전히 관련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가 실제 평결과 재판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⑭]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31.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키코상품의 의의	1
나. 키코 사태의 발생	2
다. 소송의 경과	3
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8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8
가. 조사내용의 기재	8
나. 특조단의 평가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10
5. 향후 과제	11
가. 정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1
나. 검찰	11

1. 사안의 개요

가. 키코 상품의 의미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상품은 수출기업이 만기시 USD 등 기초 외화 자산 대비 원화 환율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이른바 ‘Knock-out’ 조건, 이하 ‘KO’라고만 함)이 붙은 풋옵션(put option)을 은행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은행은 위 환율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른바 ‘Knock-in’ 조건, 이하 ‘KI’라고만 함)이 붙은 콜옵션(call option)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교환계약(콜옵션과 풋옵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키코상품으로 인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환헤지 기능은 KO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의 좁은 구간에 국한되어 있고, 정작 환헤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KO환율 이하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환헤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환율보다 훨씬 낮은 행사가격으로 은행에게 달러화를 매도하거나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무한대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기업은 키코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미미한 환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엄청난 환손실의 가능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환투기적 성격이 강한 파생상품이다.

키코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이론가는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와 평균적으로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업은 환헤지를 하기 위해 풋옵션을 취득하는 대가로 은행에 풋옵션 이론가의 평균 2.5배에 해당하는 콜옵션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키코 상품은 은행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수수료로 취득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융경제학에서 ‘제로코스트’라는 용어는 교환되는 옵션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키코 상품은 ‘제로코스트’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키코 사태의 발생

수출기업은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환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등 환위험 헤지상품에 가입하여 환손실에 대비한다. 그런데 2007년경 환율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키코 상품에 가입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키코는 수수료가 없는 ‘제로코스트’상품이어서 다른 환헤지 상품보다 중소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은행은 수수료 마진률이 다른 상품보다 훨씬 높은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키코상품을 홍보하였고, 키코상품이 환헤지상품이며 수수료가 없는 상품(제로코스트상품)이라고 기망하여 중소기업에게 키코상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던 것이다.

2008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하였던 우량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이른바 ‘키코 사태’). 외국계 은행과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38개사이며, 2010년 6월 기준으로 키코 거래로 인해 3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키코 거래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받게 된 이자손실 등 2차 피해 규모를 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키코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위 키코 상품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기 위하여 가처분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¹⁾하였는바, 이하에서 후술한다.

다. 소송의 경과

피해기업들은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일부 피해기업들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였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7340 판결),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70%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26. 금융기관이 장외과생상품이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갖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바꾸었고, 원심에서 승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기각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시 기	내 용
2008. 10.	피해기업 70개사, 서울중앙지법 옵션효력정지 가처분소송
2008. 11.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200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소송 관련, 피해기업 모나미, 디에스엘 시디 승소
20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4개 재판부 키코 1심 판결 선고, 19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0. 12. ~20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17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1. 5.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 (130여개사)
20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선고, 4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2. 9. ~ 2013.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28개사 청구 일부 인용

1) 키코 피해기업인 S&T 모터스가 2008. 8.경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 총 220여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 1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3. 9. 26.	대법원 키코 사건 판결 선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2014. 6.	대법원 키코 사건 13건 심리불속행 판결

	총배정	소취하	진행	선고	선고결과	항소	항소포기	기타
1심	251	10	0	241	원고패 195 원고일부인용 46	160	81	2008.11. 1심 시작
2심	173	17	3	153	원고패 101 원고일부인용 51	99	53 (원고 일부 인용8)	2010.12. 항소심 시작
3심	99	3	14	82	상고기각 50 (원고패 35, 원고일부인용15) 심리불속행기각 21 (원고패18, 원고일부인용3)	-	-	2011.7. 상고 시작
2심 (파기)	11	0	4	7	원고패소 5 원고일부인용 2			

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키코계약은 정형성을 띠고 있어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의 일부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거쳤으므로, 키코계약을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에 해석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조건 중 극히 일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약관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은행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의 구조와 조건을 설정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

기 때문에, 소비자는 은행이 만들어놓은 조건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

또한 키코 상품은 교환하는 옵션의 평균 이론가 차이가 2.5배에 달할 정도로 은행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계약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키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풋옵션과 콜옵션의 이론가 차이가 평균적으로 수배 에서 수십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동일하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옵션의 이론가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전문기관인 시중 은행도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였던 은행이 ‘제로코스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은행측에 유리한 판단을 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 인도판 키코
- 인도 중앙조사국(CBI)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여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공모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
 - 인도 준비은행(RBI), 파생상품판매 19개 은행에 최고 벌금 부과
 - 키코(KIKO)와 인도의 ‘탄(TARN)’은 동일한 계약구조와 동일한 판매과정, 동일한 계약주체, 동일한 판매시기와 판매주도은행, 계약체결 후 동일한 피해상황 등 판박이 금융사기 사건
 - 국내 피해기업과 인도 피해기업들이 제기해온 ▲은행의 의도적 공모 ▲국부 유출피해 ▲기대이익의 불공정성(옵션 프리미엄 차익실현) ▲관련기관의 묵인 내지 방관 등 공통적 상황

- 그러나,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조치 및 솔루션은 인도와 상반된 결과(한국의 금융감독원은 키코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었고, 오히려 은행을 보호하기에 급급함)

■ 이탈리아판 파생상품 사기

- 이탈리아 검찰은 4개 은행이 밀라노시에게 파생상품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 차액(마이너스 시장가치)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함
- 밀라노법원은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밀라노시를 상대로 체결한 스왑상품은 무효이며 은행은 밀라노시에게 65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파생상품 계약에 옵션 프리미엄 차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행이 알려주지 않은 문제로 지방정부와 은행간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채무금 지급 중단 결정
- 도이치은행 등 4개은행은 밀라노시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를 경감시켜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들을 추천하여 이를 밀라노시와 체결

■ 독일판 파생상품 부실판매

- 이자율 스왑거래 상품이나 키코와 유사 ▲쌍방 기대이익 교환 구조 ▲옵션의 프리미엄의 차이가 공개되지 않음 ▲계약체결 당시부터 기업에게 마이너스의 시장가치 ▲은행손실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 기업손실은 무한대
- 도이치은행이 위생품 제조 중소기업 '일레 파피에르'에 이자율 스왑 상품 판매. 일레 파피에르 2007년 손해배상소송 제기, 1심과 2심에서는 기업이 패소, 연방대법원에서 기업이 승소
- 독일 연방대법원은 '파생상품의 경우 설명의 정도는 고객이 손실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은행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은행이 손실금

액 100%를 책임지도록 판결함

■ 미국 SEC 및 CFTC 회의기록

- ‘뱅크스 트러스트’는 포장지 제조기업 ‘깁슨’에게 이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을 추천하여 이를 체결(이 파생상품 계약들도 처음부터 옵션 프리미엄이 차이가 있었으나, 은행은 이를 밝히지 않음)
- 미국 SEC는 “‘뱅크스 트러스트’가 계약체결 당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문가들은 "키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됐더라면 판매은행들은 사기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힘

■ 일본판 키코

- 일본에서도 1만900개 기업이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음. 키코와 마찬가지로 은행측으로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강요한 경우도 있음.
- 기업과 은행 간 분쟁도 늘어나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은행이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중재, 은행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이 입은 손실금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부담함(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자이’ 보도)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키코통화옵션계약 체결에 적절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 및 키코 상품이 원고들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및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키코 상품의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기업은 은행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키코 상품이 선물환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은행이 고객의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설명하였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

이 고객에게 옵션의 이론가 차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키코 계약에 관하여 다수의 법적 쟁점이 문제되었고,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그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처분사건과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어떠한 소수의견도 없이 실질적으로 피해기업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키코 사건과 관련된 것은 ‘(151119)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82]’이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키코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률에 기초하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할 법관들이, 키코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발전을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하여 판결을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법관에게 그렇게 판단할 ‘권한과 재량’이 있다고 착각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 173쪽은 위 [82] 문건에 대하여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과 계기로는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하는 안, 대통령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압박카드로는 ‘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여기에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 위 「압박카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서 ‘키코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기재하고 있다.

나. 특조단의 평가

앞서 다른 이슈페이퍼에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은 키코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의 무효, 취소 여부,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관한 설명의무의 기준과 충족여부, 적합성 원칙의 기준과 충족 여부 등 수많은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였던 사건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도 사건의 당사자 외에도 법학자들의 견해도 치열하게 나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게다가 키코 상품과 유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다도 키코상품의 판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신중하여야 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만큼, 법관조차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 하나의 소수의견, 심지어 보충의견도 없이 결론을 도출²⁾하였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법리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은행의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없이 일치된 견해로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스스로 이와 같은 판결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법부의 협조 사례라 평가하였는바, 이는 최고 법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 키코 관련 사건에 있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키코 관련 가치분 사건의 관여법관으로서, 키코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들(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프리미엄)를 현금이나 다른 옵션의 매도로써 지급하여 제로코스트(zero cost)를 실현하는 구조, ② 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적 가격(이하 '이론가'라고 한다)을 기업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에 비해 크게 설계하여 그 차액 상당을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 ③ 계약기간 동안 주로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 개의 풋옵션과 콜옵션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구조, ④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은행의 손실범위는 일정액으로 제한되는 반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손실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은행이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93). 그러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변경하였고, 어떠한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 2. 24.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였다.

5. 향후 과제

특조단의 조사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키코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독립성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

가. 정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은 2018. 5. 31. 키코 공대위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현황 실태를 재조사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전면 재조사는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던 5개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³⁾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민관 합동조사단 결성 및 전면 재조사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처음 키코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 및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법원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나. 검찰

키코 공대위와 피해기업 일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코상품을 판매하였던 금융기관 및 판매담당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재고소(발)하였다. 애초에

3)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381819>(윤석현 “키코, 전면재조사 아닌 법원서 안다룬 부분 재조사”, 뉴스 1, 김현 기자)

키코 사건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되었으나, 수사담당 검사가 갑자기 교체되고, 중요한 수사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으며,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키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하여 키코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⑥]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8. 2.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5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6
가. 조사내용의 기재	6
나. 특조단의 평가	7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8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0

1. 사안의 개요

현재 2건의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2013다67587)이 대법원에 재상고심으로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¹⁾를 상대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 중 일부는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2. 5. 24. 하급심 판단을 모두 뒤집고,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때인 201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부터는 18년이, 신일본제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부터는 13년이 경과하였다. 원고들은 소제기 당시 9명이었는데, 현재는 2명만이 생존한 상태이다.

대법원은 2015. 9. 5.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2013다67587)에 관하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2016. 9. 5.에는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신일본제철 주식회사가 2012. 10. 1.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신일본제철'이라고 기재한다.

사건(2013다61381)에 관하여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2. 5. 24.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후속 소송을 제기하였다. 후속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은 위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일본 기업이 위 판결에 불복하였다. 후속소송 중 1건의 사건(2015다45420)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송달문제 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2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이 추정되어 있다.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사건번호	원고 청구금액 등	경과
1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대법원 2013다67587 (민사2부)	亡 박창환의 소송수계인 박재훈 外 22명 피고소가 400,000,000	부산지법 2007.02.02. 원고 패 부산고법 2009.02.03. 항소 기각 대 법 원 2012.05.24. 파기환송 부산고법 2013.07.30. 원고 일부 승
2	신일철주금	대법원 2013다61381 (민사1부)	여운택 外 3명 피고소가 4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08.04.03. 원고패 서울고법 2009.07.16. 항소기각 대 법 원 2012.05.24. 파기환송 서울고법 2013.07.10. 원고일부 승
3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대법원 2015다45420 (민사2부)	양금덕 外 4명 피고소가 562,083,333	광주지법 2013.11.01. 원고 일부 승 광주고법 2015.06.24. 원고 일부 승 (2017.7.31. 관련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4	후지코시 강재 (근로정신대)	서울고등법원 2014나58797	김계순 外 26명 (피해자 13명, 亡 4명 수계인 18명)	서울중앙지법 2014.10.30. 원고 일부 승 (2016.5.13. 판결 선고기일. 관련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피고소가 1,430,666,659	위해 추정 결정)
5	신일철주금	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곽해경 외 6명 피고소가 7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5.11.13. 원고 일부 승 (2017.10.27. 변론기일)
6	신일철주금	서울중앙지법 2016나56389	정복인 외 2명 (김공수의 유족) 피고소가 99,999,998	서울중앙지법 2016.8.19. 원고 일부 승 2018.11.8. 변론기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계류 中
7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27	홍순의 외 59명 피고소가 995,126,803	서울중앙지법 2016.8.25. 원고 일부 승 (2017.10.26. 변론기일(추정기일: 조정이사 확인 및 대법원 관련사건 대기)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34	김형팔 외 4 피고소가 25,833,333	서울중앙지법 2016.8.25. 원고 일부 승 (위 홍순의 건과 병합. 위 사건과 동일)
8	후지코시 강재 (근로정신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4567	김옥순 외 4명 피고소가 5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6.11.23. 원고 일부 승 (2017.10.20. 변론기일) (추정기일: 관련사건 경과 참고를 위해)
9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광주지방법원 2017나59993	이경자 외 1명 피고소가 123,256,684	광주지법 2017.8.8. 원고 일부 승 2018.10.19. 변론기일(14:10. 303호) 2018.11.02. 변론기일(14:10. 303호) 2018.11.23. 판결 선고기일(") ⇒ 광주지법 민사항소부 계류 中
10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양영수 외 3명 피고소가 470,000,000	광주지법 2017.8.11. 원고 일부 승 2018.10.31. 변론기일 2018.11.24. 변론기일 2018.12.12. 판결 선고기일

11	후지코시 강재 (근로정신대)	서울중앙지법 2017나21113	이춘면 피고소가 1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7.3.16. 원고 일부 승 2018.5.16. 변론기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계류 中
12	미쓰비시중공업 외 2명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9049	김금상 외 62명 원고소가 2,520,000,000	2013.12.9 소 제기 2018.8.23. 변론기일 (252명 원고 중 60여명만 소송 계속. 나머지 원고들은 취하 간주)
13	요코하마고무 외 68명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1064	서창동 외 666명 원고소가 6,68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5.4.21 소 접수 2016.6.13. 변론기일 (추정기일: 소장 부분 송달위하여 추정)
14	스미토모석탄 광업 (변경 후 → 스미이시 테리아루즈) 외 16명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송영호 외 85명 원고소가 8,6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5.5.22 소 접수 2018.8.31. 변론기일
15	히타치조센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582	이희열 피고소가 5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6.9.21. 원고 일부 승 2017.4.20. 변론기일 (추정사유: 관련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²⁾, 변호사단체³⁾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2) 2016. 12. 30.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후지코시 2차 1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조속히 판결 하라고 촉구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중략) "아흔을 넘어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해를 당한 원고들이 처음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2000년 5월로 어느새 16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2016 11. 23.자 뉴시스 기사 「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 판결 빨리 나와야"」).

3) 2017. 11. 7.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미 2012년 5월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책임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4년이나 미루고 있어 고통의 피해자들

제출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여 왔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이다.

이 문건에는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하면서 설득 대상자를 “이병기 비서실장”으로 특정하고, 주요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의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공감하고 있음을 피력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3다61381⁴),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잇따라 타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상고된 지 4년이 넘도록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들이 연이어 운명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2000년 5월 1일부터 따지면 17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2017. 11. 7.자 법률신문 기사 「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신속 판결하라"」).

4) 문건에는 “2013다6138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다61381”의 오타로 보인다.

<p>4.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p> <p>▣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u>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u></p> <p>▣ 이병기 비서실장</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p> <p>▶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세훈 사건</p> <p>▶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p>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은,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중 하나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을 검토하면서, 시진국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2015. 3. 26.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조사보고서 168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이 작성된 배경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사법부의 공식적 청와대 접촉창구는 민정수석실이

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 있다 (조사보고서 168쪽).

특조단은, 이 문건에는 민정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상을 전환하여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 활동하는 우회 전략을 제시한 내용이 있었고,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조사보고서 169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79, 359]문건에 관하여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을 뿐 위 문건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검토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문건들과 관련하여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에서는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는 후에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고, 원세훈 사건처럼 아직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사건 등에서 청와대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

용하겠다는 기초 역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조사보고서 176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특조단 조사에서는 2015. 3. 26.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만이 발견되어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법원행정처에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위 조사 이후 임종현 차장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문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외교부, 청와대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재판 거래를 하였고, 여기에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도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일본 공사가 2012년 6월 방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외교부 ‘고충’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박찬익 심의관이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시 의견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재판을 미뤄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위 문건에 “피고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기재도 있어,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절차적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을 꼼꼼히 기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⁵⁾

또한 2014년 11월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5) 2018. 7. 24.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징용 재판연기-해외 법관자리 ‘거래시도’도” 참조

문건에서는 ‘조정 및 화해 시도’, ‘통치행위로 판단하는 사법자제론’, ‘전원 합의체 판단’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재판 연기 방안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⁶⁾

실제로 2015. 6. 22. 임종현 차장이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징용 소송)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며 대사관 법관 파견을 청탁하는 내용이 있고, 2015년 7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 방안을 추진한 문건’에는 “신일철주금 사건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을 내세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⁷⁾

2016. 10. 6. 김앤장은 2015. 1. 28.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까지 변경하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⁸⁾ 외교부는 2016. 11. 29.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 관행, 한일 청구권협정의 물적 적용범위, 일괄처리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 다양한 문제해결 제안과 합의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담겨 있었다.

여러 문건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및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거래’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2018. 7. 26.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총동원 됐다” 참조

7) 2018. 7. 26.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총동원 됐다” 참조

8) 2018. 7. 27.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참조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특조단 조사 결과에는, [79, 359]문건에 관하여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건들에 의하면, 재판이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에 연루된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어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상고심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ISSUE PAPER ⑩]

서기호 전 판사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2018. 9. 13.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당사자의 관계	1
나.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한 연임거부처분의 경위 및 문제점	1
다. 소송의 개요	3
2.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	5
가. VIP 거부권행사 정국의 입법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157] ...	6
나. 그 밖의 문건	7
3. 평가	8
4. 향후 과제	9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서기호 전 판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2. 2. 10.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 받아 법관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이러한 연임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한편, 서기호 전 판사는 2012. 5.경 국회의원직에 당선되어 2012년부터 2016. 까지 국회의원 직에 있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서기호 전 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당시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나.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한 연임거부처분의 경위 및 문제점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 2. 10.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하여,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연임거부처분 이라 한다). 이는 10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임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첫째,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과 재판의 독립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의 2는 법관의 연임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만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높다.

둘째, 이러한 연임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불복절차가 명문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물론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규정한 법관의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단심으로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해당 사건은 징계처분이 아니라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게 아니었다. 그로 인해 법원행정처에서도 서기호 전 판사에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도록 불복절차 안내를 할 정도였다.

셋째, 이러한 법관의 징계 또는 연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처분을 한 법원을 상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됨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인 1, 2심 재판장들뿐 아니라 최종심인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모두가 징계 및 연임 거부처분권자인 대법원장의 인사권 아래에 놓여 있는 점에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연임거부처분 그 자체도 다음과 같이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었다.

즉 ① 서기호 전 판사는 2009년 4월부터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재판 개입사건 관련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실상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판사회의를 주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부터 3년 연속 ‘하’ 등급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불

여지가 많은 점, ② 실제로 서기호 전 판사의 3년간의 객관적인 사건처리 통계자료상으로 볼 때 평균 전후인 수준임에도, 당시 법원장 1인에 의한 주관적 평가시스템이었던 결과 이러한 객관적 통계와도 맞지 않게 3년 연속 ‘하’ 등급이 이루어진 점, ③ 평가 방식 역시 상, 중, 하 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누군가는 ‘하’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법원조직법상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절대평가적 개념과도 맞지 않았던 점, ④ 그로인하여 이 사건 연임거부처분 직후 전국적으로 단독판사회회가 개최되면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년 7월경 ‘상, 중, 하 등급 외에 최하등급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이러한 최하등급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하도록’ 근무평정방식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던 점, ⑤ 당시 근무평정 결과는 개별 법관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결과를 고지해주지 않아서 이의제기할 기회도 없었던 점 등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서기호 전 판사의 2011년 ‘가카의 빅엿’이라는 SNS 문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을 정도였다.

다. 소송의 개요

서기호 전 판사는 소청심사절차를 거친 후, 2012. 8.경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28773호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피고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기호 전 판사의 근무 평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담당 재판부 역시 2013. 10. 8.자 석명명령을 통하여 피고에게 서기호

전 판사의 근무평정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각 연도별 세부항목 평정등급 자료(특히 서술식 근무평정 부분), 각 연도별 구체적인 통계자료표 등을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문서야말로 그동안의 근무평정이 법원장 1인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였으므로, 설령 원래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사건의 재판에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에, 피고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여 입증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더니 결국 2015. 1. 15.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서기호 전 판사는 이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6.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5. 5. 22.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후 제1심 재판부는 위 재항고기각 결정에 따라 2015. 6. 1. 변론기일을 ‘2015. 7. 2.자로 지정’ 하였는데, 그날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8. 13.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서기호 전 판사는 2015. 9. 25. 위헌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이유로 하여,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2015헌바331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위 현재의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6. 11.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누1870), 대법원 역시 2017. 3. 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다(2016두1158).

날짜	진행내용
2012. 8. 28.	소장 접수
2012. 10. 16.	원고 위헌법률제청신청 접수
2013. 10. 8.	재판부의 석명명령(자료 제출의 촉구 등)
2014. 2. 19.	원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
2014. 9. 16.	원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2014. 10. 17.	원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2015. 1. 14.	재판부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
2015. 1. 17.	원고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15. 3. 6.	항고 기각
2015. 5. 22.	재항고 기각
2015. 7. 2.	변론종결
2015. 8. 13.	원고패소
2015. 8. 13.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2.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

법원행정처는 3차 조사보고서에서 추출해 냈던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문건 400여건 중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여 왔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의결이 있게 되자, 그제야 2018. 7. 31. 나머지 196개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가. 'VIP 거부권행사 정국의 입법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157]

2015년 6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당시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작성일자가 2018. 7. 31.로 출력되어 있으나, 당시 거부권행사가 2015. 6. 25.이었으므로 실제 작성일자는 2015. 6.경으로 보인다.

문건에서는 서기호 의원 항목에서 "대법관 증원론 등을 내세우며 (상고법원을) 강력 반대(하고) 법원을 타깃으로 한 법률안 다수 발의"라고 적었다. 서기호 의원이 그해 5월 22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근거로 해서다. 그러면서 서 의원을 설득시키려면 '강운양면전략'을 구사해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게다가 '압박 방안으로'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7월2일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문제는 실제로 이 문건대로 2015년 7월 2일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이 사건 재판의 피고가 법원행정처장이기에 그러한 차원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종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 사건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수행자'들이 작성한 문건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건은 이 사건 재판의 소송수행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이다. 또한 '변론종결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변론종결 등을 통해’라고 기재함으로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1심 재판부에 재판진행 방향과 절차에, 심지어 결론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부분이 당시 상고법원에 가장 적극 반대하던 서기호 의원에 대한 압박방안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실제 재판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기호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임종현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2015. 6.경 연임거부취소소송에 대하여 취하를 요구했다’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향후 검찰에서 임종현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러한 문건 작성이 단순한 검토 차원이 아니라 실행된 것이고, 실제로 1심 재판 전 과정에 개입하여 왔다는 점까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원행정처가 단지 변론종결뿐 아니라, 서기호 의원의 1심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나. 그 밖의 문건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전략(142번 문건),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및 국회통과전략(135번 문건), 상고법원 입법환경 중간상황 점검(90번 문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98번 문건), 법사위원 대응전략(123번 문건)

여기에는, 서 의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재임용 탈락으로 인하여 법원에 대한 주관적인 악감정을 품어서’ 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해철 의원 등을 통해 설득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립화 전략을 펴야 한다’

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건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상고법원의 관철을 위해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원들에게 ‘각종 민원성 재판’ 등을 챙겨주는 설득전략(당근)을 구사하는 한편, 서기호 의원처럼 도저히 설득되지 않은 상고법원 절대 반대 의원에 대하여는 압박전략(채찍)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압박전략의 일환으로서, 서기호 의원의 이 사건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될 수 있는 것이다.

3. 평가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관사찰(블랙리스트)에서, 재판거래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196개 문건을 통해서,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 과정 역시 여러 가지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그만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를, 상고법원에 올린하던 19대 뿐 아니라 20대까지도 이어왔다는 근거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들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을 설득 또는 압박하고자 하였다.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 상고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만큼 법원행정처의 압박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기호 전 판사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이 모두 기각되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 개입은, 기존의 재판거래와는 차원이 조금 다른,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 관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법농단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상고법원 찬성을 바라면서 국회의원에게 당근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대법원이 적극 추진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압박차원에서 재판개입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3권분립 원칙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관련 있는 재판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문건의 추가 공개를 통해서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문건 중에서도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은 사생활보호,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주관적 평가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당사자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할 정도이다.

이처럼 특별조사단의 부실한 조사가 확인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한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진정서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The Authors

Name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Contact

Name: Ms. Boram JANG,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 23 Boebwon-ro 4gil Daedeok Building 2f,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bjang@minbyun.or.kr

Name: Ms. Huisun KI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ddress: 16, Jahamunro 9-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jw@pspd.org



2. 사건의 경위

1. 대한민국의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법관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은 법관들에 대한 평정, 전보, 승진, 재임용 등 인사에 권한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사법행정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장은 대법관이 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을 거친 법관들만이 대부분 대법관이 되어왔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1. 9. 부터 2017. 9. 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자신이 가진 막대한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하여 개별 법관을 사찰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위 의혹에 대해 3차례 불충분한 내부조사만을 실시하였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개별사건 관계자들의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3. 법관 독립성 침해 사례

A.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 와해 시도

3. 사법농단 의혹은 2017. 2. 대법원장이 가진 광범위한 사법행정권한의 민주적 분배 등 사법부의 개혁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축소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4.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10월 발족된 법원 내 학술모임으로서, 인권과 소수자 문제, 사법개혁 문제 등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

동을 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유엔 인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국내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유엔 주최 행사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¹⁾는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인사권, 예산배당, 사법행정 권한 등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2017. 3.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5.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킬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2017. 2. 13. 연구회 ‘중복가입금지 조치’²⁾를 공지하여 국제인권법학회에 가입한 판사들을 탈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B.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

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군부정권이었던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김 모 판사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자,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7.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 특이사항을 검토하게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바 있다.

1)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10월 발족된 법원 내 학술모임으로서, 인권과 소수자 문제, 사법개혁 문제 등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2)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은 하나의 연구회만 가입할 수 있고, 최초 가입한 연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 탈퇴하라는 내용이었음

C. 주요 인권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개입

8.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사회 강정, 밀양 송전탑, 세월호 문제가 있었고 한국시민단체도 유엔에 문제제기 해왔으며,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방문했을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권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권고내용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한 바 있다.
9.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안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3심에서 패소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과도한 벌금, 형사처벌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3차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들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피해자들은 현재 재심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4. 관련 법규 및 위반 사항

10. 법원행정처는 개별 소송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대상으로 삼고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 심증을 확인하여 청와대 등에 전달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와 소모임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법관 개인에 대하여 사법행정과 무관한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법관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많은 수의 파일을 삭제하여 진실 은폐를 시도하였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과 행정처에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저질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첫 번째, 이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1항³⁾

3)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및 세계인권선언 제10조⁴⁾ 및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⁵⁾ 위반이다. 특히 1985년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조, 제2조,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1.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고,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정부 기관과 다른 기관의 의무이다.

2. 사법부는 사건을 특정한 목적이나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 압력, 권유, 위협 또는 개입 등 제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 구속 받지 않고, 법률과 사실에 입각하여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재판의 절차에 있어 어떠한 부적절하거나, 간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결정은 수정(변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 원칙이 사법적 재심사나, 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법원에서 내린 형을 감형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2. 뿐만 아니라 법원 내 연구회와 소모임의 형해화 시도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사찰은 자유권규약 제19조⁶⁾ 및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0조⁷⁾ 위반이다.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 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4)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6)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7) Qualifications, selection and training

5.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 및 한계점

A.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상조사 결과 (1차 진상조사)

13. 일선 판사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3. 24. 조사를 시작했다.

14. 진상조사위원회는 3주 후인 2017. 4. 18.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하는 등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였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없는 ‘중복가입금지 조치’는 부당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은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B. 추가조사의 요구 및 이에 대한 거부

15. 핵심증거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시민단체, 일선 판사 등은 추가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 9. 22. 임기를 마칠 때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C.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2차 진상조사)

16.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조사후 재조사 요구를 거부한채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여 추가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10. Persons selected for judicial office shall be individuals of integrity and ability with appropriate training or qualifications in law. Any method of judicial selection shall safeguard against judicial appointments for improper motives. In the selection of judges,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status, except that a requirement, that a candidate for judicial office must be a national of the country concerned,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어졌다. 대법원은 2017. 11. 3.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고, 2017. 11. 13. 내부인사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1. 15. 추가조사를 개시하였다.

17. 추가조사위원회는 2018. 1. 22.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고,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까지 발견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8. 추가조사위원회는 인사나 검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를 다수 발견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개별 판사의 정치적 성향,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가족관계, 개별 판사가 작성한 SNS 게시물 수집,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비판 여부 등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19. 추가조사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정부의 대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형사재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 2820 판결)에 관한 문서였다. 해당 문건에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에 대해 개진한 의견을 기재되어 있었다.
20. 위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직접 행사한 임종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및 비밀번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암호파일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었다.

D.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3차 진상조사)

21. 대법원은 2018. 2. 12.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이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22. 특별조사단은 2018. 2. 23. 1차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으며, 2018. 4. 11. 2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파일 406개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음. 특별조사단은 과거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법원과 달리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한 판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3.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회의에서 의혹 관련 문건으로 총 410개의 파일을 추출하여 조사했으며, 법관 사찰 문건은 발견되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했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4. 위 조사결과에서는 특별조사단은 ①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입법추진 했던 상고법원 도입⁸⁾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으로 삼아 청와대와 비밀리에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에 대해

8) 대법원의 사건 중 일부를 새로운 법원을 설치하여 처리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었음

반대하는 법관들의 개인의 정치적 성향, 판결 성향,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⁹⁾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심이 있는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5. 특히 발견된 문건 중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¹⁰⁾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서는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는 점, 사법부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해 왔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즉 다수의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광범위한 사전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26. 위와 같은 충격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7. 나아가 조사결과의 공개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대상인 내부 문건 410개 중 174개만을 일부 공개하였다. ‘(140505)세월호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141229)민변대응전

9)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약칭

10) 청와대를 의미

략’, '(150803)VIP보고서’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 특정 단체에 대한 탄압,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교감이 의심되는 문건이 다수 있음에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E. 대법원 자체조사의 한계

28. 이와 같이 대법원이 3차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이는 조사위원들이 내부 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포렌직의 한계, 강제수사가 아닌 조사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미실시 등 조사 자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여러 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6. 결론

29. 특별조사단은 문서의 내용의 전후 경과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양승태 등의 조사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행정 처로부터 인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도 못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하였다. 사안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도 대법원은 아직 문서 공개나 책임추궁, 근본적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책임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30. 따라서 특별보고관에게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관련 대한민국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1. 진상규명

- 대법원은 410개 문건을 완전한 형태로 공개할 것.

2. 책임자처벌

-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
- 대법원은 관련판사를 직무배제하고 철저히 징계할 것.

3. 피해회복

-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4. 재발방지

- 대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Authors

Name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Contact

- Name: Ms. Boram JANG,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Address: 23 Boebwon-ro 4gil Daedeok Building 2f,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Email: bjang@minbyun.or.kr

- Name: Ms. Huisun KI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Address: 16, Jahamunro 9-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 Email: jw@pspd.org



2. Background

1. In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CA') under the Supreme Court manages budget and human resource of the courts¹. The key positions within the NCA are taken by judges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judges are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such performance evaluation, transfer of the duty, promotion, rehiring process of the judges as well as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Only on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ld assume the Minister of the NCA position and judges who had taken the NCA's Vice Minister or Director positions are the ones who have high possibility to become the Supreme Court Justices.
2. There has been an allegation that during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s incumbency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7 that he and judges at the NCA abused their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o conduct massive surveillance on the individual judges and interfered with the cases, hence posed a serious threat to judicial independence. Numerous password-locked files were found in the NCA's computers and the names of the files were sufficient to show that the NCA tries to interfere with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nd conduct surveillance on certain judges.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however, conducted ineffective three internal investigations of their own and are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after those investigations. These conducts are in clear violation of the ROK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which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lso violate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3.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 Attempt to Break up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3. The allegations first emerged when the NCA unjustly tried to minimize the scale of academic conference of judges on the theme of judiciary reform, including democratic distribution of the wide-ranging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in February 2017.
4.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as 'IHRLS') is an academic society of judges within the Court. IHRLS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1 with approximately 400 judges. Their research focus is mainly on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y and judicial reformation. IHRLS also revie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ries to apply and implement them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y had been vocal at the UN-led conferences and state review sessions. IHRLS was planning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in March 2017 with a critical viewpoint on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ose power encompasses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distribution of budget, and other relevant judicial administrative works. The then-Vice Minister of the NCA Mr. Im Jong-heon ordered member judges of the IHRLS to minimize the scale of the

¹ <http://eng.scourt.go.kr/eng/supreme/about/organizational.jsp>

event as well as the IHRLS's overall activities. Then, on February 13, 2017, the NCA announced that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seeking to withdraw judges' membership in the IHRLS.

5. While protesting against Vice Minister Im Jong-heon's unduly oppression and minimization toward the IHRLS, suspicions arose that the NCA have been writing and managing judges' personal profile reports to monitor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ho were critical to the Chief Justice and these judges were disadvantaged in personnel affairs and overseas study opportunities. Meanwhile one judge, who was a member of the IHRLS and protested agains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s oppression toward the IHRLS, and who held double duties at the court and the NCA, had to return to the ordinary court after working at the NCA for 11 days.

B. Attack on the Individual Judges' Independence

6.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tried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to a judge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o made a ruling in recognizing state responsibility of temporary measures which were impos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Park Chung-hee. The decision was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when the Chief Justice Yang couldn't find any precedents imposing disciplinary measure to a judge because of his/her particular decision, he even directed other judges to research for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to justify his intention.
7. Also, the Chief Justice Yang instructed the NCA judges to draft report on a judge's financial status when the judges in question wrote articles to liberal newspapers and posted his criticism on the Court's intranet.

C. Undue Influences on the Politically Sensitive Cases

8. During Yang's incumbency, many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conflict over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Miryang residents' fight against electricity towers, Sewol Ferry disaster, were tried at the courts. For these matter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visited the country and conducted site visits and listened to the victims. The rapporteur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were included in their annual reports.
9. Some of these cases have lost on their appeals and numerous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till suffering from physical, emotional and financial pain because of the excessive fines and criminal convictions. According the third investigation committee's report,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Yang had been exercising undue influence on these cases. The victims are now considering requests for retrials of their case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hould keep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is matter.

4. Relevant Laws and Alleged Violations

10. The NCA used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s bargaining chips in the top court's dealing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over organizational changes, delivered directions to the judges and judges' opinions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NCA also tried to undermine the particular research associations and meetings of the judges because these judges were against the NCA's policies. In addition, the NCA had conducted a massive surveillance on individual judges' private matters, and deleted numerous electronic files to cover up once the surveillance allegation arose. This shows that the NCA under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not just abused its judicial power but committed organized crimes. It poses a grave threat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e Republic of Korea.
11. First, they violated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² and Article 10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³ as well as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⁴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ich was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5, also reads as follow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all be guaranteed by the State and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of the country. It is the duty of all governmental and other institutions to respect and ob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2. The judiciary shall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on the basis of f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mproper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4. There shall not be any inappropriate or unwarranted interference with the judicial process, nor shall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s be subject to revision. This principle is without prejudice to judicial review or to mitigation or commut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of sentences imposed by the jud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law.

² Article 14 1.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press and the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a trial for reasons of morals,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or when the interest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rties so requires,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but any judgement rendered in a criminal case or in a suit at law shall be made public except where the interest of juvenile persons otherwise requires or the proceedings concern matrimonial disputes or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³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⁴ Article 103.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12. Moreover, the NCA's attempts to undermine particular judges' academic societies and meetings, and its attempts to surveil individual judges would be in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CCPR⁵ and Article 10 of the Basic Principle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⁶.

5. The Government's Response so far and its Challenges

A. 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1st investigation)

13. With complaints from judges and the civil societies, the NCA forme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embarked on its investigation on March 24, 2017.
14. Three weeks later, on April 18, 2017,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 unduly oppressed the IHRLS by pressuring the judges related to the IHRLS to postpone and minimize its academic conference through various measures, and stated that the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was a wrongfully restrictive measure with no urgency and necessity, abusing the NCA's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Nonetheles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s unjust human resources affairs an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judicial blacklist' were "unfounded," without even looking into computer files of interest that were locked with passwords in the computers of the NCA judges.

B. Request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the refusal

15. With no investigation on the key evidence of computer files, the National Judges' Congress, NGOs, and judges demanded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issue. Howeve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Yang Sung-tae refused to conduct any further investigation insisting that there was no circumstantial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judicial blacklist' until the end of his term in the office on September 22, 2017.

⁵ Article 19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⁶ 10. Persons selected for judicial office shall be individuals of integrity and ability with appropriate training or qualifications in law. Any method of judicial selection shall safeguard against judicial appointments for improper motives. In the selection of judges,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r, sex,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status, except that a requirement, that a candidate for judicial office must be a national of the country concerned,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C. Formation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its activities (2nd investigation)

16. On November 3,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nally decid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allegations. On November 13 2017,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composed mostly with internal officials, and began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November 15, 2017.
17. On January 22, 20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at numerous documents reporting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ere found as well as documents reviewing propensity of the court in charge of particular cases and possible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resulting in serious concerns on viol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found that these documents were written by NCA officials who were not affiliated with personnel affairs or inspection division. Those documents contained a wide-range information on not only judges' works related to the court operation, but other areas including individual judges' political tendency, memberships of particular academic societies, family relations, writings on judges' personal accounts of SNS and their personal opinions on the policies of the NCA.
19.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lso discovered a document titled "Trends of various societies regarding decision 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mer Director Won Sei-hoon case". The document was about the appeal case of former Director of NIS, Won Sei-hoon who was alleged to had supported the then-rul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eoul High Court Decision, February 9 2015, 2014No2820). The document stated that the NCA had been trying to indirectly locate opinions of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as regard to the inquiry from the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the name of the Presidential Office) even before the decision was announced. Then the document further stated the NCA's effort on explaining the case to other institutions after the court's decision was announced, as requested by those institutions, as well as other judges' opinions regarding the decision which were posted on the Court's intranet and other online platforms.
20.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was criticized for its limitations of duties as it was unable to investigate computers with over 760 locked files of the NCA officials, including those of former Vice Minister Im Jong-heon who directly exercised his power to unjustly oppress the IHRLS.

D.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hird-phase Investigation)

21. On February 12, 2018,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new 'Special investigation team on suspicion of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supplement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o establish follow-up measures.
22.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to re-examine four computers used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t its first meeting on February 23, 2018. At the second meeting held on April 11,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vealed that it had found 406 suspicious files of surveillance on judges and allegation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by the NCA.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aid that they found documents including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discipline the judges who ruled that the claims of victims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compensated differently fro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3. At the third meeting of May 25,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leased a final report that they conducted investigation on the suspicious 410 files to find documents regarding surveillance of judges, but stated that there was no judge blacklist which led to professional disadvantage of judges.
24. As a result of the above investigat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confirmed as follows: ①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case was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Blue House in secret and to strengthen negotiating power in order to enac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⁷ under suspected direction of the NCA and then-Chief Justice Yang Sung-tae; ② in such process, the fact that the NCA prepared a review report on the individual cases to hand it in to the trial investigator of the Supreme Court who was in charge of reviewing the case, or examined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individual cases of appellate court trials to its consensus; ③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stantly tried to check the convictions of the courts in charge of the individual cases; ④ the fact that the NCA exercised unreasonable pressure on IHRLS; ⑤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ducted a wide range of surveillance of judges who we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from personal political orientation, judicial inclination, financial condition, and etc. which were not related to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⑥ the fact that officials of the NCA arbitrarily deleted 24,500 files suspected of abusing judicial authority such as "Measures to Respond to the Human Rights Law Societies Group", "A Review of In-Sa-Mo"⁸, and etc. after the judge blacklist scandal arose.
25. Among the documents found in particular, a document called "Strategy for Effective Negotiation with BH⁹ for the Successful Legislative A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contained materials as follows: "① historical adjustment within a reasonable scope (restricting national compensation, and etc.); ② judgements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controversial cases of Lee Sukki, Won Seihoon, Kim Ki-jong, and etc.); ③ judgments consider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top priority (cases of the ordinary wage, return of school supporting fees of national universities, KIKO, and etc.); ④ judgment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labor reform (cases of KTX crew,

⁷ It was a policy that some of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were to be set up and handled by a new court. The policy has been criticiz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its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⁸ Small Group within the Human Rights Law Societies Group, the (Korean) Abbreviation Name of 'Justice System for Human Rights Protection'

⁹ Meaning the Blue House

layoffs, railway union strike, and etc.); and ⑤ judgments which could be the cornerstone of educational reforms (such as a case of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by Jeon Gyojo), which have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added its strength to VIP and BH.”, and also noted that the judiciary had been “coordinating with the BH to prevent unforeseen judicial decisions in cases with a huge national or social impact or cases of politically sensitive events”. In other word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extensive pre-emptive communication with Blue House and the Judiciary was made in the final judgment process on many individual cases.

26.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27. Furthermore, the disclosure of the findings was not released in full transparenc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has released only 174 out of 410 internal documents under the investigation.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suspected for in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the Blue House such as “(140505) Measure to Allocate Appropriate Trial Court regarding Sewol Ferry Case”, “(141229) Strategy to Deal with MINBYUN” and “(150803) VIP Report”, they were not disclosed for privacy reasons and etc.

D. Limitations on the Supreme Court’s internal investigations

28. As stated above, the Supreme Court conducted internal investigations three times on their own. However, there remain limitations a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were exclusively composed of internal judges, digital forensics was ineffectively used and no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was conducted. Moreover,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6. Conclusion

29.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failed to conduct the full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etc., and failed to obtain all the necessary specific contents and the relevant documents, then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riminally charge judges who surveilled fellow judges, judges who drafted reports on them, and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The Supreme Court still refused to officially recognize their posi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entire documents, nor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matters.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also denied all allegations against him in his recent press interview.
30. Accordingly, we reques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¹⁰ if possible. We specifical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1. Fact-finding

- The Supreme Court shall disclose all 410 documents without any redaction.

2.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without due delay, so that the perpetrators to be held accountable.
- The Supreme Court shall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relevant judges, and remove them from the duty.

3. Reparations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make reparations for those who suffered damages from unfair trials as a result of the judicial corruption.

4. Prevention of recurrence

- The Supreme Court shall cooperate to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o establish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¹⁰ The national judicial conference is planning to take place on the day and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announce its position afterwar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법조출입기자
 발 신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02-522-7284 /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유엔에 진정서 제출
 날 짜 2018. 6. 7. (총 4 쪽)

보 도 자 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1.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답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4.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종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캅(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별첨1.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영문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개관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장보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The Judicial Organization Act establishe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NCA”) under the Supreme Court to manage th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urt system. The NCA is responsible for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rt. It is in charge of all aspects relating to the career of judges, including appointment, transfer, promo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discipline of judges, as well as of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of the court system.

The NCA is headed by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who has the right to addres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tate Council on issues related to court administration. Only on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ld assume the Minister of the NCA position. Judges who assume the NCA’s Vice Minister or a Director position within the NCA usually have greater chances to become Supreme Court Justices.

Surveillance of judges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7, it appears that the former Chief Justice, Mr. Yang Sung-tae, and other judges at the NCA abused their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o conduct surveillance on certain judges and allegedly interfered with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the names of judges who had expressed critical views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vision Court which was promoted by the then Chief Justice were included in a ‘blacklist’ that would have been created and managed by the NCA. Some password-locked files would have been found in computers belonging to NCA’s judges, being their names indicative of an attempt of the NCA to interfere and conduct surveillance on the judges included in the list.

It is also alleged that the NCA used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s bargaining chips to get the support of the Presidential Offi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vision Court promoted by the Chief Justic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the NCA sought and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on the desired outcome of politically sensitive cases, and instructed the judges in charge of the case to adjudicate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received from the executive branch of power.

WE NEED ADDITIONAL INFORMATION ON INTERFERENCE WITH POLITICALLY SENSITIVE CASES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the former Chief Justice purportedly tried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disregarding the Supreme Court case-law, on a judge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o made a ruling in recognizing state responsibility of temporary measures impos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Park Chung.

Interference with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hereinafter “IHRLS”) is....

In March 2017, the IHRLS was planning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to discuss the extensive administrative powers entrusted to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which include not only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but also allocation of resources

and other relevant judicial administrative functions. Mr. Im Jong-heon, Vice Minister of the NCA, supposedly ordered to member judges of the IHRLS to minimize the scale of the event, as well as the IHRLS's overall activities. Subsequently, on February 13, 2017, the NCA announced a measure aimed to ban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impacting directly on the IHRLS activities.

Investigations by the NCA

Follow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mass surveillance of judges and abuse of power by NCA officers,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initiated three internal investigations.

On March 24, 2017, the NCA established an Investigation Committee. On 18 April 2017, the Committee presented its findings. It concluded that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 "judicial blacklist" were unfounded, but acknowledged that the NCA abused its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in the IHRLS case.

On November 3,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o establish an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o further investigate on the alleged interference with judicial independence perpetrated by the NCA. On January 22, 2018, the Committee announced that documents reporting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ere found as well as documents reviewing propensity of the court in charge of particular cases and possible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On February 12, 2018,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supplement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o establish follow-up measure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vealed 410 suspicious files of surveillance on judges and allegations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by the NCA.

On May 25, 2018 it was decided that there was no clear suspicion of a crime committed by NCA members.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ART 1. 질의에 대한 답변

1.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임명 및 징계 등을 결정할 구체적인 권한이 있는지?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등에 관한 광범위한 범위의 사무를 관장함(「법원조직법」 제19조 참조). 법관의 임명, 인사 및 징계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개정 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의 사무 범위에 해당함

‘법원행정처 업무분장현황 자료(2018)’ 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사법부 인사 정책 및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을 마련·시행하고 법관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 무성적평정 등을 관리하고 있음.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으로 개별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개별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건의 조사 및 징계 전반에 관한 사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2. 법원행정처가 사찰한 법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인지 혹은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인지?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1)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법관
- 2)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
- 3) 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데 사용하는 익명 인터넷 게시판(“이판사판야단법석”)

먼저 1)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에 의해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로 2014년~2016년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들을 작성하였음. 그 대상이 된 차성안 판사의 경우, 언론사(시사인)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의 논조로 5회에 걸쳐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를 놓고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음(‘차OO판사 시사인 칼럼 두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88] 문건 참고) 더 나아가 차성안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 등을 분석함(‘차OO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87] 문건 참고). 또한 탐문 등을 통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성향(예를 들어 “대학 시절 학생회 등에서 활동한 사실은 없으며, 비주류 운동가형에 해당”)을 분석한 내용도 확인됨. 재산관계특이사항을 검토한 내역도 있는데, 2009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차 판사의 재산신고 내역을 정리하고, 사인간의 채무까지 별도의 향으로 정리해둬(‘차OO판사 재산관계 검토[89]’ 문건 참고).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한 차 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검토한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문서로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342]” “박노수 판사의 동향 관련 자료” 등이 있음

특조단은 그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그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보임”(90쪽)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2)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적인’ 성향(사법정책 및 개혁 관련 진보적인 입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하며, 상고법원 등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경우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5.7. 경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인사모’ 를 챙겨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보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이규진은 본인 스스로 혹은 법원행정처 구성원들과 함께 그 지시를 이행함.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의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함.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모 내부 토론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음(‘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보고’ ‘국제인권법연구회-1(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1] 문건 참고).

3)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함. 카페의 현황을 정리하고,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전관예우’ ‘상고법원’ 등 민감한 소재의 게시글의 통계 등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에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344] 문건 참고).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조회수를 체크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음(‘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3. 실제 상고법원이 설치되었는지? 만약 설치되었다면 사법부 내의 기능 또는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치되지 않았음

현재 법체계상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고법원이 도입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상고사건의 최종심을 상고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을 것임

즉, 상고법원 판사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건의 사실상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되는데, 상고법원의 판사는 현 대법관들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바로 임명됨.

대법원장으로서 상고법원 판사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일반 법관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즉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으로서 관문이 매우 좁은 대법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상고법원 판사로 임명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수뇌부로서는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임.

4.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410개 문건 중 특정 법관의 이름을 리스트로 작성한 것은 없음. 그러나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정책에 비판의견을 표명하거나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은 확인됨.

특조단의 조사 대상 문건을 살펴보면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 사실은 인정됨(‘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검토’ [281, 282, 287, 291] 문건 참고).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것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까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움.

5.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설명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2011. 8.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은 국정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 등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물어본 것(일종의 사상 검증)에 대해 침묵하는 법원 분위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법관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임. 인사모는 2015. 7. 내지 8. 경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거쳐 2015. 9. 첫 정식 모임을 가지고 발족하였음. 인사모는 위 예비모임 당시부터 상고법원 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사법부 내 사법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구성원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음.

박병대 처장은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 보라고 지시. 이규진은 이들이 “법관의 업무 부담 개선,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이 외부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음

6. 양승태의 권한이 대법원장으로서 주어지는 권한인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의 장으로서 주어지는 권한인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함(「법원조직법」 제9조제1항).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행정처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 분리하고 승진인사를 폐지하여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7.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2016. 12. 경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논의함. 12. 24. 경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 1. 3. 실장회의에서 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1차 보고를 함. 이후 이규진은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2)’ 문건을 작성하여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대책으로 보고하였음.

2017. 1. 23.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2017. 3. 25.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의 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함.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학술대회를 내부에서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한 것.

8. 중복 가입 금지 관련 글을 올린 것이 공개적인 것인지?

2017. 2. 13.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에 따라 법관들에게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를 정리하고, 만약 정한 기한 후에도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 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코트넷’ (내부 통신망)에 공지함. 모든 판사들은 코트넷에 게시된 글을 확인할 수 있음.

9. 중복가입을 금지한 것이 더 이상 어떠한 학술모임의 멤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 제3조제2항은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고,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는 사문화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실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규정임.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원행정처는 인사모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복가입해소조치를 검토함. 인사모 소속 법관들이 여러 연구 단체에 중복 가입된 상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입한 단체(보통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가 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었음.

10. 조사단 조사 언제 진행된 것인지? 조사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된 것인지?

대법원 진상조사단: 2017. 3. ~ / 2017. 4. 18. 조사 보고서 발표

추가조사위원회: 2017. 11. 13. ~ 조사 진행 / 2018. 1. 22. 조사 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3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 논의하기 위해 기구 구성. 2018. 2. ~ 2018. 5. / 5. 25. 조사 보고서 발표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410개 문건 중 일부 언론에 공개 / 2차 공개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문건들도 언론을 통해 공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한 바는 없음(민변, 참여연대 등 정보공개청구)

11.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특별조사단의 총평: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실은 확인되나, 리스트에 포함된 법관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하여 징계 청구권자에게 전달

관여 정도가 큰 법관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됨(업무배제)

이후 검찰 수사 시작됨(2018. 6. 15. 경)

12. 법관 성향 분석한 내용 중 ‘성향’ -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한 모임으로 평가

13. 법관의 개인적 사정을 분석한 내용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차성안 판사 등 개인 간의 채무 관계

14.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로 인한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누가 내린 것인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

특별조사단 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홍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의장, 정재현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법원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 위원은 아니었음. 또한 조사의 한계도 있었음

현재 검찰에서 관련 수사 진행 중이나, 법원은 관련 전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민변과 참여연대의 요구사항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의혹, 법관 및 시민에 대한 사찰, 기타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요구함.

-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라.
-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라.
-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라.
-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하라.

제안 권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할 것을 기대함.

-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권고
-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과 관련 입법 활동 권고

PART 2. 추가자료

1. Background : 배경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법원행정처로 부임한 판사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을 오남용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 사법부는 법안 발의권, 예산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행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상고법원 설치로 인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강해지는 반사작용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상고법원 설치에 미온적 자세를 취한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선회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평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 일정을 연기시키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 입법 발의가 어려워지자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를 시도하면서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 Alleged violations :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청와대(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국/노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맞게 판결하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 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례

1-1) 청와대와 대법원간 비밀회동

- 1차 회동 :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 2차 회동 : 2014년 10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징용소송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1-2) 재판관 징계 검토

- 군부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김 모 판사가 이러한 대

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자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1-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취소 압력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일선 법원 재판부가 내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서울 일선 법원에 근무할 당시 A부장판사는 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관련해 공중보건의 재직기간을 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 A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내부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은폐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은 당시 헌재와 갈등을 빚어온 양 전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애초 재판부 결정 취지에 불만을 갖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법원 제청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법부 내에 판례로 통용되던 특정한 법률 해석이 위헌이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법원이 불법으로 개입, 재판 침해한 것” 이라고 말했다.

2)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2-1) 긴급조치 사건

- 사건 요지 : 2015년 양승태대법원은 (유신정부 시절) “긴급조치 발동이 대통령의 고도 통치 행위” 라며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은 맞지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 고 판결하였다.
- 제기된 의혹 : 2015년 7월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기재돼 있다.

2-2) 일제 강제징용 사건

- 사건 요지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두 차례 소집한 공판회동을 통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가 소송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실제로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견서 제출을 비롯한 소송 지연 계획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 제기된 의혹 :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를 빌미로 결론을 미루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대가로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관의 해외 공판 파견 등을 거래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 노동 사건 : ① KTX 승무원 해고소송, 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③ 전교조 법외노조 진행정지

관련 사건, ④ 통상임금 판결

- 사건 요지 ① :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한 KTX 해고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코레일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건 요지 ② :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해고가 정당화되는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가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확정 되면서 해고자들의 복직이 되지 못했다.
- 사건 요지 ③ :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에 맞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본안)’과 함께 ‘효력집행정지소송(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하자, 이를 인용하여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 사건 요지 ④ :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로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바꾸지는 못하였지만,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사합의로 이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과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원고 패소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 제기된 의혹 : 2015년 7월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KTX 승무원 해고소송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을 박근혜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꼽았다.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임’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2015년 6월 2일 대법원은 효력집행정지 건에 대해 실제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2심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실제로 2015년 6월 2일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2016년 1월 21일 2심 본안에 영향을 주어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전교조는 2016년 2심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외노조 상태이다. 또한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판결의 취지를 보고하였고 그 반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2-4) 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² / ② 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³

-
- 1 2014년 7월 16일,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함.
 - 2 2012년 4월 18일, 참여연대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개인청원을 제출함.

- 사건 요지 ① :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9년 4월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국방·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방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돼 무효”라며 소송을 했다. 1·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012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사건 요지 ② : 2013년 10월, 한국 전력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가폭력이 난무했다. 그러나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0월 9일 주민들이 한전의 불법행위(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헬기 소음 기준치 위반)를 지적하며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7개월여 동안 끌다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한전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4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제기된 의혹 :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한 사례”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에 대해 한전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한 판결도 언급하며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이라 분석하며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기각결정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했다고 적었다.

3. Useful information :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기각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료의 임의제출 거부와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6월 수사 이후 현재까지(9/4)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208건 중 발부는 23건에 불과하다. 기각률이 무려 8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수백 건에 달하는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하드디스크 등 재판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하였다. 법원이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세차례 기각하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현직 판사가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기간 동안 현재의 주요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각각 외교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8/2, 8/20)한 반면 동일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8/20)했다. (끝)

-
- 3 2014년 6월 23일 참여연대는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함.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Regarding the ROK Judicial Power Abuse Scandal

October 1, 2018

Submitt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ontact

- Name: Ms. Boram JANG,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Address: 23 Boebwon-ro 4gil Daedeok Building 2f,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Email: bjang@minbyun.or.kr

- Name: Ms. Huisun KI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Address: 16, Jahamunro 9-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 Email: jw@pspd.org



PART 1. ANSWER FOR THE SPECIAL RAPORTEURS' QUESTIONS

1. Does the NCA have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appointment and discipline of judges?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NCA”) administers overall judicial administration encompassing human resources, budget, accounting, facilities and statistics (Article 19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aws that regulate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appointment, changes in personnel and discipline of judges also fall into the range of the NCA’s task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Document on Present Condition of the NCA’s Division of Labor (2018),’ the NCA’s Director General for Personnel Affairs is in charge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detailed management plan of personnel policies of the judiciary and manages work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s directly reflected on the personnel transfers of judges.

Though the NCA does not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each judge (disciplinary action on individual judges is taken by the Commission of Discipline established by the ‘disciplinary action of judges act’), the Insp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of the NCA is in charge of petition against judges, investigation and discipline of unlawful cases.

2. How were the judges who were under surveillance chosen? Judges who had expressed critical views on the court system or the NCA? Judges who had expressed critical views on the draft legislation on the revision of the court system?

The target judges of surveillance by the NCA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1) Judges who opposed or expressed critical views on the policies of the Supreme Court
- 2) Academic research group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and

'Insamo') that are composed of judges who are thought to have raised critical views on related policies

3) An anonymous internet bulletin board where judges freely share their opinions ("*Ee-pan-sa-pan-ya-dan-beop-seok*")

Firstly in regards to 1), the NCA's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under the direction by Mr. Im Jong-heon, former Vice Minister of the NCA, prepared documents identifying dispositions of judges who expressed opposing views on the policies that were to be carried out by the Supreme Court in 2014-2016, according to the documents revealed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In case of Mr. Cha Sung-an, one of the judges targeted for surveillance,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reviewed potential violations of political impartiality obligation and dignity maintenance duty for contributing to a press company(Sisa-in) for five times with opposing tone regarding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court('Trend and response options regarding Judge ChaOO's contribution to Sisa-in columns section', Refer to [88]) Furthermore, a document analysed Judge Cha's personal tendency or opinion on the appellate court based on his personal e-mails sent to other judges('Trend and response options regarding Judge ChaOO's posting on the bulletin board', refer to [87]).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NCA analysed personal tendency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vestigations (for example, "no facts were found that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university student council, and he can be categorized as non-mainstream activist type"). The NCA also reviewed judge Cha's particularities regarding property relations, analyzing his report of property from 2009 to 2015 as well as his personal private liabilities in a separate section (Refer to 'Review on judge ChaOO's property relations [89]'). It can be inferred that the NCA reviewed those topics in advance to constraint judge Cha's freedom of expression or as a means to put pressure on him with personal matters for his critical view on the NCA's policies. Similar documents as above include "Regarding Judge Song Seung-yong's post on the bulletin board [342]" and "Data on Judge Park No-su's tendenc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s report concluded that "the NCA seems to have analysed dispositions or collected personal data of judges through unofficial means who criticized or opposed judicial policies of the NCA or publicly shared their critical views on

the recommendation process of Supreme Court justices. While categorizing member judges of certain study associations as a core group, the NCA seems to have analysed those judges' tendencies or responding options against them based on the NCA's negative impression that those judges criticize the judicial policies based on their politically biased views" (page 90).

As regards to 2), the NCA concluded that the IHRLS is similar to '*Woori Law Society*', an association of 'progressive' judges (on progressive stance on judicial policies and reform), and that there may be a setback in carrying out the policies of the Supreme Court under the leadership of Chief Justice Yang once the IHRLS voice out their opposing views on the Supreme Court's polic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ppellate Court. Mr. Park Byung-dae, then-Minister of the NCA, ordered Mr. Lee Kyu-jin, then-Standing member of the Sentencing Committee, to "watch the activities of 'Insamo'", and "have inspection through Judicial Ethics Office." Mr. Lee Kyu-jin executed the order by himself and with officers of the NCA. Mr. Lee prepared documents with detailed information of Insamo's meetings, including contents and intentions of participants' speeches, the atmosphere and progress of discussions,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list of judges who joined the gathering afterwards. Furthermore, he reported contents of discussions posted on Insamo's online bulletin board [refer to [1] 'Report on the formation of a new group and its progress',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1 (sub-group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system)']].

On the point of 3), the NCA reviewed a plan to induce shutdown an anonymous online website of judges, 'Ee-pan-sa-pan-ya-dan-beop-seok,' because many postings contained negative or critical views on current judicial policies of the NCA including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Appellate Court. The NCA examined present conditions of the website, analysed statistics on sensitive issues including 'Recommendation process of Supreme Court justices,' 'Parole of entrepreneurs,' 'Privilege given to the former judges,' 'The establishment of Appellate Court,' and even reviewed possibility of posting online disguising as a member of the website (refer to [344] 'Report on the present condition of Ee-pan-Sa-pan-ya-dan-beop-seok'). One of the documents of the NCA analysed that, after posting a message stating that sensitive contents should be voluntarily erased after

certain period of time, many responded positively on such intention, checking the number of hits of the post (refer to [27] 'Report on the trend of Ee-pan-Sa-pan-ya-dan-beop-seok').

3. Is a Revision Court established actually? If so, what is its function or status within the judiciary?

Not establish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upreme Court is in charge of the final judgment, and if the Revision Court(appellate court) was introduced, the Revision court w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most of the appeals cases.

In other words, the judge of the Revision court is responsible for the de facto final judgment of almost all cases. The judge of the Revision court is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without consent of the parliament, unlike the current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you will have the right to appoint all judges of Revision courts, and you may think that there are many "cards" that can handle general judges with the right to personnel. In other words, a high-ranking judge who is higher than a high court judg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appointed as a Revision court judge even if they cannot becom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s a Chief Justice, he will be able to control them by using the aspirations of higher judges.

4. Who created and managed the "blacklist"? Who owns or has access to this list?

Of the 410 documents that have been published through the media to date, there is no list of names of specific judges.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judgment on judges who are likely to express criticism or object to the judicial policies they intend to pursue.

It is acknowledged that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f 'Judicial Blacklist' include, for example, "disadvantages imposed on key members of 'Insamo (a small group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system) of selective personnel and overseas training." (See "Measures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281, 282, 287, 291] Reference). It seems to be until now, it is hard to grasp whether this has been executed practice in real.

5. Explan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in the Cour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is an academic gathering within the judiciary that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s administrative guideline, 'Article on Composition and Support of Professional Studies'. A 'small group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Insamo)' is small group was made by judges who have felt consciousness after the interviews which judges have to be taken before being appointed as judges and it was taken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 the process of interviewing applicants for judges, NIS asked for personal opinion on political matters (that could burden and politically sensitive matters to the government, for example Sewol Ferry disaster). So that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consisting of this small group for consciousness of this.

The official meeting was established after two preliminary meetings between July and August 2015. Since the preliminary meeting, they have been discussing and exchanging opinions among the members on major issues of the judicial system in the judiciary including the revision court issu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ensus of judges during the trials, enactment of the judiciary, participation of judges in judicial administration.

Chief of staff Park Byung-dae instructed Lee Gyu-jin, a standing member, to take good care of personnel management, as it appears to be a meeting similar to 'Our Law Research Society'. Lee pointed out that they were opposed to the Supreme Court, including "improvement of judges' burden and oppos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revision court"

6. Is the authority of Yang Seung-tae given as the chief justice or the authority given as the head of the court administrati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versees the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directs and supervises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Article 9.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bused his authority as the ultimate ruler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fter the case of the Justice Farmers' Party, Chief Justice Kim Myung-soo emphasized that the Supreme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will completely separate the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from each other personally and materially and abolish the promotion to change the vertical and bureau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7.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Law - What does it mean specifically?

In December 2016, Insamo, which is a sub-committee with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was discussing the holding of a joint academic conference with Yonsei University Law Firm and Judicial Personnel. On November 24, 2013, a member of the NCA, Lee Gyu-jin, who learned about the plan on December 24, made a first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Joint Conference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NCA. After that, Lee Kyu-jin drafted the 'Joint Conference on Human Resources' (1), (2)' and reported it as a countermeasure at the 1st 13th Director General meeting on June 1, 2017. When the final decision was made to hold a joint academic conference on March 25, 2017, Lee asked judge Lee Tan-hee and another judge to hold the joint academic conferences to be held within the courts and not to be particularly reported in the media.

They demanded that the conference to be reduced as an internal event because of the concern that the voices that criticize the policies promoted by the Supreme Court.

8. Was the article on the prohibition of dual membership posted publicly?

2017. 2. 13 It is announced in the "Courtnet" (internal communication network)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dual membership in the "Rules for the Study of the Specialization in the Field of Expertise", the judges are requested to withdraw their membership from the associations. They also announced that the membership will be automatically revoked which they had joined later. All judges were able to see the posts posted on the court net.

9. Does the prohibition of dual membership mean that it can no longer be a member of any academic society?

Article 3 (2) of the 「Rules for the Expert Group on the Field of Specialization of the Court」 stipulates that a judge cannot join two or more research meetings in duplicate, but the NCA may designate a research meeting to be an exception. However, this is a regulation that has not been practiced so far as it has been sourced.

The NCA, which learned that many of the judges belonging to the Insamo group were also affiliated with other research groups, reviewed the measures to eliminate redundant membership as a measure to check the personal information. It was a plan considering the fact that if the judges of the Insamo do not voluntarily resolve the situation of overlapping with several research groups, they would be withdrawn from the group that joined them (usuall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search Society).

10. When did the investigation team proceed? Was the investigation report publicly available?

Supreme Court's investigative Committee: 2017. March - 2017. 4. 18. Investigation report announced.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November 13, 2017 investigation progress / 2018. 1.

22. Announcement of investigation result

Special Investigative Group on the Suspected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3rd): As a follow-up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he organization is established to supplement the findings and to take measures with a fair view point. 2018. 2. ~ 2018. 5. / 5. 25. Announcement of research report

In addition, some of the 410 documents identifi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ere disclosed to some media. No public information has been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MINBYUN and PSPD filed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11. What steps have been taken by the investigating team to abuse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General Review of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We have confirmed the fact that the judges have been investigated, but we have not found any material evidence which could support that they have systematically imposed a personnel disadvantage on the judges included in the list"

In addition to the recommendation to establish a preventive measure for the bureaucracy of the judiciary, and to set the standards to be followed by judicial administration officials,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each actor involved in the suspicion is summarized and sent to the disciplinary claimant

Judges with a high degree of involvement are referred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exclusion from the duties).

Since then, the prosecution has begun its investigation (June 15, 2018).

12. What is the 'propensity' in the analysis of judicial propensity? Political position?

A person who has a tendency to oppose the policy of the Supreme Court

Insamo with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Seen as a group of

judges with progressive views.

13. Analysis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judges - what is the specific content?

Judges Cha Sun-ahn's personal debt relations

14. Who has concluded that there have been no criminal charges against judicial executive directors for abuse of judicial executive power or for judicial transactions?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contents of investigation report) concluded it.

Composi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Ahn Chul-Sang(Minister of NCA), Noh tae-ak (North District Chief Judge), Kim Heung-joon (Insp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Chairman Lee Seong-bok (then Chairperson of National Judges Conference), Chung Jae-heon(Chief of Judicial IT Bureau), Koo Tae-heo(Professor at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to supplement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to discuss the measures with a fair viewpoint, but its independence was questionable since members of NCA wer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re was also limit of investigation.

Currently,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but th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interfering with the investigation by dismissing the search warrant for the related former and current judges.

PSPSD AND MINBYUN REQUESTS FOR THE ROK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alleged NCA's undue influence i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surveillance of judges and citizens, we demand truth about the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s, holding the responsible accountable, reparation of the victims' damage,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 The NCA shall submit to the prosecution any documents such as document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 The National Assembly shall promptly pass the "Special Criminal Procedure Act for Adjudicatio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Abuse under Chief Justice Yang Seong-Tae' and 'the Special Act on the Reparation of Victims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Abuse", and move to impeach the judges who are responsible.
- The National Assembly shall actively conduct fact-finding investigation, such a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 The National Assembly shall form a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without due delay.
- The government shall refer to the precedent of judicial reform in the past to form a Judicial Reform Organization that can reflect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such as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as well as the civil society.

Suggested Recommendations to the Special Rapporteur

We specifical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 Recommend the Judiciary to cooperate with the ongoing investigation and make efforts for judicial reform.
- Recommend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effort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ated legislative actions.

PART 2. ADDITIONAL INFORMATION

1. Background

Compared to the general cases of the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in which the attack was usually done by the administration or the heads of the administration, the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in Korea was mainly done by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NCA judges. The case began with an incident that one judge, who was moved to NCA, heard the words, “there are files of judge blacklist” during the process of taking over the work. Kim Myung-su, who became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fter Yang Sung-tae, the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began the internal investigations on the incident, and found out the massive abuses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by Yang Sung-tae and NCA judges.

Although the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decided to establish of the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the cooperation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necessary, since the Judiciary of Korea did not have any administrative power, such as legislating laws and setting the budge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at the time, however, took a lukewarm attitud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considering that the increasing power of the chief justice’s power on personnel affair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would reflectively decrease presidential influence. It is suspected that Yang Sung-tae and NCA judges spoile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by interfering judicial review and delaying numerous trials depending 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interests to change the attitud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t is also suspected that Yang Sung-tae and NCA judges abused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and meddled in trials when they attempted to propose the law to establish the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throug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proposing the law through the administration became difficult.

2. Alleged violations: The cases of the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by using trials as bargaining chips

It is suspected that Yang Sung-tae and NCA judges used politically sensitive/ labor-issue trials as bargaining chips to curry favor with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y ruling the trials based 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olitical tendency. One of NCA documents, produced at the end of July 2015, said, "The judiciary has been trying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and presented specific supreme court cases corresponding to the tendenc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ffairs.

1) The cases of the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1-1) A secret meeting between the Blue House and the Supreme Court

- **First Meeting:** In December 2013, Kim Ki-chun, the former president's secretary general, called the former minister of NCA, Justice Cha Han-sung, to his office and requested him to delay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 of forced-labor during Japan's colonial rule as far as possible or to open en-banc session for the case to change the Supreme court's previous judgment, saying that the victims had a right to seek compensation for their suffering from Japanese Companies.
- **Second Meeting:** Kim Ki-chun, the former president's secretary general, called the former minister of NCA, Park Byung-dae, the former president's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Cho Yoon-sun, the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Yoon Byung-sae, the former minister of Justice, Hwang Kyo-ahn, the former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g Jong-sup to check the proceeding of the case of forced-labor during Japan's colonial rule and discussed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case.

1-2) Review the disciplinary measures to a Judge

- NCA searched for ways to punish a judge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o made a ruling that the victims of emergency administrative measures under the former dictatorial President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a right to seek state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made the judgement saying the victims did not have a right to seek state compensation, even though the emergency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unconstitutional. NCA reviewed the ways to impose the disciplinary measures to the judge for the opposite ruling against the supreme court. When there was no case to discipline the judge for his or her judgement, NCA even ordered researchers to collect overseas cases.

1-3) Pressuring the district court's judge to revoke the decision for constitutional review ex officio.

- It was found that Yang sung-tae, when he was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forced a district court judge to revoke the decision for constitutional review. In 2015, a senior Judge made a decision for constitutional review on whether the work experience of public health doctors could be included in a period of service that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regulated or not, asking the act was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It was revealed that a senior NCA judge, who had received the order from Yang Sung-tae, pressured the senior judge to revoke the decision ex officio. It was also revealed that NCA ordered Judicial IT Bureau to cover up the decision during the process, so that the decision could not be accessed through the internal computer network.
- The prosecution believes that Yang Sung-tae, who had been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t the time, was displeased with the decision and put pressure on the senior judge through NCA. I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ed the decision and declared the cas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it might mean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specific law that the Supreme Court had made was unconstitutional. The prosecution said, "The Supreme Court illegally meddled in the decision which was already made by the judge."

2) The cases suspected of being used as bargaining chips

2-1) The case of emergency administrative measures

- Summary of the Case: In 2015, The Supreme court under Yang Sung-tae, ruled that “The emergency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days of former dictatorial President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Yushin administration) are the political questions” and concluded that “Even though the emergency administrative measures are unconstitutional, the state has no liability to compensate.”

Raised Suspicion: The document, produced in late July 2015 presented the rulings which strictly applied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were related to past history as the rulings that “restricted unfair or excessive state compensation.” It presented the ruling of emergency administrative measures as the ruling that “fully considered the situation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2-2) The case of forced-labor during Japan’s colonial rule

- Summary of the Case: Kim Ki-chun, the former president's secretary general, tried to delay the Grand Declaration of 2012 by recognizing the liability of the war criminal corporation through the meeting of two secret meetings. Apart from this, it has been reported that he had contacted NCA, Blue Hous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attorneys of the Japanese war criminal corporation several times and meddled in the trial. It has been found that the Supreme Court ask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submit a government statement on the trial, and involved in the proces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statement in November of 2016. The plan to delay the trial, including the submission of the governmental statement, was also reported to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 Raised suspicion: The prosecution suspects that NCA had planned to delay the trial and opening en-banc session in advance. The Supreme Court is suspected of

requesting coope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 facto* and the dispatch of overseas mission for Judges at the same time by using the trials as bargaining chips.

2-3) Cases on Labor disputes: ① Case on KTX crew layoff, ② Case on Ssangyong motors laborer dismissal, ③ Suspension of government notification that changed the status of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TU”) as an illegal union¹, ④ Decision on ordinary wages

- Case Summary ①: The KTX crews had filed a lawsuit requesting ‘validation of status as workers etc.’, claiming direct and permanent employment, and received favorable decisions from primary and appellate court, acknowledging KORAIL as the actual employer. However, on February 2015,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original decision and denied the existence of direct employment between the crews and KORAIL, dismissing the lawsuit.
- Case Summary ② : On 2010, 153 dismissed workers from Ssangyong motors filed a lawsuit requesting the ‘confirmation of nullity of managerial dismissal’, a form of wrongful termination suit. The High Court denied the validity of managerial dismissal explaining that “there is no urgent managerial necessity, and the management failed to make every effort to avoid dismissal.” This decision, however was disregarded by the Supreme Court when it ruled in favor of the management stating that “urgent managerial need is recognized”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High Court for reconsideration. The case was then concluded, denying reinstatement of the workers.
- Case Summary ③ :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2013, which recanted the KTU of its legal status, the

¹ On July 16, 2014,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SPD”) submitted an urgent appeal regarding the government actions that violate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 government notifica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ancelling union registration of the KTU, alleging that KTU’s bylaw that allowed dismissed workers as eligible members is illegal, and accusations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gainst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assemblies and teacher declaration,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KTU filed a lawsuit requesting ‘revocation of the government notification (merits case)’ and filed for a ‘suspension of execution (an injunction requesting a temporary ruling on the effect of government order prior to the court’s decision on merits case).’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appeal fil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September 2014 against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which allowed the injunction to restore the KTU’s legal status, revoked the injunction and sent the ruling back to the High Court.

- Case Summary ④ : On December 18, 2013, the Supreme Court made an en banc decision on the definition of ordinary wages. While the decision did not alter the existing case law that included regular bonus payments as ordinary wage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stating that “retroactive application for certain payments may be denied given that an agreement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to exclude such payments from ordinary wages exists”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Allegations Raised: According to the NCA document drafted on late July 2015, the above KTX crew layoff case, Ssangyong motors laborer dismissal case was selected as “cases coordinated to support state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and the BH.” Another NCA document, titled ‘Review of the injunction concerning the government notification of KTU’s illegal status’ and drafted on December 2014, states that ‘acceptance ruling on appeals → shall result in win-win outcome for both parties (the BH and the Supreme Court).’ Soon on June 2, 2015, the Supreme Court ruled to accept the appeal by the government, revoked the injunction and sent the case back for reconsideration. The document furthermore states that acceptanc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shall affect reconsideration of the High Court. The Supreme Court ruling of June 2, 2015 did in fact influence the High Court, which overturned its original decision and decided against the KTU on January 21, 2016. Due to the High Court decision of 2016, the KTU lost its legal status and has remained as an illegal union. For the ordinary wag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review the case as full bench and released a press report immediately after the decision was pronounced. The revealed documents state that the NCA additionally reported the implications of the decision to the BH and sought for its response.

2-4) ① Construction of the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², ② Construction of Miryang Power Transmission Tower³

- Case Summary ① : Residents of Gangjeong villag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ast April 2009, that approved the construction plan of naval base near Gangjeong village asserting the “invalidity of the construction plan approved without prop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primary and appellate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villagers, yet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decision and sided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Case Summary ② : On October 2013, KEPCO enforced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silencing the villagers’ opinion using state violence. However, the Court (Changwon District Court Miryang Branch) decided to dismiss the villagers’ claim for provisional disposition on construction suspension that highlighted unlawful acts of the government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violation of helicopter noise standard), 7 months after the villagers filed the claim. KEPCO’s claim for provisional disposition on prohibition of construction obstruction against the villagers, however, was expediently accepted only 40 days after the claims was brought, by the same Court.
- Allegations Raised: The Yang Sung-tae Court described “the decision that pronounced the disposition approving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naval base as legally valid,” as “an example where the judicial branch cooperated to support smooth state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Yang Sung-tae Court also wrote that the rulings on Miryang conflict, where the court ruled in favor of KEPCO’s claim while rejecting the villagers’ claim, contributed to “end and prevent further social conflicts” as “the continued collision between KEPCO and the Miryang residents was fueling a social strife.”

² On April 18, 2012, the PSPD submitted an individual complaint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regarding the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 made during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³ On June 23, 2014, the PSPD submitted an urgent appeal regard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committed by the Miryang City Council during it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proces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3. Useful information: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s Office and Refusal of Search Warrants

On June 15th, prosecution began their investigation as Chief Justice Kim Myeong-Su expressed his intention to cooperate. Despite Chief Justice Kim's pledge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district court have rejected requests from the prosecution for warrants to search the offices and homes of or arrest key former and current Supreme Court officials, effectively undermining the investigation. Of 208 search warrants requested since June, when the investigation began, only 23 have been issued until now (as of September 4th). The rejection rate is as high as 89%, which is unprecedented considering that only 1% of search warrants have been rejected for the past 5 years. For instance, Yoo Hae-yong, a former Supreme Court clerk destroyed hundreds of classified documents, such as hard discs and initial drafts of Supreme Court rulings, while the court was rejecting three search warrant requests. Meanwhile, the court issued search warrants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ugust 2nd, August 20th) as allegations that Yang Sung-tae Court attempted to intervene in the damage suit filed by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at an incumbent judge collected and reported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Supreme Court arose, yet rejected search warrant requests for incumbent judges (August 20th) involved in the same allegation.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법조출입기자
발 신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02-522-7284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제 목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날 짜 2018. 10. 1. (총 2 쪽)

보도자료

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1.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2.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3.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4.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 [\[국문\]](#)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REFERENCE:
AL KOR 3/2018

15 November 2018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ddress you in my capacity as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35/11.

In this connection, I would like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your Excellency's Government information I have received concerning alleged irregular surveillance of judg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interference with their independence and ineffective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national bodies on these issue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composed of the Chief Justice and 13 Justices, 12 of whom have adjudicatory functions. The 13th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s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as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CA').

In addition to its adjudicative functions, the Supreme Court is also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Korean court system. The NCA has overall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financial and budgetary issues, accounting, court facilities management, judicial ethics and statistics (article 19 of the Courts Organisation Act).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Chief Justice, the Minister of the NCA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ry as well as for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rt. The Minister does not need to be a judge, and does not sit on the bench in the Supreme Court trials. The Vice-Minister, who is also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assists the Minister in implementing the mandate of the NCA. The Vice-Minister is appointed among judges. Both the Minister and the Vice-Minister have the right to attend and speak in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State Council if the issue is related to court administrative affairs.

Surveillance of judges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7, it appears that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and other judges at the NCA used their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o conduct surveillance on certain judges and allegedly interfere with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Judges subject to surveillance allegedly include those

who opposed or expressed critical views on the Supreme Court and its policies, in their personal capacity or through academic research groups they belonged to. According to the documents revealed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he NCA's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under the direction by Mr. Im Jong-heon, former Vice-Minister of the NCA, prepared documents identifying dispositions of judges who expressed opposing views on the policies that were to be carried out by the Supreme Court in 2014-2016.

The names of judges who expressed critical opin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vision Court, which was promoted by the Chief Justice and the Minister of the NCA, were included in a 'blacklist' that would have been created and managed by the NCA. Some password-locked files would have been found in computers belonging to NCA's judges, being their names indicative of an attempt of the NCA to interfere and conduct surveillance on these judges.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allegedly reviewed the opinions expressed by targeted judges on the introduction of a Revision Court through different means, including investigations on the judge's personal life, political affiliation, property situation, and email exchanges with other judges. The information collected would have been used to exercise pressure on the judges, so as to constraint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vent or limit their criticism on the Supreme Court and its policies.

It is also alleged that the NCA used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s bargaining chips to get the support of the Presidential Offi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vision Court.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the NCA would have sought and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on the desired outcome of politically sensitive cases, and instructed the judges in charge of the case to adjudicate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received from the executive branch of power.

Furthermore, the NCA reportedly planned to shut down an anonymous online website of judges, 'Ee-pan-sa-pan-ya-dan-beop-seok,' because of the negative or critical views expressed on the platform on current judicial policies of the NCA (including the creation of a Revision Court). The NCA examined present conditions of the website, analysed statistics on sensitive issues, including 'Recommendation process of Supreme Court justices,' 'Parole of entrepreneurs,' 'Privilege given to the former judge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ellate Court,' and even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online discussion disguised as a member of the website.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s report concluded that "the NCA seems to have analysed dispositions or collected personal data of judges who criticized or opposed judicial policies of the NCA or publicly shared their critical views on the recommendation process of Supreme Court justices through unofficial means. While categorizing member judges of certain study associations as a core group, the NCA seems to have analysed those judges' tendencies or responding options

against them based on the NCA's negative impression that those judges criticize the judicial policies based on their politically biased views" (page 90).

Interference with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hereinafter "IHRLS") is an academic study group created within the judiciary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s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Composition and Support of Professional Studies". In December 2016, a group of judges created a sub-committee within the IHRLS on human rights and the judiciary (Insamo) to discuss on major issues in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reation of a Revision Court, the implementation of judicial decisions and the participation of judges in judicial administration.

In March 2017,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was planning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to discuss the extensive administrative powers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ose power include not only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but also allocation of resources and other relevant judicial administrative functions. Mr. Im Jong-heon, Vice Minister of the NCA, supposedly ordered to member judges of the IHRLS to minimize the scale of the event as well as the IHRLS's overall activities.

Furthermore, on 13 February 2017, the NCA announced on "CourtNet", an internal communication network, that it would ban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impacting directly on the IHRLS activities. It is alleged that the measure was adopted following reports received by the NCA that many of the judges belonging to the Insamo group were also affiliated with other research groups.

Investigations by the NCA

Follow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mass surveillance of judges and abuse of power by NCA officers, the NCA of the Supreme Court initiated three internal investigations.

On 24 March 2017, the NCA established an Investigation Committee. On 18 April 2017, the Committee presented its findings. It concluded that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 "judicial blacklist" were unfounded, but acknowledged that the NCA abused its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in the IHRLS case. On 3 November 2017, the NCA established an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o further investigate on the alleged interference with judicial independence perpetrated by the NCA. On 22 January 2018, the Committee announced to have found documents reporting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as well as documents reviewing propensity of the court in charge of particular cases and possible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On 12 February 2018, a new “Special Investigative Team on the Suspected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was established to supplement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consider possible follow-up measures. On 25 May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vealed 410 suspicious files of surveillance on judges and allegations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by the NCA. However, it concluded that there was no clear evidence of any crime committed by NCA members.

On 15 June 2018, the prosecutor’s office began an investigation on this case. Despite Chief Justice Kim Myeong-Su’s pledge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district court have allegedly rejected any request to arrest key former and current Supreme Court officials or to grant warrants to search their offices and homes. Of 208 search warrants requested since June 2018, only 23 have been issued as of 4 September 2018. If the figures are accurate, the rejection rate is as high as 89 percent. Reportedly, only 1 percent of search warrants have been rejected for the past 5 years.

Without prejudg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concern is expressed at the above alle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lleged facts and concerns, please refer to the Annex on Refere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tached to this letter, which ci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standards relevant to these allegations.

As it my responsibility, under the mandate provided to me by the Human Rights Council, to seek to clarify all cases brought to my attention,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observations on the following matters:

1.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and comments which you may have on the above mentioned allegations.
2.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ternal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in relation with mass surveillance of judges and abuse of power by NCA officers. We would appreciate if we could receive information about petitions, investigations and discipline of unlawful cases made by the Insp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of the NCA against judges and/or with the collaboration of NCA’s Director General for Personnel Affairs.
3.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final conclusions of the various bodi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and the NCA to investigate on mass surveillance of judges and abuse of power by NCA officers, and on the measures Your Excellency’s Government has adopted, or intends to adopt, to address these cases and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4.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adopted by your Excellency’s Government to protect and promot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o enable judges to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on the basis of f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mproper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5. Please als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hat your Excellency's Government has put in place to guarantee, in line with article 19, 21 and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rinciple 8 of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exercise by members of the judiciary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 would appreciate receiving a response within 60 days. Passed this delay, this communication and any response received from your Excellency's Government will be made public via the communications reporting [website](#). They will also subsequently be made available in the usual report to be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While awaiting a reply, I urge that all necessary interim measures be taken to halt the alleged violations and prevent their re-occurrence and in the event that the investigations support or suggest the allegations to be correct,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any person(s) responsible for the alleged violations.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ex
Refere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prescribed, inter alia,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on 10 April 1990, and the 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rticle 14 of the ICCPR establishes the right to fair proceedings before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In this regard, General Comment No. 32 (2007)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notes that the element of independence requires the judiciary to be free from political interference by the executive branch, as well as the legislature. The Committee notes in particular that a situation where the executive is able to control or direct the judiciary is in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n independent tribunal (General Comment No. 32, para. 19).

Additionally,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tate, inter alia, that it is the duty of all governmental and other institutions to respect and ob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principle 1); that the judiciary shall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 without any restrictions, improper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principle 2); and that there shall not be any inappropriate or unwarranted interference with the judicial process, nor shall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s be subject to revision (principle 4).

Moreover, the Basic Principles recognise that “members of the judiciary are like other citizens entitled to freedom of expression, belief, association and assembly; provided, however, that in exercising such rights, judges shall always conduct themselves in such a manner as to preserve the dignity of their office and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principle 8). They also expressly recognise that judges are free to form and join associations of judges or other organization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to promote their professional training and to protect their judicial independence (principle 9).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 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5.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문서번호 : 19-01-사무-0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9매

[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 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안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 참고자료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2019년 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현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

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5.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 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끝)